전파방송정책연구 KORPA 2008-02

최종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전파방송 정책 및 전파법령 정비방안 연구

- 전파법 해설집 및 업무편람 발간 연구 -

2008. 12. 31.

연구기관 한국전파진흥원 <u>방 송 통 신 위 원 회</u>

최종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전파방송 정책 및 전파법령 정비방안 연구

- 전파법 해설집 및 업무편람 발간 연구 -

2008, 12, 31,

연구기관 한국전파진홍원 <u>방 송 통 신 위 원 회</u>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파방송 정책 및 전파법령 정비방안 연구-전파법 해설집 및 업무 편람발간 연구-의 최종 연구개발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연 구 기 관: 한국전파진흥원 연구 책임자 : 박 태 옥 참여 연구원 : 최 상 호 승 훈 0 태 인 o] 종 준 선 훈 김 영 송 송 이 경 박 재 혜 민 김 로 사 이

요 약 문

1. 제목

전파방송 정책 및 전파법령 정비방안 연구- 전파법 해설집 및 업무편람 발간 연구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가. 연구의 목적

- 전파분야 업무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이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등 전파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법 해설집을 발간
- 방송과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전파자원의 관리체계 및 법제도 개선에 따른 전파방송 업무의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발간

나. 연구의 중요성

- 2000년 전파법 개정으로 무선국 허가·관리 중심의 전파관리 법체계에서 전파 자원의 확보 및 분배 등 전파자원의 이용에 관한 권리 중심의 전파관리 법체계 가 도입되었음
-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 국방 및 치안 등의 공공안전, 효율적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전파이용 유형의 다양화와 더불어 주파수 이용 절차 및 체계가 구분되고 발전하고 있음
- 이러한 주파수 이용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주파수 할당, 지정 및 사용승인 등의 주파수 이용 세분화 및 권리관계 설정 등에 따라 전파법령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해설집 발간이 필요함
- '99년 무선국 허가·관리 중심의 전파방송 업무편람 발간이 추진되었으며, 이후 무선국 허가업무, 자격검정업무, 방송국 허가업무 등 개별적인 업무에 대한 편람 등이 발간되었음
- 이에 따라 전파방송 개별 업무가 아닌 전체적 업무의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업무편람 작성이 필요함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전파법 해설집 및 전파방송 업무편람 관련 문헌연구

- 전파법 해설집 관련 문헌분석 연구를 위해 '01년 전파법 축조 해설집 발간 연구, '04년 전파법 해설집 등에 관한 기존 문헌을 분석하고, 시사점 및 전파법령 해설집 작성 방향을 도출함
- 국내 및 해외 전파법령 체계에 대한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전파법 체계의 연혁 및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외 법령체계와 비교를 통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개선방향을 도출함
- 전파방송 업무 관련 문헌분석 연구를 위해 '99년 전파방송 업무편람을 중심으로 업무현황 구분 및 체계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고, '00년 이후 전파방송 업무제·개정 현황에 대한 세부 분야별 업무편람을 분석함
- 전파방송 업무를 무선국 허가,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검사 및 감독 등 무선국 중심에서 주파수 분배, 이용, 무선국 개설, 사후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이 고 종합적인 업무체계 현황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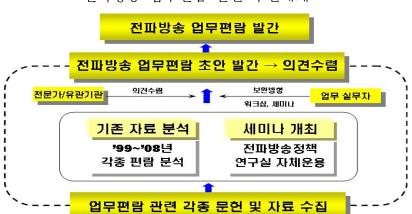
나. 전파법 해설집 및 전파방송 업무편람 발간추진

- 현재 전파법 체계- 총칙, 전파자원의 확보,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자원의 의 이용,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의 진흥, 무선종사자, 보칙 및 벌칙- 내에서 조항별 의의 및 내용 등에 대한 해설집 작성을 추진함



< 전파법 해설집 발간 추진체계 >

- 전파방송 전체적인 업무 흐름 체계를 기초로 주파수 분배, 주파수할당, 무선국 개설, 행정처분 등 16개 세부업무로 구분하여 세부업무별 업무 흐름도, 근거법 령, 담당기관, 세부 업무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편람을 작성함



< 전파방송 업무편람 발간 추진체계 >

4. 연구결과

- ◆ 전파법 해설집 및 전파방송 업무편람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 '01년 전파법 축조해설집 발간, '04년 전파법 해설집 등 전파법 해설집 관련 기 존문헌 분석 및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 '99년 전파방송 업무편람 및 무선국 허가, 자격검정업무, 방송국 허가업무 등 세 부 업무별 문헌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전파법 해설집 도출

- 전파 이용 관련 기술, 경제, 법학 분야의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의 참여를 통한 연구반 구성·운영을 통해 전파법 주요 조항별 검토 및 해설방안 도출
- 전파법 제1장 총칙 ~ 제9장 벌칙의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설을 추진하였으며, 현행 전파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해설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서론	o 전파법의 의의와 목적 o 전파법의 연혁 및 개정현황, 전파관련 국제법상의 규율 o 공물법·공물의 의의 및 전파의 공물성 여부 등 검토사항 o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관계 등 검토사항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o 전파자원 확보의 필요성 o 전파자원의 확보 방법 및 확보자원의 이용방법 o 전파이용중장기계획과 전파진흥기본계획의 통합 연혁 o 전파법상의 손실보상에 대한 해설(일반적인 손실보상과의 차이점 등)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o 주파수 분배, 할당의 의의 및 절차·방법 등 o 주파수 할당의 효과(주파수이용권 등) o 분배·할당 후의 사후관리(할당취소 등) o 주파수할당의 사례, 취소의 효과 등에 대한 해설 추가 o 재할당의 절차, 추가할당 개념의 필요여부 등 검토사항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o 무선국의 개설 및 운용, 방송국의 개설 및 운용, 우주통신의 운용 o 허가, 신고 등 개설방법별 해설 o 허가, 신고 등의 구별이유 및 연혁 등 해설 o 방송법상의 방송국에 대한 설명 추가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o 기술기준,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o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방안(임대, 위탁, 공용화) o 사후관리(전파감시, 조사 및 조치, 안전 및 보호, 전파응용설비 등) o 현행 전파법체계에서 "인증"이라는 표현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사항
제6장 전파의 진흥	o 전파정책심의위원회, 주파수 이용현황의 공개 o 연구 및 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o 전파관련기관(한국전파진흥원, 전파진흥협회) o 전파사용료, 수수료 o 전파사용료의 성격(사용료/부담료 여부, 할당대가와의 관계 등) o 전파사용료 산식의 제·개정 연혁 등에 대한 해설
제7장 무선종사자	o 무선종사자의 자격 o 무선종사자의 배치기준 o ITU에서 정하는 종사자에 관한 설명 추가 o 자격관련 업무(진흥원과 산업인력공단의 업무관할 등)에 대한 해설 o 통신운용과 기술운용의 의미 및 차이점 등 해설
제8장 행정처분과 형사벌	o 행정처분, 형사벌 및 과태료 o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론 해설 o 행정처분 등에 대한 업무수행 기관 설명(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

◆ 전파방송 업무편람 도출

- 기존 문헌문석 및 전파방송 업무 관련 법제도 제·개정 현황분석을 기초로 전파 방송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유관기관 전문가 및 업무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함
- 전파방송 업무편람은 총 5편(전파자원의 확보, 배분, 이용, 보호, 진흥)으로 구분 하였으며, 세부 업무별 16장으로 구분하여 구성함

목 차

제1장 서 론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9
제2절 연구의 추진방법 및 결과 10
제2장 전파법 해설집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21
제1절 기존문헌 분석
제2절 전파법체계 사례분석
제3장 전파방송 업무편람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13
제1절 기존문헌 분석 31
제2절 전파방송 업무체계 구분 및 세분화 32
제4장 해설집 및 업무편람 발간 추진방안 53
제1절 전파법 해설집 발간 35
제2절 전파방송 업무편람 발간 37
제5장 전파법 해설집 주요 내용 04
제1절 전파법 개요 40
제2절 전파자원의 확보 54
제3절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64
제4절 전파자원의 이용 77
제5절 전파자원의 보호 91
제6절 전파의 진흥 98
제7절 무선종사자 99
제8절 제재처분 및 실효성 확보수단 100
제6장 전파방송 업무편람 111
제1절 전파자원의 확보
제2절 전파자원의 배분 119
제3절 전파자원의 이용 132
제4절 전파자원의 보호
제5절 전파이용의 진흥 164
제7장 결 론 173

표 목 차

<표 2-1> 전파법 축조해설집 발간 연구내용 요약	31
<표 2-2> 전파법 축조해설집 발간 연구 목차현황	11
<표 2-3> 2004년 전파법 해설집 목차현황	5 1
<표 2-4> 2004년 전파법 해설집 설명 내용 예시	3 1
<표 2-5> 전파법 해설집 사례 비교분석	71
<표 2-6> '61년 전파관리법 법체계 현황	Ð
<표 2-7> '81년 전파관리법 법체계 현황 (2
<표 2-8> '91년 전파법 법체계 현황	2
<표 2-9> 2000년 전파법 법체계 현황	4 2
<표 2-10> 미국의 전파관련 법체계 현황	52
<표 2-11> 영국의 전파관련 법체계 현황	32
<표 2-12> 호주의 전파관련 법체계 현황	72
<표 2-13> 일본의 전파관련 법체계 현황	32
<표 2-14> 국내 전파법 법체계 개편현황	92
<표 2-15> 국내외 전파법 법체계 현황	3 (
<표 3-1> 전파방송 업무편람 목차 비교	23
<표 4-1> 해설집 발간 연구반 구성 및 활동 내용	53
<표 4-2> '08년 전파법 해설집 관련 주요검토 사항 (3
<표 4-3> 전파법 개정안 및 편람발간 추진체계	33
<표 5-1> 무선국 개설의 유형	18
<표 6-1> WRC 회의 별 주요 의제	1
<표 6-2> 위성궤도 등록·할당 관련 주요규정 ······	1
<표 6-3> 주파수 이용실적 판단기준 (1
<표 6-4> 회수·재배치 유형에 따른 세부 절차 7	1
<표 6-5> 회수·재배치 관련 주요 규정 ······ {	ł
<표 6-6> 주파수 분배 관련 주요규정 (1
<표 6-7> 주파수 분배표 예시 (285-325kHz) ······	121
<표 6-8> 주파수 분배에 따른 세부 용도	R
<표 6-9> 주파수 할당 관련 주요규정 2	2
<표 6-10> 주파수 할당 계획 수립 절차	2
<표 6-11> 주파수 할당 유형	2

<笠 6-12>	주파수 지정 관련 주요규정	2
<笠 6-13>	주파수 지정 시의 심사 기준	92
<笠 6-14>	주파수 지정 내용 및 원칙	3
<笠 6-15>	· 주파수 양도·임대 관련 주요규정	B
<笠 6-16>	주파수 이용권의 속성	3
<笠 6-17>	무선국 허가 관련 주요규정	3
<笠 6-18>	무선국 허가 개요도	4
<笠 6-19>	무선국 국종별 허가 기간	4
<笠 6-20>	무선국 국종별 허가의 특례	3
< 至 6-21>	무선국 개설 유형별 절차	8
< 至 6-22>	허가 예외의 종류 및 무선국 개설 절차	3
<笠 6-23>	방송국 허가 관련 주요규정	4
<笠 6-24>	소출력 방송국 허가 세부 사항	1
< 至 6-25>	무선국 검사 관련 주요규정	24
< 至 6-26>	무선국 검사의 종류	4
<笠 6-27>	무선국 검사 특례 대상 무선국	4
< 至 6-28>	무선국종별 검사주기 및 유효기간	4
< 張 6-29>	무선국 운용 관련 주요규정	4
<笠 6-30>	행정처분 별 세부 내역	4
<笠 6-31>	무선종사자 관련 주요규정	4
<笠 6-32>	무선종사자 자격종별 종사범위	G
<笠 6-33>	무선국 별 무선종사자 정원	3
<笠 6-34>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종류	4
<笠 6-35>	무선종사자 응시 자격	5
<笠 6-36>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시험과목	73
<笠 6-37>	자격검정 시행방법	73
<笠 6-38>	전파관련 행정처분 종류 및 처분규정	8
<班 6-39>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	9
<笠 6-40>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체계 개선방안	B
<笠 6-41>	현행법상 인증관련 규정 정리	13
<笠 6-42>	전파사용료 관련 주요규정	4
<笠 6-43>	전파사용료 부과·면제·감면 대상	4
<笠 6-44>	전파사용료 부과 기준 및 규모	5

. @		·45> 전파사용료 납부 시기	<丑 6-45	<
· 73		·46> 수수료 관련 주요규정	<翌 6-46	<
· 73	대상	·47> 수수료 부과·면제·감면	<笠 6-47	<
. 8		·48> 허가수수료 부과 내역	<翌 6-48	<
· B		·49> 검사수수료 부과 내역	<笠 6-49	<
. 1	방법 ······	-50> 수수료 종류 별 납부병	<笠 6−50	<

그 림 목 차

<그림	1-1>	전파법 해설집 발간 주진체계	·01
<그림	1-2>	전파방송 업무편람 발간 추진체계	·11
<그림	2-1>	현행 전파법 법체계 현황	·81
<그림	6-1>	ITU 국제 주파수분배 대상(3㎢ ~ 3,000땐 대역) ·····	1.1
<그림	6-2>	전파규칙에 따른 3개 지역 구분 현황	a
<그림	6-3>	주파수 할당 취소 절차	2
<그림	6-4>	주파수 재할당 절차	2
<그림	6-5>	주파수 전환 절차	8
<그림	6-6>	주파수 지정 절차	B
<그림	6-7>	신규허가 처리 절차	8
<그림	6-8>	변경허가 처리 절차	3
<그림	6-9>	재허가 처리 절차	8
<그림	6-10>	> 허가의 승계 처리 절차	3
<그림	6-11>	> 준공검사 절차 및 평균 소요기간	4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과제는 전파법 해설집 및 업무편람 발간에 관한 연구로 전파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전파관리 체계 및 법제도의 개선에 따른 전파법령 해설집 발간과 전파방송 업무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전파법 해설집 발간은 전파분야 업무담당자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이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등 전파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전파방송업무편람 발간은 방송과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전파자원의 관리체계 및 법제도 개선에 따른 전파방송 업무의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파법 해설집과 업무편람 관련하여 기존에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으나, 2000년 이후 전파관리 체계 및 법제도 개선에 따라 전파법 규정 및 업무수행 절차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전파법 해설집 관련해서는 2000년 전파법 개정으로 무선국 허가·관리 중심의 전파관리 법체계에서 전파자원의 확보 및 분배 등 전파자원의 이용에 관한 권리 중심의 전파관리 법체계가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 국방 및 치안 등의 공공안전, 효율적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전파이용 유형의다양화와 더불어 주파수 이용 절차 및 체계가 구분되고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 이용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주파수 할당, 지정 및 사용승인 등의 주파수 이용 세분화 및 권리관계 설정 등에 따라 전파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집 발간이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전파방송 업무편람 관련해서는 '99년 무선국 허가·관리중심의 전파방송 업무편람 발간이 추진되었으며, 이후 무선국 허가업무, 자격검정업무, 방송국 허가업무 등 개별적인 업무에 대한 편람 등이 발간되었다. 이에 따라 전파방송 개별 업무가 아닌 전체적 업무의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업무편람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파법 해설집 발간을 위해서는 기존 문헌을 분석하고, 국내외 법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파법 해설은 현재의 전파법 제1장 총칙 ~ 제9장 벌칙까지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설을 추진하고, 조항 특성을 고려하여 해설집의 내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였다. 전파방송 업무편람 발간을 위하여 무선국 허가 중심의 기존 업무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고, '00년 이후 전파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업무및 전체적인 체계를 분석한 이후, 세부 업무별 편람 작성을 추진하였다.

제2절 연구의 추진방법 및 결과

본 과제는 전파법 해설집 발간과 전파방송 업무편람 발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설집은 전파법 규정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업무편람은 업 무 흐름도, 규정 및 관리, 세부절차를 위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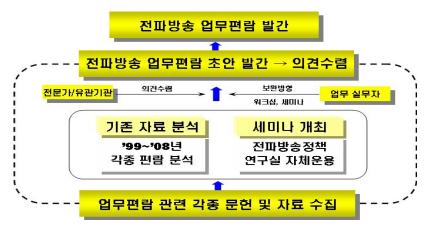
첫째, 전파법 해설집의 주요 내용 및 추진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파법 해설집 관련 문헌분석 연구를 위해 '01년 전파법 축조 해설집 발간 연구, '04년 전파법 해설집 등에 관한 기존 문헌을 분석하고, 시사점 및 전파법령 해설집 작성 방향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및 해외 전파법령 체계에 대한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전파법 체계의 연혁 및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외 법령 체계와 비교를 통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개선방향을 도출 하였다. 전파법 해설집 발간을 위하여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현재 전파법 체계-총칙, 전파자원의 확보, 전파자원의 분배·할당, 이용, 보호, 전파의 진흥, 무선종사자, 보칙 및 벌칙-내에서 조항별 의의 및 내용 등에 대한 해설집 작성을 추진하였으며, 해설집 초안에 대하여 실무 담당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및 보완을 추진하였다.



<그림 1-1> 전파법 해설집 발간 추진체계

둘째, 전파방송 업무편람의 주요 내용 및 추진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파방송 업무 관련 문헌분석 연구를 위해 '99년 전파방송 업무편람을 중심으로 업무현황구분 및 체계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고, '00년 이후 전파방송 업무 제·개정 현황에 대한 세부 분야별 업무편람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전파방송 업무를 무선국 허가,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검사 및 감독 등 무선국 중심에서 주파수 분배, 이용, 무선국 개설, 사후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업무체계 현황을 도출하였다.

전파방송 업무편람은 기존 자료분석,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파방송 전체적인 업무 흐름 체계를 기초로 주파수 분배, 주파수할당, 무선국 개설, 행정처분 등 16개세부업무로 구분하여 세부업무별 업무 흐름도, 근거법령, 담당기관, 세부 업무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편람을 작성하였으며, 업무편람 초안에 대하여 실무 담당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및 보완을 추진하였다.



<그림 1-2> 전파방송 업무편람 발간 추진체계

본 과제의 연구결과로는 첫째, 전파법 해설집 및 전파방송 업무편람 문헌연구 및 사례 분석으로 '01년 전파법 축조해설집 발간, '04년 전파법 해설집 등 전파법 해설집 관련 기존문헌 분석 및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99년 전파방송 업무편람 및 무선국 허가, 자격검정업무, 방송국 허가업무 등 세부 업무별 문헌분석 및 시사점 도출하였다. 둘째, 전파법 해설집 도출로서, 전파 이용 관련 기술, 경제, 법학 분야의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의 참여를 통한 연구반 구성·운영을 통해 전파법 주요 조항별 검토 및 해설방안 도출하였으며, 전파법 제1장 총칙 ~ 제9장 벌칙의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설을 추진하였으며, 현행 전파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해설을 추진하였다. 셋째, 전파방송 업무편람 도출로서, 기존문헌문석 및 전파방송 업무 관련 법제도 제·개정 현황분석을 기초로 전파방송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유관기관 전문가 및 업무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파방송 업무편람은 총 5편(전파자원의 확보, 배분, 이용, 보호, 진흥)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업무별 16장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제2장 전파법 해설집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제1절 기존문헌 분석

1. 전파법 해설집 사례분석

기존의 전파법 해설 관련해서는 '01년 전파법 축조해설집 발간(이하 축조해설집) 연구 보고서와 '04년 전파법 해설집(이하 전파법 해설집)의 두 자료가 대표적이다. 우선 축조해설집은 '00년 전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전파자원의 확보 및 배분이라는 새로운 전파관리 체계에 대한 대국민의 이해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전파법 연혁, 법령체계, 행정기구, 국제조약 관계, 전파법 이용 및 이용촉진, 전파법 규정에 대한 설명 등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전파법 해설집은 전파법 각 규정에 대한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연역을 포함하였으며, 주요 개년 및 절차 등에 대한 도표 및 그림 등을 포함하여 일종의 업무편람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상기 해설집 사례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전파법 축조해설집 발간 연구1)는 2000년 전파법 전면 개정에 따라 기존의 무선국 허가·감시·감독 등 전파이용질서 유지 중심의 기술법적 성격에서 전파의 진흥을 위한 산업법적 성격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파정책의 주요 과제를 전파자원의 확보·배분·이용·진흥의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전파법 편재가이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서 2000년 개정된 전파법에서 제2장(전파자원의 확보) 신설과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7조(손실보상), 제8조(전파이용 중·장기계획)를 포함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축조해설집의 경우 전파산업 동향, 주요국 전파정책 및 법제도 현황 등에 대하여관련 연구 및 정책보고서를 참조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무선국 개설 허가의 절차와같은 경우에는 업무 흐름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전파법 이전의 법체계와 개정에 따른 법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현행 법체계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파법 및 전파법시행령 등 전파법령과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전파이용 관계법령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통하여 관련 법령들의 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ITU 등 전파관련 조직과 관련 회의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국제적인 협의를 거쳐 주파수 이용이 조정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¹⁾ 연구기관 : 광주대학교, 연구책임자 : 서순복, 정보통신학술 연구과제 지정발간 00-01

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표 2-1> 전파법 축조해설집 발간 연구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연구목적	 o '61년 전파법 제정된 이래 부분개정이 이루어졌으나 2000년 전면 개정에 상응하는 작업이 이루어짐 o 전파법령 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고,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설집 발간 필요 o 전파분야 정책 및 제도의 체계와 내용을 축조 해설하고,이를 통해 법제도 운용의 효율화 제시 	
연구의 구성 및 범위	o 전파법의 연혁 및 전파법령 체계 제시 o 전파법 조문별로 법해석론 및 법정책적 해설 시도 o 각 장별 법해설에 앞서 장별 법제정의 의의 및 배경, 취지를 설명 o 전파법 제1장 총칙 ~ 제9장 벌칙 조문별 해설	
연구의 내용 및 결과	o 기존의 무선국 허가·검사·감독 등 전파이용질서 유지의 기술법적 성격 o 기술법 체계에서 전파진흥의 산업법 체계로 전환하여 전파정책의 4대 과제라 할 수 있는 전파자원의 확보·배분·이용·진흥 개념으로 재구성 o 2000년 전면 개정된 전파법 주요 구분 전파자원의 확보, 분배a및 할당, 이용, 보호, 무선종사자, 보칙, 벌칙-에 따라 해설	
정책적 활용 내용	o 전파법·전파정책·전파경제학 등 학제적 해설을 통한 차별화된 해설을 시도하였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개정 전파법의 내용 홍보와 이해 증진 에 기여	

자료: 서순복, "전파법 축조해설집 발간 연구", 광주대학교(2001)

축조해설집의 구성을 살펴보면, 2000년 전파법의 기본적인 구성 체계에 따라 조문별 해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파법 총론에서는 전파법의 연혁과 법령체계, 행정기기, 전파법과 조약과의 관계, 전파법의 이념과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기본적인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후 각 장에서는 현행 전파법 체계 내에서 의의와 배경, 각조문별 해석의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제3장 전파자원의 확보에서 제9장 보칙까지는 각장의 의의 및 배경과 조문별 해석이 이루어졌으며, 주파수할당제도, 무선기기 인증제도, 전자파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에 대한 제시를 통해서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10장 벌칙에서는 전파범죄의 특성과 원인, 벌칙의 일반론에 대하여 설명을제시한 이후에 전파법상의 벌칙을 해설함으로써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전파법 축조해설집 발간 연구 목차현황

	구분	세부 목차
제1장	전파법 해설의 연구 배경고	- 목적
		제1절 서설
		제2절 전파법의 연혁 및 전파법령 체계
-1) O 7).	기네비 호교	제3절 전파행정기구
세2상	전파법 총론	제4절 전파법과 조약과의 관계
		제5절 전파법의 이념과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6절 기본적 용어의 정의
제3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4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제5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6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7장	전파의 진흥	
제8장	무선종사자	
제9장	보칙	
		제1절 전파범죄의 특성 및 원인
제10장	· 벌칙	제2절 벌칙 총설
		제3절 전파법상의 벌칙

자료: 서순복, "전파법 축조해설집 발간 연구", 광주대학교(2001)

전파법 해설집²)은 '04년 전파방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전파이용 용어, 개념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이해를 제고하고, 전파법의 각 규정에 대한 제정의 배경 및 개정의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기 위하여 발간을 추진하였다. 전파법 해설집 구성을 보면, 제1장 전파행정의 개요, 제2장 전파관계 법규, 제3장 국내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파행정의 개요에서는 관리체계, 국내 및 국제 전파행정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파관계 법규에서는 관계 법령 및 행정조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04년 해설집의 경우에는 전파법 조문별 해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으나, 조문을 크게 국내 전파법-총칙, 전파자원의 확보, 분배 및 할당-과 전파자원의 이용-나머지 조항-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04년 전파법 해설집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대한 법적인 해석보다는 전파이용 실무진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발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전파방송업무편람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설집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전파행정의 개요 및 전파관계 법규에서도 국내외 전파행정의 관계 및 전파행정 조직등을 중심으로 기술이 된 것을 보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고 하겠다.

²⁾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발간(2004.10)

<표 2-3> 2004년 전파법 해설집 목차현황

구분	세부 목차		
	제1절 전파행정의 관리체계		
제1장 전파행정의 개요	제2절 국내 전파통신 행정		
	제3절 국제 전파행정과 국내 전파행정의 관계		
케이카, 기러 리케 버그	제1절 전파관계 법령		
제2장 전파관계 법규	제2절 전파행정의 조직		
	제1절 총칙		
제3장 국내 전파법	제2절 전파자원의 확보		
	제3절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4절 전파자원의 보호		
세4명 선파자원의 이용	제5절 전파의 진흥		
	제6절 무선종사자		
	제7절 보칙		
	제8절 벌칙		
부칙	※ 제1조(시행일)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료: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전파법 해설집", (2004.10)

'04년 전파법 해설집의 설명 방식을 살펴보면, 해당 조문을 제시하고, 조문의 취지, 조문의 해설, 전파법 제·개정 내역, 외국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전파법 제1조(목적)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조항을 제시하고, 조문의 취지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함에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조문의 해설에서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 촉진, 전파진흥의 도모, 공공복리 증진에 대하여구체적인 개념 및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파법 제·개정에 관한 내역을해당 법률과 함께 제시함으로서 전파법 목적의 변화 방향 및 시기 등에 대하여알 수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의 전파관리 목적 및 법령, 조직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국내 규정과 해외 사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예로는 무선국 개설 중에서 무선국 분류와 관련해서 단순히 관련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사진 및 그림 등을 제시하여 이동통신 기지국, 육상이동국, 이동중계국 등에 대하여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이 '04년 전파법은 전파이용 관련 조문에 대한 법률적 해석보다는 일

반적인 해석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도표나 그림, 절차 흐름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소 업무 편람적 성격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4> 2004년 전파법 해설집 설명 내용 예시

구분	전파법 해설집 내용
	1. 電波法의 目的
제1절 총칙 中 전파법의	第1條(目的) 이 法은 電波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電波利用 및 電波에 관한 技術의 開發을 촉진함으로써電波의振興을 도모하고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목적 설명	□ 조문취지 설명(생략) □ 조문해설 설명(생략)
	□ 전파법 제·개정 내역
전파법 목적 조문의 제·개정 내역	第1條 (目的) 本法은 電波의 合理的인 管理를 함으로써 公共의 福祉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1961.12.30 법률 제924호 제정] 第1條 (目的) 이 法은 電波의 효율적인 管理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無線通信의 발전을 기하고 電波利用을 促進함으로써 公共福和의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1989.12.30 법률 제4193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電波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電波利用 및 電波에 관한 技術의 開發을 촉진함으로써 電波의振興을 도모하고,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1991.12.14 법률 제4441]
	□ 외국 사례(생략)
무선국 개설 中 무선국 분류	□ 기지국, 육상이동국 및 이동중계국(설명 생략) 육상이동국1 (휴대단말기) 이동중계국 기지국 (이동통신) (차량용 단말기)

자료: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전파법 해설집", (2004.10)

2.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현행 전파법 규정에 대한 해설집 사례로 '01년 전파법 축조해설집과 '04년 전파법 해설집 사례를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였다.

<표 2-5> 전파법 해설집 사례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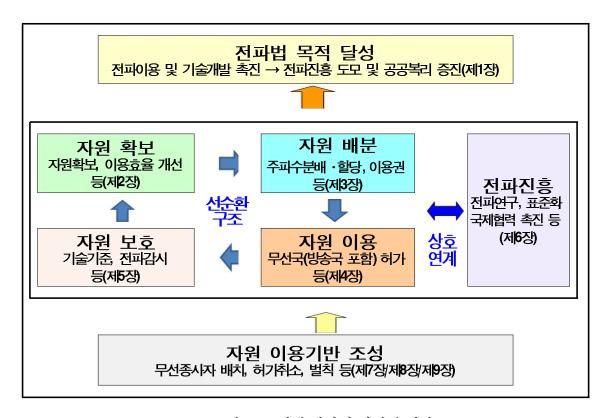
구분	'01년 축조해설집 '04년 전파법 해설집
	o 크게 전파법 총론과 전파법 조문 o 크게 전파행정과 전파법 조문
	설명으로 구분이 가능함 설명으로 구분이 가능함
 구성 및 체계	o 해설집 체계는 현행 전파법 체계 o 전파법 조문 구분을 국내 전파
〒多 吳 세세 	유지함 법과 전파자원 이용으로 구분함
	o 해설집의 장과 절 구분을 가급적 o 세부 조문 설명은 현행 전파법
	전파법 체계와 유사하게 구성함 체계를 유지함
	o 전파법의 연역과 전파법령 관계 o 전파행정의 관리체계
	o 전파행정 및 조약관계 o 국내외 전파행정 관계
내용 및 설명	o 전파이념 및 이용촉진 등 설명 o 전파관계 법령, 전파행정 조직
	o 세부 조문별 의의 및 배경을 기 o 세부 조문별 취지,해석,제·개
	술한 이후, 해설 추진 정 연역, 외국 사례 등 제시
	o 전파법 조문별 법적인 해석이 처 o 조문 제·개정 위주,그림 및
	음으로 이루어진 해설서 도표 중심의 편람적 성격 해설서
트기 미 왕과	o 주요 규정에 대한 제 ·개정 연역 o 전파관련 법령에 대한 단순 제시
특징 및 한계	미포함, 전파사용료 산정기준 등 보다는 관계에 대한 법적해석 필요
	주요 사항에 대한 세부적 설명 하고, 전파이용 절차 개선 등에 따
	부족 른 보완이 필요함

전파법 해설집 작성을 위해서는 전파법의 의의와 목적과 타 주요 법령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파법의 연역에 대해서도 시기적 구분을 할 수 있으며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파사용료 산정기준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및 개선사항, 세부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실제 업무 담당자 및 일반 국민들이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전파법 해설집의 구성 및 체계는 현행 전파법 체계를 고려하여 장과절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전파법 체계, 즉 전파자원의 확보, 배분, 이용, 보호, 진흥, 행정처분 등 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장에서 설명의 용이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파법 해설집은 업무편람의 성격보다는 법적인 해석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전파법체계 사례분석

1. 국내 전파법체계 사례분석

현행 전파법 체계는 전파자원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을 벗어나, 전파자원 확보 및 전파의 진흥법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전파법의 모태인 '61년 전파관리법은 무선국 허가, 운용 및 감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법 성격의 전파법령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후 '91년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개정하면서 「전파진흥」을 전파법의 목적에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의 진흥및 재원 규정 등의 도입으로 진흥법적 성격으로 전환하였다. 전파이용이 확대되면서 전파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를 위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권을 일정 대가를 받고 부여하면서 전파관리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00년 전파법 개정을통해 자원확보→배분→이용→보호의 전파관리 선순환 체계와 전파진흥 규정 정비 등으로 자원 확보, 관리, 진흥의 법적 성격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림 2-1> 현행 전파법 법체계 현황

국내 전파법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61년 전파관리법 제정 이후 주요 제·개정이 이루어진 시기에 전파이용 관련하여 주요 법규정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61년 전파관리법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전파관리법은 전파의 합리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선국 허가 및 감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법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표 2-6> '61년 전파관리법 법체계 현황

구분	세부 규정	구분	세부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 제3조 (전파에 관한 조약)		- 제38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등) - 제39조 (무선국의 운용)
제2장 무선국의 허가	- 제4조 (무선국의 개설) - 제5조 (결격사유) - 제6조 (허가의 신청과 심사) - 제7조 (가허가) - 제8조 (공사설계등의 변경) - 제9조 (준공검사) - 제10조 (가허가의 취소) - 제11조 (무선국의 허가) - 제12조 (허가의 유효기간) - 제13조 (허가장), 제4조(재허가절차 - 제15조 (윤용개시일의 신고) - 제16조 (변경등의 허가) - 제17조 (변경검사) - 제18조 (주파수등의 변경) - 제19조 (허가의 승계) - 제20조 (무선국의 폐지의 운용휴지) - 제21조 (허가장의 반환) - 제22조 (무선국의 고시) - 제23조 (허가의 특례)	제5장 운용	- 제38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등) - 제39조 (무선국의 운용) - 제40조 (무선국의 운용예외) - 제41조 (혼신등의 방지) - 제42조 (비밀의 보호) - 제43조 (의사공중선회로의 사용) - 제44조 (실험무선국의 통신) - 제45조 (시계, 업무서류등의 비치) - 제46조 (통신방법등) - 제47조 (선박국등의 운용) - 제48조 (운용시간) - 제49조 (심무시간) - 제50조 (청수의무) - 제51조 (동전) - 제51조 (동전) - 제52조 (조난통신), 제3조 (긴급통신) - 제55조 (선박국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센 - 제56조 (통신권출입통지) - 제57조 (준용) - 제57조 (준용) - 제58조 (항공기국의 통신연락) - 제59조 (기타운용조건)
제3장 무선설비	- 제24조 (전파의 질) - 제25조 (수신설비의 조건) - 제26조 (안전시설) - 제27조 (계기,예비품의 비치) - 제28조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 국의 조건) - 제29조 (기술기준) - 제30조 (무선설비의 조작과 공사) - 제31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 제32조 (면허) - 제33조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34조 (면허의 유효기간) - 제35조 (면허의 개신) - 제36조 (자격고시 및 면허)	제6장 검사	- 제60조 (무허가무선국등의 검사) - 제61조 (정기검사) - 제62조 (임시검사) - 제63조 (증표의 제시)
			- 제64조 (주파수등의 변경과 손실보상 - 제65조 (전파의 발사의 정지) - 제66조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무선통생
제4장 무선종사 자		제7장 감독	- 제66조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무선통센 - 제67조 (무선국의 허가취소등) - 제68조 (공중선의 철거) - 제69조 (무선종사자의 면허의 취소당 - 제70조 (보고) - 제71조 (수신설비에 대한 감독)
		제8장 잡칙	- 제72조 (고주파이용설비) - 제73조 (무선설비의 기능의 보호) - 제74조 (동전) - 제75조 (수수료의 징수)
	- 제37조 (통신장의 배치, 무선종사자의 자격별정원)	제9장 벌칙	- 제76조 (벌칙) - 제77조 (동전) ~ 제85조 (동전) - 제86조 (양벌규정), 제87조 (벌칙)

전파관리법 시기의 특징은 상업적인 무선 통신과 방송 서비스 도입 이전의 전파 관리를 위한 법체계로서 현재의 주파수할당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주 로 무선국 허가 및 운용, 검사 및 감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파의 진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71년과 '81년 전파관리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71년에는 시험전파 발사, 간이한 허가절차,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무선종사자 협회 등의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81년에는 무선종사자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표 2-7> '81년 전파관리법 법체계 현황

구분	세부 규정	구분	세부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전파에 관한 조약)		- 제38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등) - 제39조 (무선국의 운용) - 제40조 (무선국의 운용예외)
제2장 무선국의 허가	- 제4조 (무선국의 개설) - 제5조 (결격사유) - 제6조 (허가의 신청과 심사) - 제7조 (가허가) - 제7조의2 (시험전파의 발사) - 제8조 (공사설계등의 변경) - 제9조 (준공검사) - 제10조 (가허가의 취소) - 제12조 (허가의 유효기간) - 제13조 (허가의 유효기간) - 제15조 (순용개시일의 신고) - 제16조 (변경등의 허가) - 제17조 (변경검사) - 제18조 (주파수등의 변경) - 제19조 (허가의 승계)	제5장 운용	- 제41조 (혼신등의 방지) - 제42조 (비밀의 보호) - 제43조 (의사공중선회로의 사용) - 제44조 (실합국등의 통신) - 제45조 (시계, 업무서류등의 비치) - 제46조 (통신방법등) - 제47조 (선박국등의 운용) - 제48조 (운용시간), 제49조 (심묵시간) - 제50조 (청수의무) - 제51조 (동전) - 제52조 (조난통신), 제53조 (긴급통신) - 제54조 (안전통신) - 제56조 (선박국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신) - 제56조 (통신권출입통지) - 제57조 (준용) - 제58조 (항공기국의 통신연락) - 제59조 (기타운용조건)
	- 제20조 (무선국의 폐지의 운용휴계 - 제21조 (허가장의 반환) - 제22조 (무선국의 고시) - 제23조 (허가의 특례)	제6장 검사	 제60조 (무허가 무선국의 조사 및 조치) 제61조 (정기검사) 제62조 (임시검사) 제63조 (증표의 제시)
제3장 무선설비	- 제24조 (전파의 질) - 제25조 (수신설비의 조건) - 제26조 (안전시설) - 제27조 (계기, 예비품의 비치) - 제28조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 기국의 조건) - 제29조 (기술기준) - 제29조의 2 (무선설비의 기기 의 형식검정)	제7장 감독	- 제64조 (주파수등의 변경과 손실보상) - 제65조 (전파의 발사의 정지) - 제66조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무선통신) - 제67조 (무선국의 허가취소등) - 제68조 (무선설비의 철거) - 제69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등) - 제70조 (보고) - 제71조 (수신설비에 대한 감독)
	의 영식검정) - 제29조의3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제7장의2 무선종사자 협회	- 제71조의2 (무선종사자협회) - 제71조의3 (설립의 인가 및 공고) ~ 제71조의 9 (민법의 준용)
제4장 무선종사 자	- 제30조 (무선설비의 조작과 공사 - 제31조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 제32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 제33조 (수첩을 교부하지 아 니하는 경우) - 제34조 삭제(67년) - 제35조 삭제(67년) - 제36조 (자격검정 및 수첩교부	제8장 잡칙	- 제72조 (고주파이용설비) - 제73조 (무선설비의 기능의 보호) - 제74조 (동전) - 제74조의2 (전자장해방지구역의 지정) - 제74조의3 (고층건축물등에 관한 승인) - 제75조 (수수료의 징수) - 제75조의2 (준용규정) (67년) - 제75조의3 삭제 - 제75조의4 (권한의 위임)
	- 제37조 (통신장의 배치,무선총 사자의 자격별정원)	제9장 벌칙	- 제76조 (벌칙) - 제77조 (동전) ~ 제85조 (동전) - 제86조 (양벌규정), 제87조 (벌칙)

'80년대에도 기존의 전파관리 법체계 내에서 전파이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시험전파 및 실험국 등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었으며, 간이한 허가절차 및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무선종사자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80년대 들어 무선통신의 도입 및 성장으로 인하여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였으며, 무선국 개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의 전파관리에 대 한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무선통신 관련 전파이용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전파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파이용 기술개발 등 전파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91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파관리법, 즉 관리법적 성격에서 전파의 진흥을 포함하는 전파법 체계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전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 첫째, 전파법의 제명을 "전파관리법"에서 "전파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설치가 간편한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를 도입하여 무선국의 허가절 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전파에 관한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으며, 넷째, 전 파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등은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체의 기술인력 활용 등을 위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도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되, 무선국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 으며, 다섯째,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당해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 또는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정지 또는 제한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 또한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규제기관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전파이용기술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하 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여덟째,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하였다.

'91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관리법적 성격에서 진흥 법적 성격을 포함하였으나, 법체계의 기본 틀은 무선국 허가, 운용, 검사 및 감독, 보칙 및 벌칙 등의 관리법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전파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기기관 육성, 이용기술의 개발 등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향후 무선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전파관리 비용의 충당과 아울러 전파진흥의 재원확보를 위한 전파사용료 부과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초기 전파사용료는 모든 무선국을 대상으

로 부과하였으나, 공공성, 서비스 제공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2-8> '91년 전파법 법체계 현황

구분	세부 규정	구분	세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개정(전파진흥 포함) 제2조 (정의) 제3조 (전파에 관한 조약) 		- 제47조 (선박국등의 운용) - 제48조 (운용시간) - 제49조 (심묵시간) - 제50조 (청취의무) - 제51조 (청위의무)
	- 제4조 (무선국의 개설) - 제5조 (결격사유) - 제6조 (허가의 신청과 심사) - 제7조 (가허가) - 제7조의2 (시험전파의 발사) - 제8조 (공사설계등의 변경) - 제9조 (준공검사) - 제10조 (가허가의 취소)	제5장 운용	- 제52조 (조단중선) - 제53조 (긴급통신) - 제54조 (안전통신) - 제55조 (선박국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신 - 제56조 (통신권출입통지) ~ 제 5 % (기타운용조건) = 상동
제2장 무선국의	- 제11조 (무선국의 허가) - 제12조 (허가의 유효기간) - 제13조 (허가장)	제6장 검사	- 제60조 (조사 및 조치) (89년) - 제61조 (정기검사) - 제62조 (임시검사) - 제63조 (증표의 제시)
하가	- 제14조 (간이한 허가절차) - 제15조 (윤용개시일의 신고) - 제16조 (변경등의 허가) - 제17조 (변경등의 허가) - 제18조 (주과수등의 변경) - 제19조 (허가의 승계) - 제20조 (무선국의 폐지의 운용휴지) - 제21조 (허가장의 반환) - 제22조 (무선국의 고시) - 제23조 (허가의 특례)	제7장 감독	- 제63조의2 (전파감시) (89년) - 제64조 (주파수등의 변경과 손실보생) - 제65조 (전파의 발사의 정지) - 제66조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무선통신) - 제67조 (무선국의 허가취소등) - 제67조의2 (과징금의 부과) - 제68조 (무선설비의 철거) - 제69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당) - 제70조 (보고) - 제71조 (수신설비에 대한 감독)
	- 제24조 (전파의 질) ~ 제27조(계기) 예비품의 비치) = 상동 - 제28조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의 조건) - 제28조의2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제7장 의2 무선관리 사업단	- 제71조의2 (무선종사자협회) - 제71조의3 (설립의 인가 및 공고) ~ 제71조의 7 (민법의 준용)
제3장 무선설비	- 제29조 (기술기준) - 제29조의2 (형식검정) (89년) - 제29조의3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 제29조의4 (전자파장해방지기준풍 (8) 년 - 제29조의5 (전자파장해검정) (89 년	제7장의 3 전파의 진흥	 제71조의8 (전파진흥기본계획) 제71조의9 (연구기관등의 육성) 제71조의10 (전파이용기술의 개발) 제71조의11 (주파수이용공고) 제71조의12 (한국전파진흥협회)
	 제29조의6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 무선설비의 임대 허용 제29조의7 (기술기준확인증명) 		- 제72조 (고주파이용설비) - 제73조 (무선설비의 기능의 보호) - 제74조 (동전)
제4장 무선종사 자	- 제30조 (무선설비의 조작과 공사) - 제31조 (무선종사의 지역종목 및종사범) - 제32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 제33조 삭제 - 제34조 ~ 제35조 삭제(67년) - 제36조 (자격검정 및 수첩교부) - 제37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제8장 보칙	 제74조의2 (전자장혜방지구역의 지정 기 제74조의3 (고층건축물등에 관한 승인 제74조의4 (방송수신의 보호) 제74조의5 (전파사용료) 제75조 (수수료의 징수) 제75조의2 (준용규정) (67년) 제75조의3 삭제 제75조의4 (권한의 위임·위탁)
제5장 운용	- 제38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등) ~ 제42조 (비밀의 보호) = 상동 - 제42조의2 (통신보안의 준수 (89 년 - 제43조 (의사공중선회로의 사용) - 제44조 (실험국등의 통신) - 제45조 (시계, 업무서류등의 비치 - 제46조 (통신방법등)	제9장 벌칙	- 제76조 (벌칙) - 제77조 (벌칙) ~ 제83조 (벌칙) - 제84조 (과태료) ~ 제86조2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제87조 (양벌규정)

'90년대 무선통신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권 또는 면허를 주파수 경매방식을 통해 이용대가를 부 과하는 시장기반의 전파관리 체계를 도입하였다. 즉,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20째 또는 30째 등의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자원의 사적인 이용에 대한 대가 환수를 위하여 주파수 이용권 설 정 및 이를 할당하는 전파관리 체계가 도입되었다. 국내의 경우도 '90년대 PCS 사업 권 부여를 계기로 사업권 이외 주파수 이용에 대한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 며, 무선통신의 급성장에 대한 주파수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파이 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 전파법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급변하는 전파환경 변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 하여, 무선국의 허가·검사 및 감독 등 전파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한 규제위주의 현행 전파법을 전파자원의 확보·배분·이용 및 진흥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전파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한한 전 파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과 전파이용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국제 등록, 위성망의 혼신조정 및 우주국의 개설조건등 우주통신을 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 하여 우주통신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을 정하도록 하고,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또는 자연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전파의 이용촉진 및 전파산 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파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 용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이동전화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주파수대역 및 전파의 폭등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파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였다.

2000년 전파법 전면개정으로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전파자원 확보, 배분, 이용, 보호라는 전파관리 선순환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무선국 허가, 운용, 검사 및 감독의 전파법 체계에서 전파자원의 확보, 배분, 이용 및 보호 등의 주파수 중심의 전파법 체계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전파자원의 확보를 위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시행 및 손실보상 규정, 주파수 할당 및 주파수 이용권등의 설정 규정 등은 기존의 무선국 허가 중심의 전파관리 체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00년 전파법 개정 이후, 주파수 회수·재배치 보상 및 이의신청, 주파수

임대 허용, 주파수 할당취소 규정 도입 등 지속적이 전파법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9> 2000년 전파법 법체계 현황

구분	세부 규정	구분	세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91년 법과 동일) 제2조 정의 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4조 삭제 		 제41조 위성궤도등의 할당 등 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제44조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6조의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 제7조 손실보상 등 제7조의2 이의신청 등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제5장 전파자원의	- 제45조 기술기준 - 제46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 제47조의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 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 제49조 전파감시 / 제50조 국제전파 감시 - 제51조 혼신조사 등 -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 제9조 주파수분배 - 제10조 주파수할당 -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 제14조 주파수이용권 - 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 제15조의2 주파수할당의 취소	上支	- 제53조 조사 및 조지 - 제54조 자료의 제공 - 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 제56조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 제57조 전자파적합등록 - 제58조 신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 제15조의2 주파수할당의 취소 - 제16조 재할당 / 제17조 전환 - 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 제59조 삭제 - 제59조의2 전파정책심의위원회 - 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 제61조 전파 연구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 제19조 무선국의 개설 - 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 제20조의2 무선국의 개설조건 - 제21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 제22조 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 제23조 허가의 승계 - 제24조 검사/제25조 무선국의 운용 - 제26조 변경허가	제6장 전파의 진흥	-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 제63조 표준화 - 제64조 인력의 양성 - 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 제66조 한국전파진흥원 - 제66조의2 한국전파진흥협희 - 제66조의3 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 제67조 전파사용료 -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제69조 수수료
제4장	- 제26조 변경허가 - 제27조 통신방법 등 - 제28조 조난통신 등 -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 제32조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 제33조 준용규정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 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 제36조 방송국의 보호	제7장 무선종사자	-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전파자원의 이용		제8장 보칙	-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 제7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 제74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 제75조 전자과적합등록의 취소 -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 제77조 청문 - 제78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 제38조 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확보 - 제39조 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 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제9장 벌칙	- 제80조 벌칙 ~ 제87조 벌칙 - 제88조 양벌규정 - 제8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89조의2 과태료 ~ 제 93조 과태료 의 부과·징수

2. 해외 전파법체계 사례분석

일반적으로 전파이용 관련 법체계는 자국의 전파이용 환경 및 전파관리 기본적인체계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시장기반의 전파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서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를 들 수 있으며, 규제기관 중심의전파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대표적으로 일본을 들 수 있다. 한편, 시장기반의 전파관리 체계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도, 해당 국가의 방송·통신 관련 법체계, 융합기구 출범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전파법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방송, 통신 및 전파 관련해서 통신법의 단일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파이용 관련 별도의 규정(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파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파수 중심의 전파관리 체계를 법규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전파법체계 현황에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통신법 내에서 무선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크게 4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장 일반 규정들에서 무선통신 면허, 면허신청 및 면허조건, 건설허가 등의 주요 규정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PCS, 셀룰러 등 무선통신 서비스별로 서비스 정의, 이용 주파수, 기술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CFR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의 전파법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10> 미국의 전파관련 법체계 현황

구분	통신법(Title 3 무선관련 규정)의 무선규정			
주요	ㆍ제1장 일반 규정들	 무선통신 등의 면허 FCC의 일반적 권한 시설의 배분 면허 기간 면허 신청, 면허조건 신청 처리절차, 면허의 형식과 조건(309조) 건설허기/조난통신 긴섭폐지 등 		
목차	· 제2장 선박의 무선 장비와 무 선국 운영	- 선박 무선국과 운용 - 정보의 송신/검사 등		
	· 제3장 상업 여객선의 무선설비 · 제4장 공공통신시설의 지원, 통신 시범시업, 공공 방 송회사	- 영리 목적의 7인 이상 승객수송 선박은 무선전회장치 필요 - FCC 권한(설비 등		
		- 공공통신시설의 지원 - 어린이 교육TV 국가 기금/통신시범시업/공공방송회사 등		

자료: 미국 통신법(1996)

영국은 무선전신법에서 전파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규제기구 Ofcom의 기능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무선주파수 규정에서면허, 조건 및 제한, 주파수 전환 및 거래 등 주요 규정을 정하고 있다. 또한 기기인증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벌금과 처벌 등에 대하여도 제6장의 일반 규정들에서 정하고 있다.

<표 2-11> 영국의 전파관련 법체계 현황

구분	무선전신법		
	·제1장 무선주피수 관련 일반 규정들	- Ofcom 기능 - 주파수 하기에 대한 계획 - 멀티플렉스용 주파수 확보 등	
주요	· 제 2 장 무선주피수 규정 주요	 면혜조겐제한요금 RSA 발급고려사항 주피수 전환거래 무선전신 등록(통계) 비허가 이용 위반시의 절차 등 	
목차	·제3장 기기 규정	- 기기 시용과 판매 - 기기시용 집행제한 등	
	·제4장 기기의 인증 등	- 기기인 <i>증</i> 인증방법 등	
	·제5장 바다 또는 항공으로부 터 방송금지	- 선박과 항공기로부터의 방송 - 집행권리 행사 - 벌칙과 절차 등	
	·제 6 장 일반 규정들	- 벌금/처분과 몰수 - 집행/정보공개/통지 등	

자료: 영국 무선전신법(2006)

호주는 '93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93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전파이용 관련 면허를 주파수면허, 기기면허, 종별면허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파수면허의 경우에는 주파수경매를 통해 주로 할당됨에 따라주파수 할당에 대한 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전파법에는 주파수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파수 이용체계와 정합성 고려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참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는 전파법 제3장 무선통신의 허가에서 비허가 무선통신, 주파수면 허, 기기면허, 종별면허 등 전파이용 유형별 주파수 허가 또는 면허 체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 하에 다음으로 기술기준, 혼신분쟁 해결 등의

일반규제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5장 행정과 집행에서는 권한의 위임, 공공조사 및 권고지침,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국제협정, 면허, 인증 의 포기, 벌칙 등을 정하고 있다.

<표 2-12> 호주의 전파관련 법체계 현황

구분	전파법			
	· 제1장 서문	- 전피범의 목적 - 정의/적용 등		
	·제2장 주파수계획	- 주피수계획(대역포함) - 전환미케팅 계획 ※ 경마근거 규정 포함		
주요	·제 3 장 무선통신의 허가	- 비허가 무선통신 - 주피수면허(국내 주피수할당과 유사) - 기기면허(국내 주피수지정과 유사) - 종별면허(국내 신고와 유사) - 면허의 등록 - 주피수 재할당		
목차	· 제4장 일반규제조항	- 표준과 기술기준 - 전피발사 위반 - 혼신분쟁의 해결 - 이용지역의 제한		
	·제5장 행정과 집행	- 권한의 위임 - 공공조시권고지침 - 인거집행수수료 등		
	· 제6장 보칙	- 국제협정 - 면허, 인증 등 포기 - 벌칙 등		

자료: 호주 전파법(1993)

일본의 전파법 체계는 무선국 허가 중심의 전파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무선국 면허 등, 제3장 무선설비, 제4장 무선종사자, 제5장 운용, 제6장 감독, 제7장 이의신청 및 소송, 제8장 잡칙, 제9장 벌칙 등을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의 2000년 전파법 개정 이전의 법체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현재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일정기간의 이용기간 동안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 즉시장기반의 전파관리 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무선통신 서비스 등 상업적 용도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별도의 이용대가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파법의 경우도 이러한 규제기관 중심의 무선국 허가에 의한 전파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령에 대한 전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부 분야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13> 일본의 전파관련 법체계 현황

구분	전파법			
	· 제1장 총칙	- 목적/정의		
	·제 2 장 무선국 면허 등	- 무선국 면허(개설) - 면허 유효기간, 간이한 면허절차 - 주피수할당계획, 전파이용상황 조사, 무선국 등록		
	·제3장 무선설비	- 전피의 질인전시설 등		
	·제3장의2 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적합증명 등			
주요	·제4장 무선종사자	- 보고 및 출입검사		
목차	· 제 5 장 운용	- 목적외 시용금지 - 해안국, 항공국 등 운용		
	· 제6장 감독	- 주피수등 변경/검사, 무선국 면허취소 등		
	· 제7장 이의신청 및 소송 · 제7장의2 전피감리심의회			
	· 제 8 장 잡칙	- 수수료전파이용료 장수		
	·제9장 벌칙			

자료: 일본 전파법(1993)

3.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의 전파법체계 사례분석을 통해 전파관리 패러다임 의 변화에 따라 전파법의 내용 및 체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우선, '61년 ~ '91년 이전은 무선국 허가 및 관리 중심의 전파관리법 성격으로 운영됨에 따 라 전파법 체계도 총칙, 무선국 허가, 무선설비, 무선종자사, 운용, 검사, 감독, 잡칙, 벌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면서 허가절차 간소화, 무선종사자 제도 등 개별 사항별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91년 ~ '00년 이전 전파법은 무선국 허가 중심의 전파관리에서 전파의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기술개발, 연구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재원확보 방안까지 마련하였다. 즉 전파법이 관리법적 성격에서 산업진 흥법적 성격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파법 체계 내에 전파진흥 등의 별도의 장으로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00년 이후 전파법은 기존의 관리 및 진흥 법적 성격에 자원의 확보 및 공정한 배분 등이 추가되었으며, 일정 정도 경쟁법적 성격을 포함하게 되었다. 물론 2000년 전파 법 전면 개정시 경쟁제한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이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전파법 체계도 총칙, 전파자원 확보, 분 배 및 할당, 이용, 보호, 전파 진흥, 무선종사자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현재 의 법체계가 마련되었다.

<표 2-14> 국내 전파법 법체계 개편현황

구			전파법	
분	'61년	'71년/'81년	'91년	'00년 이후
주 요 목 차	• 제1장 충칙 - 목적/정의 - 전파에 관한 조약 • 제2장 무선국의 허가 - 무선국 개설/결격사유 - 가허가/준공검사 - 무선국의 허가 등 • 제3장 무선설비 - 수신설비의 조건 - 기술기준 등 • 제4장 무선종사자 - 무선종사자 자격/면허 - 배치 및 정원 등 • 제5장 운용 - 목적외 사용금지 - 조난/긴급/안전통신 등 • 제6장 검사 - 무허가무선국등의 검사 - 무허가무선국등의 검사 - 무허가무선국등의 검사 - 정기검사/임시검사 등 • 제7장 감독 - 주파수등의 변경 - 무선국 허가취소 등 • 제8장 잡칙 - 무선설비 기능보호 - 수수료의 징수 • 제9장 벌칙 - 벌칙/양벌규정 등	• 제1장 총칙 - 목적/정의 - 전파에 관한 조약 • 제2장 무선국의 허가 - 가허가/준공검사 - 무선국의 허가 - 가허가/준공검사 - 무선국의 허가 - 간이한 허가절차 등 • 제3장 무선설비 - 기술기준/형식검정 - 무선설비 공동사용 등 • 제4장 무선종사자 - 자격검정/수첩교밖(81년 - 배치 및 정원 등 • 제5장 운용 - 목적의 사용금지 - 조난/긴급/안전통신 등 • 제6장 검사 - 무하가무선국의 조사・조치 - 정기검사/임시검사 등 • 제7장 감독 - 주피수등의 변경 - 무선국 허가취소 등 • 제7장의2 무선종사자 협회 • 제8장 잡칙 - 수수료의 징수 - 전자파장해방지구역 등 • 제9장 벌칙 - 벌칙/양벌규정 등	•제1장 총칙 - 목적(진흥포함)/정의 - 전파에 관한 조약 •제2장 무선국의 허가 - 가허가/준공검사 - 무선국의 허가 - 간이한 허가절차 등 •제3장 무선설비 - 기술기준/형식검정 - 무선설비 공동사용 - 전자파장해방지기준 - 무선설비 임대허용 등 •제4장 무선종사자 - 자격검정 및 수첩교부 등 •제5장 운용 - 조난/긴급/안전통신 등 •제6장 검사 - 정기검사/임시검사 등 •제7장 감독 - 전파감시/무선국 취소 - 재7장임2 무선종사자 협회 •제7장의2 무선종사자 협회 •제7장의2 무선종사자 협회 •제7장의3 전파의 진흥 - 전파진흥기본계획 등 •제8장 보칙 - 전자파장해방지구역 등 - 전파사용료 •제9장 벌칙 - 벌칙/양벌규정 등	 • 제1장 총칙 - 목적(진흥포함)/정의 -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 전파에 관한 조약 •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 확보/이용효율 개선 - 회수재배치/손실보상 - 전파진흥기본계획 등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 주파수분배/할당 - 이용권/이용기간 - 재활당/관리대장 등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무선국 허가/운용 - 방송국 허가/운용 - 방송국 허가/운용 - 부소등 전파자원의 보호 - 기술기준/형식검정 - (국제)전파감시 등 • 제6장 전파의 진흥 - 전파연구/표준화 - 인력양성/국제협력 등 • 제7장 무선종사자 - 자격 및 배치 • 제8장 보칙 - 과징금 부과 등 • 제9장 벌칙 - 벌칙/양벌규정

국내 전파법은 전파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체계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기존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에서 전파진 홍 및 경쟁 관련 법적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전파이용 유형별 세부 규정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전파법체계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전파법체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00년 전파법 개정 이전의 경우에 국내의 전파법체계는 일본의 현재 전파법 체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무선국 허가 중심의 전통적인 Command & Control 방식의 전파관리 체계에 따른 법령 체계로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전파의 진흥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전파사용료

부과를 통한 진흥재원 확보 등의 경우에는 일본 전파법체계와 상이한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200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할당(면허) 제도의 도입에 따라 (통신)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면허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과유사한 법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호주의전파법과 국내의 전파법이 보다 유사한 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파수 이용 유형별 면허체계가 유사하고, 일반규정, 행정과 집행 및 보칙등이 국내의 전파법과 유사한 체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의 전파법체계에 대한 정합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개선 추진시 호주의 법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법령 정비에 대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5> 국내외 전파법 법체계 현황

_				
구분	일본	국내 전파법		호주
[문	전파법	'91년	'00년 이후	전파법
주 요 목 차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 제1장 서문
	- 목적/정의	- 목적(진흥포함)/정의	- 목적(진흥포함)/정의	- 전파법의 목적
	• 제2장 무선국 면허 등	- 전파에 관한 조약	-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 정의/적용 등
	- 무선국 면허(개설)	·제2장 무선국의 허가	- 전파에 관한 조약	· 제2장 주파수계획
	- 면허 유효기간	- 가허가/준공검사	·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 주파수계획
	- 간이한 면허절차	- 무선국의 허가	- 확보/이용효율 개선	- 전환/마케팅 계획
	- 주파수할당계획	- 간이한 허가절차 등	- 회수재배치/손실보상	※ 경매근거 규정
	- 전파이용상황 조사	·제3장 무선설비	- 전파진흥기본계획 등	• 제3장 무선통신의
	- 무선국 등록	- 기술기준/형식검정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허가
	·제3장 무선설비	-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할당	- 비허가 무선통신
	- 전파의 질/안전시설 등	- 전자파장해방지기준	- 주파수분배/할당	- 주파수면허
	· 제3장의2 특정무선설비	- 무선설비 임대허용 등	- 이용권/이용기간	- 기기면허
	기술기준적합증명 등	· 제4장 무선종사자	- 재할당/관리대장 등	- 종별면허
	·제4장 무선종사자	- 자격검정 및 수첩교부 등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면허의 등록
	- 보고 및 출입검사	·제5장 운용	-무선국 허가/운용	- 주파수 재할당
	· 제5장 운용	- 조난/긴급/안전통신 등	-방송국 허가/운용	・제4장 일반규제조항
	- 목적외 사용금지	・제6장 검사	-우주통신의 운용	- 표준과 기술기준
	- 해안국 등 운용	·제7장 감독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 전파발사 위반
	- 항공국 등 운용	- 과징금의 부과	- 기술기준/형식검정	- 혼신분쟁의 해결
	·제6장 감독	·제7장의2 무선장사 협회	- (국제)전파감시 등	- 이용지역의 제한
	- 주파수등 변경/검사	·제7장의3 전파의 진흥	・제6장 전파의 진흥	・제5장 행정과 집행
	- 무선국 면허취소 등	- 전파진흥기본계획 등	- 전파연구/표준화	- 권한의 위임
	·제7장 이의신청 및 소송	・제8장 보칙	- 인력양성/국제협력 등	- 공공조사/권고지침
	·제7장의2 전파감리심의회	- 전자파장해방지구역 등	·제7장 무선종사자	- 인가/집행/수수료 등
	・제8장 잡칙	- 전파사용료	・제8장 보칙	・제6장 보칙
	- 수수료/전파이용료 장수	・제9장 벌칙	・제9장 벌칙	- 국제협정
	・제9장 벌칙	- 벌칙/양벌규정 등	- 벌칙/양벌규정	- 벌칙 등

제3장 전파방송 업무편람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제1절 기존문헌 분석

1. 업무편람 발간 추진배경

기존 전파방송 업무편람은 1999년에 발간된 이후 대폭 제·개정된 전파방송 관련 법·제도, 정책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무부서에서 업무상 적용에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2000년, 2005년, 2008년 전파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통신·방송 융합, 규제완화 등 전파이용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단순 나열방식의 업무편람이 아닌 이용자 편익 중심의 전파방송 업무편람의 작성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 전파방송 업무편람의 발간은 이러한 변화와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

2. 전파방송 업무편람 본문내용 분석

'99년판 전파방송 업무편람은 총 7편 21장으로 나누어 본문에는 허가,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무선국 및 유선방송시설의 검사, 무선국의 운용 및 감독, 위성업무 일반, 전파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업무를 기술하였고 부록편에는 참고용으로 업무관련 규정·지침, 서식 등을 첨부하였다.

편람의 구성은 각 업무별로 일반사항, 세부업무별 처리절차를 나누어 일반사항에는 업무흐름도, 허가관할 또는 주요규정 등을 기술하였고, 세부업무별 처리절차에는 업무에 대한 신청 또는 처리절차나 세부내역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예를 들어 무선국 허가절차의 경우에 본문은 무선국의 개설, 허가의 유효기간, 준공검사의 생략, 하가내용의 변경, 허가의 취소, 허가의 승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99년판 편람에는 주파수 배분 및 이용절차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파수 분배 및 할당, 회수 · 재배치, 주파수 양도 ·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 편람은 2000년 이후 도입된 시장기반의 이들 제도 등에 대한 이용절차 및 세부내역정리 기술에 주안점을 두었다.

개정 업무편람의 발간을 준비하면서 참조한 문서로는 전파방송 업무편람(정보통신부, 1999.03), 검사실무 핸드북(한국전파진흥원, 2005.12), 방송국허가업무편람(경북체신청, 2005.12), 전파관리실무(중앙전파관리소, 2006.04), 알기쉬운 무선국 허가업무 길라잡이 (전남체신청, 2006.06), 조사업무편람(중앙전파관리소, 2007.07), 정보통신기기 인증업무

편람(전파연구소, 2007.08), 전파법 해설집(방송통신위원회, 2008.12) 등이 있다. 언급한 참고문헌에서 보이듯이 무선국 허가·검사, 자격검정, 인증, 행정처분 등 개별 업무에 대한 부서별 실무 위주의 각종 편람을 중앙전파관리소나 전파연구소, 지방 체신청(현재는 전파관리소로 전파관리업무 이관) 등의 관련기관에서 자체 발간한 사례는 있으나, 전파관리 업무 전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편람 발간은 상당기간 이뤄지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다.

제2절 전파방송 업무체계 구분 및 세분화

개정 전파방송 업무편람은 현행 전파법 체계에 따라 크게 전파자원의 확보·배분·이용·보호·진흥의 5개 편으로 구분한 후, 주파수의 분배 및 할당절차를 중심으로 상호연관이 큰 업무별로 묶어 각각의 편에 배치하였다. 이런 대분류를 바탕으로 본문에는 국제 주파수분배, 주파수할당, 주파수 양도·임대, 무선국 허가 및 검사, 무선국운용, 무선종사자, 행정처분, 방송통신기인증, 전파사용료 등의 16장의 세부업무로 소분류하여 기술하였다. 각각의 업무별로 제1절에는 일반사항과 제2절에는 세부업무별 처리절차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여 업무별 상세내역을 정리하였다. 일반사항에는 업무흐름도와 주요 법규정을 요약정리하고, 본문인 세부업무별 처리절차에는 이용절차, 처리기한, 구비서류, 수수료 등 주요내용과 관련규정을 실었다. 무선국허가의 경우에는 본문 각 세부업무에 대해서도 각각의 업무와 관련한 절차도나관련 고시, 참고규정 등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다음 표는 기존업무편람과 개정 업무편람의 목차를 대비하여 각각의 차이를 한 눈에 보이도록 하였다.

<표 3-1> 전파방송 업무편람 목차 비교

업무편람 비교						
전파방송 업무편람('99년판)	전파방송 업무편람('08년판)					
제1편 허 가 제1장 무선국의 허가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세부업무별 처리절차 제2장 유선방송사업 허가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세부업무별 처리절차	제1편 전파자원의 확보 제1장 국제 주파수분배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ITU 및 WRC 제2장 위성궤도 등록·할당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업무의 세부이용절차 제3장 주파수 회수 · 재배치					
제2편 무선설비	제1절 일반사항					

제1장 무선기기형식검정 · 형식등록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세부업무별 처리절차

제3절 사후관리업무

제4절 지정시험기관

제2장 전자파적합등록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세부업무별 처리절차

제3절 사후관리업무

제4절 지정시험기관

제3장 교정검사

제1절 EMI 측정설비의 교정검사

제2절 전자파관련 교정검사

제4장 전파측정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세부업무별 처리절차

제3편 무선종사자

제1장 무선종사자 자격종별 및 배치기준 제1절 무선종사자의 정의 및 자격종별 제2절 종사자 종사범위 및 자격별 정원 제2장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및 등록 제1절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제2절 기술자격등록 및 수첩발급

제4편 무선국 및 유선방송시설의 검사

제1장 무선국 검사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세부업무별 처리절차

제2장 종합유선방송시설 검사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세부업무별 처리절차

제3장 유선방송(중계ㆍ음악)시설 검사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세부업무별 처리절차

제5편 무선국의 운용 및 감독

제1장 전파감시

제2장 무선국 운용감독

제3장 불법전파설비 조사·단속

제4장 법령위규사항 행정조치

제1절 불법무선국 및 변칙운용 무선국 단속 제2절 형식검정·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미필기기 단속

제3절 미약전파기준 초과설비 조사단속

제6편 위성업무 일반

제1장 위성통신의 개요 제2장 위성지구국 설치관련 업무 제3장 외국통신위성 이용업무 제2절 세부업무별 처리절차

제2편 전파자원의 배분

제1장 주파수분배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업무의 세부이용절차

제3절 주파수용도의 지정

제2장 주파수할당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세부업무별 처리절차

제3장 주파수지정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전파지정기준에 따른 주파수지정

제4장 주파수 양도 · 임대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업무의 세부이용절차

제3편 전파자원의 이용

제1장 무선국허가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세부업무별 처리절차

제3절 허가의 예외

제4절 기지국공용화

제2장 방송국허가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업무의 세부이용절차

제3절 소출력방송국 허가

제3장 무선국검사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세부업무별 처리절차

제3절 무선국 기술기준

제4장 무선국운용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무선국 운용

제3절 무선국 폐지 및 운용 휴지

제5장 무선종사자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별 및 배치기준 제3절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및 등록

제4편 전파자원의 보호

제1장 행정처분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세부업무별 처리절차

제2장 방송통신기기 인증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인증의 종류

제3절 인증 처리절차

제4절 변경신고

제5절 사후관리

제4장 위성망 국제등록

제7편 전파사용료 및 수수료

제1장 전파사용료 제2장 수수료

부록

제1절 관련규정·지침 제2절 서 식 제5편 전파이용의 진흥

제1장 전파사용료 제2장 수수료

부록

제1절 관련규정 및 주요고시 제2절 서식(별지 및 별표) 제3절 전파연표 제4절 전파용어사전

제4장 해설집 및 업무편람 발간 추진방안

제1절 전파법 해설집 발간

전파법은 전파이용에 따른 혼신과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 마련 등 기술 법적 성격과 희소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파수 할당 방식 및 적정 이용대가 부과를 위한 경제학적 요소가 반영되고 있다. 물론 전파법은 전파이용을 규제하는 법률로써 전파법 해설집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제, 법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파법 해설집 발간을 위하여 이들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전파법 조문별 해석 및 검토가 이루어졌 다.

<표 4-1> 해설집 발간 연구반 구성 및 활동 내용

구분		연구반 구성 및 논의 내용			
연구반 구성	기술분야	o 최용석 박사(ETRI), 오창헌 교수(한국기술교육대)			
	경제분야	o 이홍재 교수(아주대), 이승훈 팀장(한국전파진흥원)			
	법학분야	o 박종수 교수(고려대), 현대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임현 교수(단국대)			
	방송통신위원회	o 장준영 사무관(법 담당), 박춘원 주무관(법 담당)			
연구반 활동	제1차회의 ('08.8.14)	o 연구반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o 현행 전파법 구성 및 체계의 재검토 o 무선국 업무 및 종류			
	제2차회의 ('08.9.10)	o 전파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관련 조항 검토 o 주파수 회수·재배치 관계, 손실보상 개념 등 검토			
	제3차회의 ('08.9.24)	o 전파법 제3장 주파수 분배 및 할당 관련 조항 검토 o 주파수 할당, 재할당 등 성격 검토 o 주파수 이용권, 양도·임대 등 검토			
	제4차회의 ('08.10.16)	o 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관련 조항 검토 o 무선국 개설절차, 주파수 사용승인 법적지위 등 검토 o 무선국 개설의 유효기간 등 검토			
	제5차회의 ('08.11.5)	o 전파법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6장 전파의 진흥 검토 o 제7장무선종사자,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검토			
	워크샵 ('08.12.3~4)	o 전파법 해설집 초안 검토를 위한 워크샵 o 무선국 허가, 전파사용료 부과 등 실무 담당자 참여			

'01년 전파법 축조해설집의 경우에는 제한된 연구진이 참여하여 주로 법률적인 검 토가 이루어졌으며, '04년 전파법 해설집의 경우에는 전파방송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의 참여로 해설집 발간이 추진되었다. '08년 전파법 해설집 발간 연구의 경우에는 기술, 경제,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석방향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추가적으로 전파방송 업무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최종 해설집 작성에 반영하였다.

<표 4-2> '08년 전파법 해설집 관련 주요검토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서론	o 전파법의 의의와 목적 o 전파법의 연혁 및 개정현황, 전파관련 국제법상의 규율 o 공물법·공물의 의의 및 전파의 공물성 여부 등 검토사항 o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관계 등 검토사항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o 전파자원 확보의 필요성 o 전파자원의 확보 방법 및 확보자원의 이용방법 o 전파이용중장기계획과 전파진흥기본계획의 통합 연혁 o 전파법상의 손실보상에 대한 해설(일반적인 손실보상과의 차이점 등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o 주파수 분배, 할당의 의의 및 절차·방법 등 o 주파수 할당의 효과(주파수이용권 등) o 분배·할당 후의 사후관리(할당취소 등) o 주파수할당의 사례, 취소의 효과 등에 대한 해설 추가 o 재할당의 절차, 추가할당 개념의 필요여부 등 검토사항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o 무선국의 개설 및 운용, 방송국의 개설 및 운용, 우주통신의 운용 o 허가, 신고 등 개설방법별 해설 o 허가, 신고 등의 구별이유 및 연혁 등 해설 o 방송법상의 방송국에 대한 설명 추가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o 기술기준,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o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방안(임대, 위탁, 공용화) o 사후관리(전파감시, 조사 및 조치, 안전 및 보호, 전파응용설비 등) o 현행 전파법체계에서 "인증"이라는 표현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사항
제6장 전파의 진흥	o 전파정책심의위원회, 주파수 이용현황의 공개 o 연구 및 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o 전파관련기관(한국전파진흥원, 전파진흥협회) o 전파사용료, 수수료 o 전파사용료의 성격(사용료/부담료 여부, 할당대가와의 관계 등) o 전파사용료 산식의 제·개정 연혁 등에 대한 해설
제7장 무선종사자	o 무선종사자의 자격 o 무선종사자의 배치기준 o ITU에서 정하는 종사자에 관한 설명 추가 o 자격관련 업무(진흥원과 산업인력공단의 업무관할 등)에 대한 해설 o 통신운용과 기술운용의 의미 및 차이점 등 해설
제8장 행정처분과 형사벌	o 행정처분, 형사벌 및 과태료 o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론 해설 o 행정처분 등에 대한 업무수행 기관 설명(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

'08년 전파법 해설집은 기존 해설집 관련 문헌의 분석, 국내외 전파법 체계의 비 교분석, 전파관련 기술·경제·법학 등 전문가로 연구반을 통한 조문별 검토, 전파방 송 업무 실무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최종 발간을 추진하였다. 전파 이용 관련 법률 적 해석 및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08년 전파법 해설집의 한계점으로는 몇 가지를 언급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첫째, '08년 하반기 의 전파법 개정이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법개정 및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으 므로 반영을 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 경매제도 시행근거 규정, 무선국 개 절 절차 규정의 재정비, 방송통신기기 인증 신설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은 법개정 진행 중임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당초 일반 국민들도 전파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 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전파이용 규정을 해석하기 위하여 법률적 개념 및 용어 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해의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법률 적 개념 및 용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전파이용 개 념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그림이나 도표를 이용하지 않고 서술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는 '04년 전파법 해설집 또는 전파방송 업무편람 등을 참조할 수 있으 므로 가급적 법 해설서 형식을 취하였다.

제2절 전파방송 업무편람 발간

2000년 이후 수차례의 전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무선국 허가·검사, 운용 등의 무선국 중심의 관리체계를 전파자원의 확보·배분·이용·보호·진흥이라는 주파수 중심의 전파관리체계로 개편되었다. 개정 업무편람은 이를 수용하여 목차 및 본문 내용에 반영하였다. 편람을 작성하기 전에 '전파법 개정 실무 추진연구반'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전파법령이나 전파정책 관련 사안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반에 반원으로 참석하여 각종 전파방송관련 업무내용의 검토 및 분석 그리고 원고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아울러 업무편람 작성은 기존 전파법령의 제·개정된 내용뿐 만 아니라 앞으로 전파법령상에 반영될 내용까지도 미리 검토하였고, 이후 법령의 제·개정 추이를 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표 4-3> 전파법 개정안 및 편람발간 추진체계

구분	KCC 제·개정안 마련 및 업무분석		전파법 제·개정 실무 연구반 회의		전파법 개정안 및 업무편람 마련
주요 업무	 전파범령 제 ·개정을 위해 KCC 개정빙안 마련 전파빙송 업무체계 정립을 위한 업무분석 방향제시 	\Rightarrow	· 전피법령 개정 지원 연구반 검토 및 논의를 통한 개정빙안 보완 · 전피빙송 업무분석		· KOC 해당 부서 및 개정 지원 연구반 회의를 통한 최종(안) 확정 · 전대방송 업무대함 도출
추진 방안	· KCC 해당 부서 위부 지문 포함 등 에서 전파 법령 제 · 개정 (안) 미련 · 전패병송 관련 주요업무 현황 분석		· KCC 내 전파법령 법 제도 담당 및 법개정 지원 연구반 회의 · 전파방송 세부 업무파악 및 절차 등 검토	\Rightarrow	· 전파법 개정 관련 해당 분야 전문가 추기로 의견 수렴 추진 · 전파방송 담당업무별 실무 연구반 회의 추진

제1편인 '전파자원의 확보'에서는 국내 방송 및 통신에서 이용할 주파수의 국제적 확보 와 관련한 국제 주파수분배, 위성궤도 등록·할당과 주파수를 실제 이용하는 단계에서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공공차원에서 추진하는 회수·재배치를 기술하였다.

제2편의 '전파자원의 확보'는 국제분배를 받은 주파수나 국내 주파수 중 회수 또는 환수한 주파수를 재배분하는 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주파수의 업무나 용도에 따른 주파수분배와 시장기능에 입각한 대가할당 그리고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지정 등은 기존 편람에 없던 내용으로 새로 기술하였다. 2005년 주파수거래제도 도입 이후 신청절차나 처리절차, 승인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주파수의 양도및 임대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원론적인 내용만 언급하였는데, 거래의 실제 발생에 대비하여 법규정이나 지침 등의 세부절차규정 마련되어야 한다.

제3편의 '전파자원의 이용' 부분에서는 규제업무의 핵심인 허가·검사, 운용 관련한 업무 그리고 이용주체인 무선종사자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허가·검사 업무는 기존 편람의 내용과 크게 수정하지 않고 법규정이나 내역 등의 현행화에 초점을 두었다.

제4편(전파자원의 보호) 제1장의 '행정처분'은 실무부서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조사업무편 람'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인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 2008-102호)'이나 '행정처분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도왔다. 제2장인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작성하면서 참조한 전파연구소의 '정보통신기기 인증업무 편람'은 인증제도 현황 및 연혁, 인증신청 및 처리절차, 변경신고, 사후관리, 인증제도 연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향후 인증제도 관련 규정의 전파법 일원화나 인증제도의 대폭적인 변화에 따라 앞으로 추가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지정, 양도·임대, 회수·재배치, 허가의 예외 등에 대해서는 기존 편람에는 없었으므로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담당부서 또는 전문가(전파진흥원, 전파연구소 등)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개정 편람에는 실무단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 (RBMS, 전파연구소 운용)에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제5장 전파법 해설집 주요 내용

제1절 전파법 개요

1. 전파법의 의의와 목적

가. 전파관리의 중요성

오늘날 무선기술은 고착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점차 매우 유연한 의사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 무선기술 및 주파수의 이용은 최근 수십년간 모든 생활영역에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가장 좋은 예는 이동통신분야에서의 급속한 가입자수의 증대를 들 수 있다. 다른 주파수 이용분야, 예컨대 라디오 방송이나 TV방송과 같은 적용영역에서도 지상파방송은 물론 위성방송에서도 무선주파수의 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전파천문학과 같은 연구 및 개발 영역에서의 적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통분야에서도 교통흐름의 조종이나 항공기네비게이션 등에서 주파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밖에 산업분야, 의학분야 및 심지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렌지 등 사적 영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파수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파관련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파이용의 증대는 당연히 전파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전파는 일종의 경제적 재화로서 그 이용상의 물리적 유한성 으로 말미암아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 있고, 사업자간 기업활동의 자유 와 가입자의 통신의 자유를 형량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의한 관리·감독과 규제가 불가피한 면이 있어 대표적인 경제행정법적 문제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전파와 전파법

전파행정의 대상이 되는 전파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전파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단초가 된다. 전파의 법적 성질은 전파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현행 전파법의 규정태도도 그러하고, 일반적으로 논의할때도 그러한데, 전파와 주파수는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1) 전파의 개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Radio Regulation)에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3,0000版 이하의 주파수의 전자파라 정의하고 있으며(Radio waves or Hertzian waves : Electromagnetic waves of frequencies arbitrarily lower than 30000版, propagated in space without artificial guide), 우리나라도 국제규정을 따르고 있다. 즉, 전파라 함은 인공적인 유도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ITU가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전파법 제2조 제1호) 또한 주파수란 사전적으로 전파가 단위시간(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Hz(헤르쯔)라는 물리적 단위로 측정된다.3)

'인공적인 유도 없이'란 전파가 물질을 매개로 하지 않고 공간 속으로 직접 전달된다는 것이다. 전파는 주파수에 따라 직진·회절·반사 및 감쇠 특성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감쇠가 심하나 대량의 정보전송이 가능하므로 초고속멀티미디어 등에 적합하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성이 강하고 감쇠가 적으나 전송가능한 정보량은 적어 해상·항공통신 등 장거리통신에 적합하다.4)

여기서 주파수를 3000대 이하로 정한 이유는 그 이상이 되면 전파보다는 오히려 빛의 영역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LASER와 같이 극히 파장이 짧은 분야에까지 실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주파수 개념상의 한계는 전파법상의 규율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범위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전파란 3,0000kk 이하의 주파수를 가지며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가는 전자파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전파와 주파수라는 용어는 구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전파법은 전자파를 그 주파수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물리적 특성에 적합한 용도를 지정하여 이동통신이나 방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것이다. 즉, 주파수는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직접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파라고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전파법상 사용되는 '주파수이용권'이라는 용어는 그러한점에서 '특정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에 대한 이용권'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2) 공물로서의 전파

우리나라는 1961년 처음으로 전파관리법을 제정하여 전파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

³⁾ 전자파를 파동이란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고, 예를 들어 60Hz의 주파수란 1초에 60번 진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⁴⁾ 서순복, 전파법 축조해설집 발간 연구, 2001, 40면 이하 참조

⁵⁾ 최호용, 주파수이용권의 양도 · 임대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6권 제1호(2007), 142면

를 확립하고, 특허에 의하여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전파는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공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전파의 공물성을 이해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의 '물건' 개념에도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일부 견해에서는 전파는 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상 물건개념에 포함되며, 따라서 암묵적으로 행정법적으로도 공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다.697) 그러나 행정법상의 공물도 법적인 의미에서 물건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때의 물건 개념에는 민법상의 물건인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그대로 타당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여야 한다.8) 즉, 행정법적으로는 '대기'와 같이 관리할 수 없는 자연력도 환경법상 중요한 공물로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민법상 물건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법상 공물로 다루어지는 것은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전파의 공물성과 관련하여 전파를 반드시 국가소유로 귀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공물이론에 의하면 과거 공물을 행정주체의 공소유권의 대상으로 보고, 사적 소유권의 성립을 전혀 배제하던 공소유권설은 이미 극복되었다. 오늘날엔 사유공물의 존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더 이상중요하지 않고, 그 관리주체가 갖는 공법상의 '물적 지배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내용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및 현행 전파법 어디에서도전파자원을 국유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전파가 공물이라면 공물의 성립요소가 충족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공공물의 경우 형태적 요소와 의사적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즉, 본래 공물은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형태를 구비하여야 하며형태를 구비하지 못한 물건은 공물로 결정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파는 '대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형태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공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전파도 공물이기 위해서는 의사적 요소로서 공용개시 또는 공용지정 행위가 필요하다. 즉, 인공공물이 공공용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태적 요소의 구비 외에 그것을 공적 목적에 제공하려는 행정주체의 의사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전파에 관하여 언제 공용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⁶⁾ 최호용,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6권 제1호(2007), 142면

⁷⁾ 참고로 전파의 민법상 취급에 대하여는 공중에 전파되는 전파의 경우 배타적 지배가능성의 한계를 벗어난 무체의 자연력으로 보아 물건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고, 전파도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파수 강도를 가지는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인위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⁸⁾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2판, 신영사, 2008, 860면.

그 시기를 앞당긴다면 주파수이용 중·장기계획이 확정된 때 또는 최소한 주파수분배에 의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가 정해진 때에는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전파행정의 내용

공물로서의 전파는 다른 재화와 달리 송신설비만 갖추면 누구나 생성해낼 수 있는 것으로서 고갈의 걱정 없이 무한정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그 물리적 특성 때문에 유한한 자원으로 평가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주파수스펙트럼의 전파는 혼신의 위험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는 단지 하나의 이용자에 의해서만 생성하여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파의 물리적 특성과 이용현황으로부터 전파의 이용을 특별한 국가적 감독과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즉, 한편으로는 가용한 주파수스펙트럼을 상이한 이용종류간에 분배되도록 하여 이용수요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특정한 주파수영역을 그각가 정해져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요컨대전파행정에서는 재화로서의 전파자원을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그에 대한 배타적 및 비배타적 이용권을 창설하는 내용이 요체이며, 이러한 과정들의 경제적 의미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진흥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전파법의 목적

1) 의 의

오늘날 무선기술은 고착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점차 매우 유연한 의사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이동전화, 무선랜, 텔레마틱 분야에서의 GPS이용 등은 무선기술 없이는 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다.¹⁰⁾ 무선기술 및 주파수 이용은 최근 수십년간 모든 생활영역에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전파는 다른 재화와 달리 송신설비만 갖추면 누구나 생성해낼 수 있는 것으로서 고갈의 걱정 없이 무한정 발생시킬 수 있지만, 그 물리적 특성 때문에 유한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전파의 물리적 특성과 이용현황으로부터 전파의 이용을특별한 국가적 감독과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¹¹⁾ 즉, 한편으로는

⁹⁾ 최호용, 전개논문, 142면

¹⁰⁾ Holznagel/Enaux/Nienhaus, Telekommunikationsrecht, 2. Aufl. 2006, Rn. 455

¹¹⁾ 박재천/양제민, 새로운 주파수관리 패러다임의 분석과 정책제안,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3권 제1

가용한 주파수스펙트럼을 상이한 이용종류간에 분배되도록 하여 이용수요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전파법상의 목적조항은 전파에 대한 국가의 법적 규율의 이념과 관련하여 전파법을 제정하는 취지, 이유, 지도이념 등을 제시하여 전파법의 전반적인 해석, 운용의 지침으로 삼기 위한 방침적 규정이다. 즉,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의 이용과 전파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전파법 제1조) 모든 법률이 궁극적으로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 목적조항의 특징은 전파법의 목적이 단순히 전파를 관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파의 이용 및 관련 분야의 진흥도 아울러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 '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을 확보하여 공공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에도 '주파수의 효율적할당과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주파수 사용으로부터 국민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식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2) 내용

전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란 유한한 자원인 전파를 공평하고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파수를 용도에 맞게 분배하고 공평하게 할당하여 능률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방침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둘째, 그에 필요한 활동의 상호관계와 책임분담을 확정하며, 셋째, 그 집행활동을 지도·감독하고, 넷째 제반사항을 조정·통제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이러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자원의 적정배분을 위해 기존에 확립된 이론·기술을 적용하고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기존 주파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분배의 변경,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새로운 기술 방식으로의 전환, 주파수의 공동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한다. 또 이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주파수를 공평하게 할당한다 함은 전파를 이용하려는 자의 지위, 성격, 규모 등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규율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준은 사회 공공 에의 필요, 국가발전에의 기여 등에 입각하여 누구나가 긍정할 수 있는 원칙하에 할당 하는 것이다.

호 (2006), 144면 이하

전파의 능률이라 함은 공공복지를 위하여 전파에 있어서 가장 효용을 높이도록 이용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파행정에서도 최소한의 주파수 낭비, 중복, 불필요한 사장이나소모 등이 없도록 하여 최적의 성과를 올리게 하여 공공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3)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전파법 제3조는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파법 제1조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파를 이용하려는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파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전체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전파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이라는 유사한 개념을 사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파법 제1조의 목적조항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고 전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정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12)가 전파자원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되게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문상의 표현을 '정부'로 하고 있는 것은, 전파자원 관리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감안한 입법자가 의사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아래의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및 특히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규정들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¹²⁾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1.} 방송·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사업자상호 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청자 불만처리 및 방송·정보통신 이용자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 관련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7.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8.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2. 전파법의 연혁 및 개정현황

전파에 관한 법적 규율은 크게 무선전신법 시대, 전파관리법 시대, 전파법 시대의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전파와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환경의 변화에따라 전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여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초창기 무선전신법시대에는 무선을 이용한 통신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바탕으로 무선통신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에 주안점이 있었다면, 전파관리법시대에는 통제보다는 전파의 관리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전파법시대에 들어와서는 전파자원의 유한성에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3. 전파 관련 국제법상의 규율

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연합(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전기통신의 개선과합리적 이용을 위한 회원국간의 국제협력 유지 및 증진, 전기통신부문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의 장려·제공, 전기통신업무의 효율성과 유용성 증진 및 이용보급을 위한 기술설비의 개발과 효율적인 운용촉진, 새로운 전기통신기술 혜택의 확대, 평화적 관계를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적 기관이다.

ITU는 헌장, 협약, 그리고 업부규칙 등을 제정하고 있다. 헌장은 협약규정에 의하여 보충되는 ITU의 기본문서로서 헌장과 협약의 규정은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국제전기통 신규칙(ITR)과 전파통신규칙(RR)에 의하여 보충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¹³)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과 1992년도 세계전파주관 청회의(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 결의 528 및 구 전파법(2000. 1. 21. 법 률 제61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전기통신연합 의 전파규칙이 주파수대역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우선순위가 같은 다양한 용도를 규정하 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특정주파수대역을 어느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파주관청의 전파정책에 관한 고유권한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ITU의 조직은 ① 4년마다 전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ITU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인 전권위원회(PP), 전권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이사회(ITU Council) 및 전파통신국(ITU-R)·전기통신표준화국(ITU-T)·전기통신개발국(ITU-D)·사무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파통신국(ITU-R)은 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의 합리적이

¹³⁾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고 공평하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계전파통신회의 (WRC)를 개최하고, 전기통신표준화국(ITU-D)은 기술문제 및 요금문제를 관장하며 세계 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를 개최하며, 전기통신개발국(ITU-D)은 전파관련 기술협력과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를 개최한다.

나. 전파법과의 관계 - 구 전파법 제4조14)의 삭제와 관련하여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제법질서존중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해양자가 별개의 법체계에 속한다고 보는 이원론과 동일한 법체계에 속한다고 보는 일원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일원론에도 국제법과 국내법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에 관한견해의 대립에 따라 국제법우위론과 국내법우위론이 나뉘고 있으나, 일원론과 헌법우위론이 공법학계와 판례¹⁵⁾의 확립된 입장이다.

헌법은 조약이 가지는 국제사회에서의 의미와 조약이 국회제정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약의 체결·비준·동의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조약체결·비준권은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했으며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규정¹⁶⁾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특별히 열거되지 아니한 국가간의 단순한 행정협조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약은 그 내용과 체결절차 및 국회동의 여부에 따라 다양한 단계의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전파에 관한 조약을 검토해 보면 우선 전파에 관한 조약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인정되어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체결될 경우 국내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양자간의 관계는 신법우선의 원칙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삭제된 구 전파법 제4조는 확립된 일반적 법원칙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전파에 관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

¹⁴⁾ 전파에 관하여 조약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한다.

^{15) &}quot;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99헌가13 결정.

¹⁶⁾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는 단순한 행정협조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에 따를 경우 대통령령 이하의 법령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의 효력을 법률의 효력보다 우선하고 있는 구 전파법 제4조는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즉 단순하게 '전파에 관한 조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전파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효력의 관련 국제조약들이 국회가 입법한 전파법보다 우선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에 대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상 부적절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구 전파법 제4조는 전파와 관련한 법적 규율은 국제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므로(ex. 주파수의 국제분배 등) 이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법으로 보이나, 법문상 표현이 "전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어,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의 전문의 취지가 ITU 헌장과 협약 및 업무규칙 등은 국가간 협력 및 분쟁해결을 위한 조약이지 회원국 내부의 전파행정이나 전기통신을 직접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전파법상의 용어

전파관련 법령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 중 이와 같이 정의조항을 따로 두는 이유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법률의 내용으로 편입시켜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용어정의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당해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함에 있다.

정의조항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한다면 전파행정의 수단인 행정행위와 관련된 부분, 전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인적·물적 요소에 관한 부분 및 전파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전자파와 관련된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주파수 분배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전체 주파수 대역 중에서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ITU RR에서는 "특정한 주파수대를 특정한 조건하에서 1개 또는 그 이상의 지상 또는 우주무선통신업무 또는 전파천문업무에 의한 사용목적으로 주파수분배표에 등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주파수분배는 전파를 주파수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주파수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전파를 특정한 업무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공물법상으로는 공물성립의 의사적 요소인 공용지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전파행정의 실무에서는 주파수분배표를 고시¹⁷)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주파수를 토지에 비유해서 설명한다면, 토지구획시 를 그 위치, 성격,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구, 준주거지구, 공업지구, 상업지구 등으로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파를 이동용, 항해용, 항공용 등으로 사용가능한 업무를 분류해 주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파수의 분배는 주파수의 수요자들로 하여금 당해 주파수에 대한 이용방법을 미리 고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 있고 나아가 전 파행정을 함에 있어 준거로 작용한다.

이러한 주파수의 분배는 크게 국제분배와 국내분배로 이루지는데 국제분배는 ITU에서 국가 간 주파수 이용시에 간섭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용도를 광범위하게 정 해놓은 것으로서 각 회원국은 주파수의 국제분배를 기본으로 하여 당해 국가의 내부사 정에 따라 국내분배를 하게 된다.

나. 주파수 할당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파수 분배를 통해 용도가 정해진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파의 공물성을 전제로 할 때 주파수할당은 공물에 대한 특허사용관계를 설정하여 당해 주파수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배타적'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나,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혼신 등 다른 제3자에 의한 장애 없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에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표현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주파수 지정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해 개설된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으로 할 당된 주파수 중 서비스 제공 시에 사용되는 기지국 및 단말기 등의 각 채널 주파수의 중심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파법에 따라 개설하는 모든 무선국은 당해 무선국이 수행하는 업무의 용도에 해당되

¹⁷⁾ 가장 최근에는 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5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가 발령된 바 있다.

는 주파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무선국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의 용도로 분배나 할당된 주파수의 이용현황을 상세하게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이 개설하고자 하는 무선국에서 사용가능한 주파수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선국 개설 허가나 신고시에 주파수 이용현황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청이 분배나 할당된 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행위가 주파수 지정이다.18)

주파수를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파수의 혼선·간섭의 방지에 있다. 주파수 분배에 따른 주파수들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당해 용도에 적합한 최소한의 주파수 폭이 필요하다. 예컨대 FM라디오 방송국에 지정되는 주파수의 경우는 지정되는 주파수를 중심으로 최소한 0.2MHz의 대역폭은 있어야 지금과 같은 음질의 방송이 가능하다.

라. 주파수 회수

할당·지정된 주파수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¹⁹⁾을 통해 특정인이 특허사용할 수 있도록한 행정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파수회수는 행정법상 철회의 법리에 비추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와 학설의 다수는 본처분의 근거규정이 존재하는 한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당연히 철회할 수 있고 별도의 철회근거규정은 요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법상 주파수회수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취지는 전파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전파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필요에 따라 행정청이 이미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기될 수있는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제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 주파수 재배치

회수된 주파수를 대체하여 다시 주파수의 할당·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새로이 확보한 주파수에 대한 이용권을 다시 정하는 행정처분이다.

바. 무선설비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송신설비(송신장치 및 송

¹⁸⁾ 최호용, 주파수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06, 40면 참조

¹⁹⁾ 전파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에 의한 무선국 개설의 예외로서 대체로 군용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외국인이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통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신공중선계), 수신설비(수신장치 및 수신공중선계) 및 특수한 설비(주파수측정장치 등)로 구성된다. 전파를 이용하여 부호를 송신하고 또는 수신하기 위한 통신설비인 무선전신,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송신하고 또는 수신하기 위한 통신설비인 무선전화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사. 무선국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물적 요소인 무선설비와 인적 요소인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그러나 방송수신(청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함은 주로 무선통신의 수신을 위한 것에만 제공되는 설비를 말하며 그 대표적인 것은 라디오 수신기, TV 수상기이며 소위 이와 같은 설비를 수신전용설비라고 한다.

수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송신설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수신설비는 무선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앙집중방식(무선국의 송신소, 수신소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 혹은 2중 통신방식(무선국의 송신소만이 분리되어 있는 것)에 의하여 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수신설비와 같이 사용하는 송신설비에 기능상 직결되는 수신설비는 무선국에 포함된다.

아. 무선종사자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전파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즉,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전파법령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후 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로서,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을 하거나, 무선설비의 공사와 설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자. 시설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무선국을 개설할 권리가 있는 자가 실제로 무선국을 개 설한 경우 이를 일컫는 개념이다.

차. 방송국, 우주국, 지구국

방송국은 일반인이 직접 방송신호를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방송국은 다시 그 업무에 따라 지상파방송국, 위성방송국, 지상파방송보조국, 위성방송 보조국으로 나눌 수 있다. 지상파방송국은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국이고, 위성방송국은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국이며,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국이며, 위성방송보조국은 위성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국이다.

우주국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하고, 지구국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지상)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카. 위성망 및 위성궤도

위성망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총체를 말하고, 위성궤도는 우주국(인 공위성)의 위치나 궤적을 말한다.

타. 전자파 장해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전자파가 방사(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 또는 전도(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을 통하여 흐르는 것)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가 공간으로 퍼지거나 전원선을 통하여 주변의 다른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파. 전자파 적합

전자파 장해를 일으키는 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가 전파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전파행정 관련 기관

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

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을 설치 근거로 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방송통신위원회는 첫째,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둘째,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전파연구소

전파자원 및 전파환경 연구의 효율성을 기하고,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품질인증과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대통령령 제 2397호에 의하여 1966년 2월 5일 설립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기관이며,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2008.7.3 대통령령 20896호)」제14조를 설립 근거로 하는 국가연구기관이다.

다.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감시, 혼신조사, 불법시설 단속, 국제전파 감시, 통신보안 등 국가 전파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국가 전파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2008.7.3 대통령령 20896호)」제16조를 설립 근거로 하고 있다.

라. 한국전파진흥원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전파법 제66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전파진흥원의 주요사업은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전파·방송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전파·방송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그 밖에 전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한 사업이다.

제2절 전파자원의 확보

전파 관련 정책은 과거 혼신 방지를 위한 기술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관리에 중점이 맞추어졌다. 이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해결할 정도의 주파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전파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파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동통신 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파자원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부족한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및 시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1. 전파자원 확보의 필요성

전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전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파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전파자원은 한정적인데 반하여 그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정한 전파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또는 한정된 전파자원에 대해서도 최적의 활용 및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갈수록 심화될 주파수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국가·사회적인 문제들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파수의이용기술 개발을 촉진하거나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향상시켜 한정된 주파수대역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가능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주파수의 이용에 있어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한 위성궤도·주파수 국제등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안정적으로 이용권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 주파수의 이용이 인접국가의 주파수 이용에 혼신을 야기할 경우 이를 해소하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국가적 혼신 조정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확보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용 및 관리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2. 전파자원 확보의 방법

가. 의 의

한정된 전파자원에 비하여 전파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파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 스가 등장하고 이동통신 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파자원의 부족 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특정 주파수 대역에 수요가 몰려 있는가 하면 특 정 대역에서의 주파수는 극히 저조한 이용양상을 보이는 주파수 활용의 편중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현행 전파법은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파자원의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차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이용 중인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주파수의 국제등록, 국가간 전파의 혼신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조정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전파법 제5조 제1항), 특히주파수의 국제등록과 관련해서는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전파법 제5조 제2항)

나. 전파자원 확보의 방법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이용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주파수대역의 이용기술 개발이다. 30000k대역의 전파자원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역은 10%(현재 주파수 분배는 275GHz 까지임)에 지나지않는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통하여 가용 주파수 대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더욱 효과적인 기술의 적용 또는 관리기법의 개발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여분의 주파수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파수 이용 밀집대역해소와 주파수 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협대역화(예를 들어 25KHz 대역폭의 음성1채널을 12.5KHz의 대역폭으로 축소하여 가용채널 수를 늘리는 것), 공용화(동일한 주파수대역을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게 하는 것), 재배치 계획을 시행하면 더 많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고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주파수의 국제등록

국제적 수준의 주파수 분배는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특정 서비스에 분재하는 업무분배와 지역별 분배를 포함하며, 대체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될 때마다 관련 기술 등을 고려하여 미사용중인 주파수 대역을 선착순 원칙을 적용하여 분배한다. 특히 세계 각국은 우주영토 확장을 위한 위성궤도 주파수 등 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

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기술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주파수 이용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통한 주파수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주파수의 국제등록 대상,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파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²⁰⁾ 전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제등록을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비용은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4) 국가간 전파의 혼신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 · 조정

특정 주파수의 이용이 인접국가의 주파수 이용에 혼신을 야기할 경우 이를 해소하여야 국내사용이 가능하므로 국가적 혼신조정을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확보된 자원의 이용방법

가.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주파수분배의 변경,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주파수의 공동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하며(전파법 제6조 제1항),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있다(전파법 제6조 제2항).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파수 분배를 변경하거나, 주파수를 회수하여 재배치하거나,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이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이 또한 그러하다. 물론 전파법 제3조에서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²⁰⁾ 세계전파통신회의(WRC)는 매 3~4년마다 개최되는 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 (ITU-R)의 최고의결기구로 국제 전파규칙을 제·개정하고 전파방송 업무별 주파수와 위성궤도 의 분배, 기술기준의 제·개정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전파방송 현안문제를 결정하는 주요한 회의다. 각국은 자국의 주파수 자원 및 위성망 확보와 보호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있지만 이는 선언적·방침적 규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제6조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제2항에서는 주파수의 이용효율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이용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분배·주파수할당·주파수지정 및 주파수사용승인의 현황,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지표, 주파수 이용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동향, 무선설비의 이용 및 운영 실태, 그 밖에 전파이용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매년 조사·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시설자 또는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파법시행령 제4조) 이용효율에 대한 판단기준은 당해 주파수 및 서비스별로 다를 것이므로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술·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파진흥기본계획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 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 1항) 종전의 전파법에서는 전파자원에 대한 국가적 수요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도록 '전파이용중·장기계획'이라 하여 유사한 규정이 있었으나, 종전 전파이용중·장기계획은 그 포함사항이 중·장기 전파자원의 수요전망, 주파수 대역별 용도, 주파수 대역별 이용현황, 전파자원에 관한 국제적 이용계획의 변경,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현황, 기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등 주로 주파수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전파법상의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중·장기주파수 이용계획,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우주통신의 개발,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사항, 전파환경의 개선,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사항 등 주파수에 관한사항 뿐만아니라 전파환경 일반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수 있다.(제8조 제3항) 물론 계획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뿐만아니라, 주파수 분배계획 등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관련해서는 반드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다.(제8조 제2항)

4.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전파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으로 주파수분배의 변경,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주파수의 공동사용의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효과를 가짐은 물론 전파법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일 것이다.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의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의 의의

1) 필요성

전파가 점유하는 주파수 자원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양방향 이음새 없는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핵심수단이며,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정보전달의 중요한 매개체로 서 오늘날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통신ㆍ방송의 융합 으로 인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단말기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번들이 확대되고, 콘텐츠의 품질에 의해 부가가치가 결정되는 새로운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 한 전파자원의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파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의 결 과로서 선진각구에서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전파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전파자원의 사용여부에 따라 크게 사전적 방법과 사후적 방법으로 나 누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전적으로는 전파가 점유하는 주파수 대역의 분배, 할당, 지정,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대가할당, 경매제도 등의 방법을, 사후적 으로는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주파수 거래제도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현재 사용가능한 주파수대역은 이미 다양한 서비스에 운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한한 주파수자원의 부족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방법보다는 사후적 방법의 중요성 이 점점 더 증대될 것이다. 또한 사후적 방법 중 몇몇 국가에서 주파수 거래제도를 도입 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필요성,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고 할 수 있겠다.21)

2) 개 념

²¹⁾ 계경문,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정책 개선방안, 정보통신법포럼 2008. 1 발표자료 1면 이하 참 조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개념은 전파법 제2조 정의조항에 나타나 있다. 즉, 주파수회수란 '할당·지정된 주파수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통해 특정인이 특허사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고, 주파수재배치란 회수된 주파수를 대체하여 다시 주파수의 할당·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파법은 05. 12. 30 법률 제781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근거와 요건, 손실보상 등과 이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개념정의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 혼란을 초래하였으므로 개정을 통하여 정의조항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현행 전파법의 관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개정 전 구 전파법 제6조 소정의 주파수분배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의 정해진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주파수회수라 함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며, 주파수재배치라 함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부장관이 S-band 대역에 대하여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사업 도입의 일환으로 기간통신사업용으로 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일부 개정 전구 전파법 제6조 소정의 주파수분배의 변경이나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22)

3) 대상주파수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이 되는 주파수는 사업용 주파수 중 전파법 제11 조에 의한 대가할당 주파수, 제12조에 의한 심사할당 주파수가 포함되고, 비사업용 주파 수 중에는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에 의한 주파수를 포함한다.

나.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의 요건과 절차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분배가 변경된 경우,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전파법은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또는 재배치"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파통신서비스 기술 및 시장의 발전추세를 감안할 때 협소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 수정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그 목적, 대상, 시행시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보, 인터넷 홈

²²⁾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고를 할 때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전파법시행령 제5조)

주파수 이용실적은 해당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국 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전파법시행령 제6조)

주파수 대역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을 위하여 여유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등으로 점유주파수대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혼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주파수 이용효율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역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파수 대역정비가 가능하다.(전파법시행령 제7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 전파법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전 전파법상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주파수할 당을 받은 자가「전기통신사업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방송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회수 또는 재배치의 제도취지와 맞지 않고, 오히려 주파수할당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파법은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주파수할당의 취소 조항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다.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와 손실보상

1) 손실보상 일반론

손실보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전형적인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보상'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하여 제약받는 재산권 자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설과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적정한 보상에서 손실보상의 기준을 구하는 상당보상설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해 헌법 제23조의 정당한 보상이란 재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²³⁾의 입장이다.

현행 전파법 제7조의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표현이 정당한 보상의 의미를 완전보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조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²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불필요한논란을 야기하는 조문상의 표현을 '정당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등으로 수정하거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²⁵)

2) 손실보상의 예외

다만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함에 있어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또는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전파법 제7조 제1항 단서)

3) 대가할당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가할당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주파수

^{23) &}quot;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 투기적 성격을 띠고 우연히 결정된 거래가격 또는 흔히 불리우는 호가,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 투자비용이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가격 등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개발이익은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1. 4. 26, 00헌바31 결정.

²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보안림소유자에게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²⁵⁾ 전파법 시행령(2008. 7. 3 대통령령 제20896호) 제8조가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법체계에서 요구하는 완전보상의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파법 제7조 제5항) 주파수 할당대가는 주파수 사용대가가 아닌 주파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함에 있어 시장진입비용(entry fee)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할당대가가 진입비용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주파수 분배 변경, 주파수 대역의 정비를 통한주파수 이용효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이른바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 소위 공익적 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잔여 이용기간 일수를 고려하여 할당대가의 일정부분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4) 손실보상의 방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그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전파법 제7조 제2항), 또는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전파법 제7조 제4항)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은 보상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구조이다. 원래 손실보상의 법리는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특정인이 받은 특별한 희생을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떠안아 보전해준다는 것인데, 전파법에서의 주파수회수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를 재배치의 당사자인 신규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 손실보상의 법리를 벗어나는 이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5)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파법 제7조 제3항)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²⁶)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시설자등은 손실의 내용, 손실금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

²⁶⁾ 전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별표1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참고

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 도 동일하다.

6) 이의신청 등

전파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시설자등은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전파법 제7조의2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파법 제7조의2 제2항)

다만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자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2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적인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28)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액 자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7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 손실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보상금의 결정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에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무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대한 일반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산권 수용처분 과 보상금 결정 등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내용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그 재결의 처 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²⁷⁾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 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처분등'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는 그 주체, 내용, 형식면에서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²⁸⁾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는 분배·할당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배분된다. 주파수의 분배는 주파수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그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파수의 할당은 그 용도가 정해진 특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전파법은 제3장에서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과 관련하여 주파수 분배시 고려해야 할 기준과 고시의무를 정하고(제9조), 주파수 할당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또한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도(제11조)를 규정하여 주파수 할당의 투명성과 전파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심사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 그리고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제13조)를 규정하는 한편, 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의 배타적 이용권(제14조) 및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제15조), 주파수 할당의 취소(제15조의2), 이용기간 만료 후의 주파수 재할당(제16조), 심사에 의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주파수 대가에 의해 할당받은 것으로 하는 주파수의 전환(제17조), 주파수 이용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유지·관리(제18조)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1. 주파수분배

가. 주파수분배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주파수분배"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국제공용자원인 주파수의 대역별·지역별 용도에 관하여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통해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 RR)에서 구분하여 놓고 있고, 각 국 전파주관청은 ITU의 전파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국주파수 정책에 따라 주파수의 대역별 세부용도를 정한다. 즉, 현행 전파법 제9조가 정하는 주파수분배란 이러한 국제적 주파수 용도지정에 따라 우리나라 전파주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에 할당된 주파수의 대역별 용도를 지정하는 행위임을 이해할 수 있다. ITU 전파규칙상의 국제 주파수분배는 업무분배와 지역분배로 나누어진다. 업무분배는 어느 일정한 주파수대역을 이동, 고정 등 무선통신업무, 우주무선통신업무, 전파천문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며 지역분배는 세계를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분배하는 것이다.

주파수분배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주파수분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하는 일종의 고

시(공고)에 의한 행정행위이다. 견해에 따라서는 고시의 외형을 가지는 한 외형 그대로 일종의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자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파수의 용도가 정해지는 것은 단순한 행정내부규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있을 주파수할 당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용도규율이라는 점에서 '법적 규율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대외적 효력발생요건이 일반 행정행위처럼 통지가 아니라 고시라는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다른 점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별·구체적 규율이 아니라, 아직 구체적인 사업자의이용권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일종의 '물적 행정행위'로서의 일반처분성을 갖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주파수 분배시 고려사항

전파법 제9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속적 표현을 두고 있어서 주파수분배를 하는 것 자체는 행정청의 기속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질서유지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 주파수와 관련한 제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분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자가 행정청에게 폭넓은 결정(재량형성)의 여지를 열어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주파수분배의 절차

주파수분배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파법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조항과의 관련성하에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전파법 제8조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중 주파수 분배계획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주파수의 분배계획의 변경에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고시라는 형식에 의한)개별적인 주파수분배 행위 자체에는 특별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고 통상적인 고시발령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하겠다.

라. 1순위 업무와 2순위 업무

전파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주파수분배에 따른 주파수의 용도를 1순위인 업무와 2순위인 업무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05. 12. 30 신설) 2순위 업무용은 첫째,이미 분배하였거나 향후 분배할 1순위 업무 무선국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지 않고,둘째,이미 분배하였거나 향후 분배할 1순위 업무 무선국에 의한 유해한 혼신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하지 못하며,셋째,향후 분배할 동일 또는 다른 2순위 업무 무선국에 의한 유해한 혼신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다시 말해서 1순위 업무는 분배된 용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도이고,2순위 업무는 분배된 주파수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1순위용도로 이용하는 자에게 혼신·간섭을 주어서는 아니되고,1순위용도로 이용하는 자로부터 발생하는 혼신·간섭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2. 주파수할당

가. 주파수할당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파수를 그 용도와 기술방식 등을 정하여 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술하는 주파수이용권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갖는 권리라는 점에서 주파수할당은 주파수이용권의 전제이자 근거가 된다. 개별 무선국의 개설 허가 또는 신고시에 행하는 주파수지정도 특정 주파수를 특정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주파수할당은 개별무선국이 아니라 일정 대역의 주파수를 정하여 특정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주파수할당은 주파수분배에 의하여 용도가 정해진 주파수를 이용할 권리를 특정인에게 설정해주는 설권행위로서 강학상 수익적 처분으로서의 특허에 해당한다. 법문의 규정형식(...할 수 있다)은 물론 특허로서의 성격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할당행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주파수분배가 일반적 지정의 성격을 갖는 반면, 주파수할당은 개별 사업자에게 주파수이용권을 설정해주는 구체적 조치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전파주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의 공물성으로부터 주파수할당의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용행위의 공익성, 출원자의 자격, 전파의 특허사용이 일반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 사안에 가장 합목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파수할당의 가장 중요한 법적 효과는 전파라는 공물의 특허사용관계

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은 주파수이용권의 발생이다.

나. 주파수할당의 유형

1)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종전 전파법에는 별도의 주파수 할당제도가 없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허가 받은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부여하였다. 사업계획서 및 출연금 심사를 통해 사업자을 선정·허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파자원 배분시 객관적 가치반영이 미흡하고, 사업계획서 및 출연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특혜시비가 상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전파자원의경제적 가치와 경쟁적 수요를 반영하고 가격경쟁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전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전파법의 체계상 주파수할당은 대가할당이 원칙이고 심사할당은 대가할당에 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파법 제11조제2항에서 주파수를 대가할당하는 경우에도 심사에 의한 할당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종전까지 대가할당시에 심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구 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하기로 공고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 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때에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허가를 받을 당시에 허가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로 할당을 위한 심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2)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0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하여 주파수할당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면서 원칙적으로는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하되, 그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심사만을 통하여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하기 위한 조문이다.

현재 심사할당을 통해 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모두 2000년 전파법 부칙제3조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과거 주파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함에 있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이외에 별도의 주파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가 없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주파수 할당제도가 도입될 당시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아무런 대가를 납부하지 않은 채²9) 일정한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대가할당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할당대가를 납부하도록 할 경우 초래할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할당대가를 받지는 않지만 전파법상의 할당된 주파수로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심사할당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할당은 주파수할당 공고가 이루어진 주파수 중에서 대가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하는 주파수할당 공고의 내용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방법 및 시기,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전파법 시행령 제11조), 이를 감안하여 본다면 현행 주파수 공고에는 당해 주파수를 대가할당을 할 것인지 심사할당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고시에 결정이 되어 있다고보아야 한다.

다.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대가 또는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사업을 위한 주파수할 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결격사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파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정부 또는 그대표자,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파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해당한다.

둘째,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의2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30)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은 주

²⁹⁾ 물론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출연금은 납부하고 있었으나 이는 유무선 사업자의 구별 없이 모두 납부했던 것으로서 주파수이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 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납부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방송법」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라. 주파수할당의 절차

주파수할당은 행정청이 행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이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 즉출원행위를 전제로 한다. 현행 전파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신청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의 정관,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주파수이용계획서,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를 위한 할당 제한 -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

주파수의 보유량 및 사용형태가 국가경제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전파자 원의 독과점 방지 및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주파수 할당에 참여를 제한할 필요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고려한 조항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파법 제10조제3항은 주파수할당시에 특정인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

³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 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위임을 받은 전파법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이 조건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비록 법문상 표현은 '조건'으로 되어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부관의 유형 중 부담에 해당한다고 해야할 것이다. 이때 붙일 수 있는 조건의 내용은 첫째,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파수의 총량은 새로 할당하는 주파수 및 그와 역무의 대체성이 있는 이미 할당한 주파수의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둘째, 총량을 초과하는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셋째,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시기·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등이다.

3. 주파수할당의 효과

가. 의 의

주파수할당의 가장 중요한 법적 효과는 전파라는 공물의 특허사용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은 주파수이용권의 발생이다. 현행 전파법은 대가를 납부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는 당해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주파수이용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이용권 부여 조문을 도입한 것은 할당받은 주파수가 지정을 통해 개별 무선국에 분배되는 주파수와는 달리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인 전파자원의 확보를 위해서타인의 이용을 배제하는 등 별도의 권리를 가진 법률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전파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인정하도록하는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 주파수 대역의 이용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그 이용권의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필요하다. 동 조항은 가격경쟁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에게 해당 주파수에 대한유효기간 동안의 사용권 즉 주파수이용권은 물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오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주파수이용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주파수할당의 가장 중요한 법적 효과는 전파라는 공물의 특허사용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은 주파수이용권의 발생이다. 물론 권리 뿐만 아니라 할당대가의 납부라는 의무도 발생한다. 전파법은 주파수이용권을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파수이용권은 공물의 특허사용권이다. 공물의 특허사용은 당해 공물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하는 일반사용과는 달리 그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고, 특정인에게 당해 공물을 계속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특별한 권리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공물사용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그치고 그 공물의 본래의 목적인 공공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일시적 사용에 국한되는 허가사용과도 구별된다. 이러한 설권행위 자체는 신청인인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고, 이를통해서 생겨난 권리는 공권의 성격을 띤다. 특허사용권의 성격을 사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특허사용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논거로 하는 것이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항상 사권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특허자의 지위는 당해 공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이고 민법상 물권에서와 동일한 배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더욱이 특허사용권의 발생원인이 쌍방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공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배타적'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주파수자원은 공물로서 그 사용을 위해서는 공물주체에게 신청하여 강학상 특허사용권을 취득해야 하고, 공물사용권의 성격은 공권이면서도 채권적 성격³¹)을 가지기 때문에 '배타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따라서 전파법제14조 제1항에서 '유해한 혼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있다. 그러나 이때의 '배타적'이라는 표현은 독점적 경영권을 설정해준다는 공물특허의본래적 성질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권과 결부시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혼신 등 다른 제3자에 의한 장애 없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인다.

다. 심사할당 주파수의 경우

³¹⁾ 특허사용권이 물권인가 아니면 채권인가의 견해대립도 있다. 채권설은 주로 특허사용권을 공권으로 보는 입장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특허사용자의 관계의 문제로 보아 채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고, 물권설은 주로 특허사용권을 사권으로 보는 입장에서 물권과 같은 배타성을 갖는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특허사용권을 반드시 민법상의 물권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상의 독점적 지위의 설정이라고 이해하는 한 물권과 유사한 성격이 있고 그 성립단계에서는 주로 관리주체와 신청인의 관계에서 문제된다는 점에서 채권적 성격도 인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양면성의 의미에서 이른바'이중적 성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주파수이용권과 같은 특허사용권의 법적 성격이 물권이냐 채권이냐의 논쟁은 큰 실익이 없다고 해야한다. 물론 주파수이용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를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주체가 행정주체인지 아니면 일반사인인지에 따라서 공법상 또는 사업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전파법의 해석상 이러한 주파수이용권은 대가할당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즉, 문언상 심사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전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주파수이용권이 없는 것처럼 해석된다. 그리고 주파수할당이 아니라 단순한 주파수지정에 의해 주파수를 이용하는 자의 지위도 제14조가 말하는 주파수이용권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심사할당이나 주파수지정에 의한 주파수이용도 단지 할당대가의 납부가 없다는 것뿐이지 주파수를 이용하는 일정한 지위가 전파법상 인정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원인이 대가할당만을 염두에 두고 주파수이용권이라는 용어를 창설한 것에 있으므로 주파수이용권을 대가할당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파법상 허용된 주파수이용자의 특허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지칭하는 일반적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가할당과 심사할당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차이, 즉 할당대가와 출연금, 양도·임대의 가능성 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파수할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파수이용권 개념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공물의 특허사용권이라는 관점에서 구성하고 다만 대가할당의 경우에만 더욱 강화된 권리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ex. 양도·임대 가능성)으로의 입법론적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 주파수이용권의 양도 · 임대

1) 양도·임대의 가능성과 기간제한

배타적으로 이용되는 주파수 중 이용권자의 기술여건이나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주파수의 유휴분이 있을 경우 배타적 이용권자가 아닌 타 이용자에게도 당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양도·임대인의 경우는 유휴 주파수이용권의 처분에 따른 금전적 이익과 주파수 관리에 따른 부담감소가, 양수·임차인에게는 타인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던 주파수 자원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도 있다.

주파수이용권자가 양도·임대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당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없이 일단 주파수를 확보한 후에 2차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지만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 경제적 혼란, 파산 등 그 기업의 퇴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파수의 양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물의 특허사용권 부여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의 최소한을 보장하기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전파법시행령에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양도 또는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파법시행령은 '양도'의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임대'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할당의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재할당의 경우 재할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는 없으나 임대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 양도·임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 전파법시행령을 살펴보면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각각 양수·임차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주파수이용권 임대·임차계약서 사본,법인의 정관,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한다), 전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이용자 보호대책, 전파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의 경우는 전파법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파법 제12조 각호의 사항,즉 심사할당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승인절차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사업권의 양도·양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며, 이는 주파수의 양도·임대라는 당사자의 행위가 갖는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당사자 사이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을 함에 있어 제12조 각 호의 사항(심사할당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즉, 부관의 가능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양수 · 임차의 효과 등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지위를 승계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지불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는 당해 주파수의범위 내에서 개별 무선국허가 대신 신고를 함으로써 무선국을 개설·운용할 수 있다. 주파수이용권의 양수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다.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마.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주파수할당을 통한 주파수이용권은 전파자원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인이 이를 영구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즉 그 이용권은 주기적으로 평가되어 최 적의 이용자에게 재배분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용 기간은 출연금, 할당대가의 산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특히 대가할당의 경우 너무 장기간의 이용기간을 부여할 경우 대가의 산정이 곤란해지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발생한 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의 한도내에서 주파수 이용권의 기간을 정하 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할당하는 대가할당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할당하는 심사할당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한다(전파법 제15조제1항). 이는 주파수할당에 따른 주파수라 는 공물의 특허사용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제10조에 의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함에 있어서 주파수의 이용기간을 포함하여 공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경우 주파수 이용기간은 처음 주파수 를 할당받았을 때의 이용기간 중 양수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주파수할당의 취소

종전의 전파법상으로는 할당조건이나 할당공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에 대한 징계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 6월 전파법 개정시 도입한 제도이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상의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의 입법공백을 해결하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3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필요적 취소사항이다. 임의적 취소사항으로는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제15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방송법」제1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할당할 때에 정하여진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전파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파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아니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1회에한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려면 미리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재할당

가. 재할당의 의의

전파법 제16조는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경과된 때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점에서 주파수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재할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이용자보호를 고려한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주파수재할당은 반드시 재할당을 해야하는 기속적인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재할당을 할 것인지의 여부 및 할당방식의 변경 등 재할당과 관련한 포괄적인 재량을

³²⁾ 개정전 전파법에서는 해석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제시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허가와 전파법상 주파수할당은 서로 견련관계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는 기본관계에서, 만약 기간통신사업허가나 주파수할당 둘 중 하나가 먼저 소멸하는 경우 다른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의 수행이 어려워 사업허가가 취소·철회된 경우 전파법상의 주 파수이용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문제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상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자는 이미 전파법상 적법하게 할당대가를 납부하고 있는 지위라는 점. 사업수행이 어렵더라도 할당받은 주파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기간통신사업의 철회가 곧 주파수할당의 무효 또는 실효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의한 할당철회의 가능성만을 고려할 수 있을 뿐 이다. 그러나 이때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권 제한의 법리를 고려하여 할당을 철회할 수 있 다는 근거조항을 전파법에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물론 수익적 처분의 철회권 행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철회행위는 기존의 당사자의 수익적 지위의 배제를 의미하므로 가급적 법령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할당시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부가함으로써 법령상 철회의 법적 근거가 흠결됨으 로 말미압은 해석의 논란을 피해갈 수는 있을 것이다."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전파법상 일정한 경우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나. 재할당의 개념 및 법적 성격

기존의 주파수할당과 동일한 내용의 재할당이 이루어 진다면 이는 기존의 특허사용에 대한 갱신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심사할당 주파수가 대가할당 주파수로 변경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주파수할당의 내용이나 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는 새로운 특허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재할당 금지사유

원칙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주파수를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등을 위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파수 재할당을 할 수 없다.

라. 불이익 변경시 사전고지의무

방송통신위원회는 첫째, 해당 주파수를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둘째,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심사할당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려고 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즉 기존에 주파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가 더 이상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거나 또는 심사할당을 통한 주파수이용자를 대가할당에 의한 주파수이용자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같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파수 이용기간만료 1년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게 함으로써 주파수 이용자가 이

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6. 전 환

심사할당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대가할당 받은 주파수로 전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다. 심사할당 받아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그 이용기간 중에 전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할당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용기간 중이라도 대가를 받고 대가할당 받은 주파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전환은 심사할당 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재할당하는 때에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와는 달리 주파수의 이용기간 중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 규정은 2000년 전파법 전문 개정시에 할당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2000년 이전에 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를 부여 받아 심사할당 받은 것으로 보는 주파수가 2000년 개정 전파법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할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염두에 둔 조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7.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이용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가할당 주파수의 경우 당해 주파수를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주파수대역에서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주파수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들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히여 주파수이용권의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즉, 이러한 공법상의 권리를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여 권리변동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게 함으로써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파수이용권을 둘러싼 거래관계의 안정도 아울러 도모하고자 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 즉,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에 기재할 사항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날, 주파수 및 대역폭,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제공시기및 사업지역, 주파수할당시의 부과조건, 재할당사항, 권리설정내용 등이다.

제4절 전파자원의 이용

전파자원의 구체적인 이용은 무선설비(물적 요소)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인적 요

소)의 총체인 무선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전파법은 주파수의 할당과 별도로 이러한 무선국에 대한 개설에 있어서도 일정한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도입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의정도는 개설하고자 하는 무선국에 따라 개별적인 차이를 두고 있다. 그리고 무선국의허가 및 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 이외에 방송국이나 우주통신과 같이 일반 무선국과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특수성과 중요성을 가진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을 마련하여 관련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은 총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절은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무선국의 허가, 검사, 운용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으며, 제2절은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송국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들과방송수신의 보호, 방송표준방식의 확정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절은 우주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국제등록, 우주국의 개설조건, 위성망의 혼신 조정 등에 관한 절차규정을 정하고 있다.

1.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가. 무선국의 개설

무선국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전파법 제2조제6호). 따라서 무선국을 개설한다는 의미는 무선설비를 설치한다는 물적 부분과 이를 조작하는 자, 즉 인적 부분을 갖춘다는 의미를 가진다.(물론 모든 무선국이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무선종사자에 관한 내용 참조) 다시 말해서 무선국의 개설은 무선통신업무를 행할 수 있는 지위의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무선설비 각각의 부품을 고정 또는 결합하고, 공중선을 연결하고, 전원을 접속하는 등의 설치공사를 통하여 무선설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완성하고 전파를 발사하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주파수 분배 및 할당에 관한 내용이 전파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내용은 전파를 현실적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전파법은 주파수의 할당과는 별도로 무선국에 대한 개설에 있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규제의 정도는 그 개설하고자 하는 무선국에 따라 허가, 허가의제, 신고, 신고예외, 사용승인 등 차이를 두고 있다.

무선국의 분류는 ITU의 전파규칙(RR)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파법에는 41개종의 무선국이 분류되어 있다. 무선국은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선을 구성하는데 있어 어떻게 통

신망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무선국의 종류가 결정된다.

나. 무선국의 개설조건

무선국의 일반적 개설조건은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하고,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무선국 또는 비상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개설목적·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개설 목적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무선설비는 인명·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개설하고자 하는 무선국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무선국의 개설은 기술기준에 적합한 무선설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적법한 무선종사자를 구비하는 경우라면 전파자원의 절대적 용량이 허용되는 한 누구나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특수한 사유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는 크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선국 개설을 할 수 없다는 외국인 배제사유와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무선국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전파관련 법규위반 사유 및 반국가행위자 배제사유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신고 등

가. 무선국 개설의 원칙 - 허가

전파자원은 희소성이 있고 혼신·간섭 등이 이용상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주체에 의해 관리·통제되는 공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물을 이용하는 무선국의 경우는 누구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파법 제19조 제1항 본문) 따라서 무선국 개설에 있어서의 원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이다.

현행 전파법은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할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무선국 개설 허가의 신청, 허가신청의 단위, 허가의 심사기준, 허가증의 발급, 무선국의 고시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로 무선국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행정주체가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전파법 제21조 제1항)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시설개요서나 공사설계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첫째,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둘째,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셋째,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넷째, 전파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선박안전법」이나 「항 공법」에 따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유효 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에 있어서의 기산점은 전파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 다만, 전파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경우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개설을 허용하는 무선국(전파법 제20조 제2항 제4호) 및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용하는 무선국(전파법 제20조 제2항 제5호)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무선국의 종류별 허가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시설 제공역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전송 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특정주파수대역을 이용한 무선국개설허가를 받은 뒤 유효기 간만료 등으로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 전송망사업자는 위 주파수대역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33)

재허가는 전파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그 허가 의 효력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신ㆍ구 허가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허가절차의 간소화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사정변경이 있다면 새로운 내용의 허가를 다시 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전파법시행령 제38조는 전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 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 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 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 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전파법 제2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의 심사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이 때 최초 허가신청을 했을 당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전파의 형 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공중선전력, 운용허용시간, 무 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공중선의 형식 · 구성 및 이득,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 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최초 허가신청과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허 가를 발급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허가의제 무선국

전파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를 받은 전파법시행령제22조에서는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이 이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다.

휴대용 단말기의 경우 특별한 심사절차를 거지치 않더라도 이미 단말기 생산시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된 기기이므로 그 기기적 검증이 가능하고, 4천만명에 이르

³³⁾ 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는 이동통신 가입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며, 나아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당해 단말기의 사용이불가능하므로 역무제공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 즉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바(전파법 제19조 제3항), 구체적으로는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 중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수, 매 분기 말일 기준의 가입자의수,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현역병으로서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의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전파법시행령 제23조)

또한 허가의제의 경우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전파법 제22조), 검사(전파법 제24조), 변경허가(전파법 제26조),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휴지(전파법 제32조), 수수료(전파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전파법 제19조 제2항)

다.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는 ①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②수신전용의 무선국, ③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중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 있다(전파법 제19조제1항 단서). 이러한 무선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개설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며(전파법시행령 제21조 3항),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 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제19조제1항제3호)은 신고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주파수 할당을 받지 않고 개설하는 무선국과 동일하게 무선국검사 및 무선국 변경(허가) 등에 관한 내용이 준용되도록 전파법 제33조는 규정하고 있다.

즉 전파법 제24조 무선국의 검사에 관한 규정이 모두 준용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 무

선국의 경우 신고만으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규정내용 중 허가부분을 신고로 대치하면 된다. 또한 전파법 제26조 변경허가에 관한 내용 및 이에 따라 준용되는 전파 법 제25조 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내용도 대부분 준용된다.

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신고해야 하는 무선국임에도 불구하고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전파법 제19조제4항) 이를 받은 전파법시행령 제24조는 ①표준전계발생기·혜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 ②전파법 제46조에 따른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③전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2호의 무선기기(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④전파법 제46조에따라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범위에서 특정구역 또는 건물 내 등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용도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체계상 신고 뿐만 아니라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유로이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선국들은 발사하는 전파가 아주 미약하여 타 무선국에 혼신·간섭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자유롭게 사용하여도 일반적인 전파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선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무선국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허가,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무선 국을 개설할 수 있다(전파법 제19조 제5항). 이를 받은 전파법시행령 제25조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군용전기통 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무선국,(특히 이 경우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음), ②외국의 국가원수 등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에 의전·경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③주한 외국공관이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④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이 그 행사기간 중에 개

설하는 무선국, 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중 같은 협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약정의 적용을 받는 무선국, ⑥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이 업무를 위하여관리·운용하는 무선국 등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무선국이다.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을 할 수 있다.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구 분	대 상
허 가	일반 무선국
신 고	발사전파 미약 무선국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전파천문의 수신전용 무선국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허가의제	할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
신고 불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등
사용승인	군 등의 무선국

<표 5-1> 무선국 개설의 유형

3. 무선국 검사

가. 무선국 검사의 의의

무선국은 전파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전파에 의하여 혼신이나 간섭 등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불필요한 전파발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성능,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에 대한 적격여부 검사가 필요하다.

무선국 검사는 무전기가 전파를 발사함에 있어 주파수 편차, 중심주파수에서 규정된 대역폭 유지, 무전기가 동작할 때 필요 없는 전파발사가 되고 있지 않는지 여부, 전파가 규정된 공중선전력 초과, 무전기 소유자 변동이 없는가 등 전파 관리 측면에서 일정기 간마다 확인을 받아 운용토록 하여 전파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선설비 이용자는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정비하지만, 성능이 불량한

상태로 사용하게 될 때는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게 되므로 혼신, 통화단절 등 통화접속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하여 무선국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나. 준공검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준공신고시에 하는 검사를 준공검사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신고를 할 때 무선설비의 성능성적 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준공검사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없이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준공기한의 연장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에 적힌 준공기한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방송 통신위원회에 준공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연장신 청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총 연장기 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정기검사

1)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무선국별로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의무선박국, 의무항공기국, 실험국, 실용화시험국은 1년이다. ②의무선박국 중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과 선박안전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의 의무선박국 및 항공법 제2조 제1호 및 제25조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의무항공기국은 2년이다. ③전파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무선

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인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3년이다. ④전파법시행 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인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5년이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정기검사의 시기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2개월 이내, ②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2년 또는 3년인 무선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③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5년인 무선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기검사의 방법

정기검사는 성능검사와 대조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성능검사는 공중선전력·주파수·불요발사·점유주파수대폭·등가등방복사전력·실효복사전력·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하고, 대조검사는 시설자·무선설비·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4) 정기검사기관장의 의무 등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무선국의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 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마. 임시검사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바. 정기검사의 연기, 면제 또는 생략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①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② 아마추어국(전파법 제46조에 따른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④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⑤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⑥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의 경우 등이다.

또한 전파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국 중 ⑦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⑧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⑨선상 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⑩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⑪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등의 경우에도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4. 무선국의 운용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무선국은 허가 무선국의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신고 무선국의 경우에는 신고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①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이를 받은 전파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아마추어국(법 제46조에 따른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

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전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③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이를 받은 전파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은 전파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국 중 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무선기기,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무선기기,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가 이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다. ④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선국, ⑤전 파법 제20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국(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전파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무선국(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은 준공신고를 한 후에 운용할 수 있다. 즉, 준공검사를받기 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전파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전파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첫째,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은 주파수의 대역 할당 과정에서주파수의 용도, 다른 무선국과의 혼신 여부, 개설목적의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이미 검토를 받고 있어 주파수의 할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과 달리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여도 전파 혼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으므로 이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고 사후에 불합격한 경우에 운용 정지 등을 명할 수있는 사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고 있고, 둘째, 이동통신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기지국 등을 일시에 구축·운용하여야 하므로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고, 이로인하여 이용자의 편익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5.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유한한 자원인 전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설자에게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서 시설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무선국의 폐지란 장래에 대하여 무선국을 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운용휴지는 일시적으로 무선국의 운용을 중지하는 것으로, 폐지나 운용휴지는 시설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 전파자원의 사장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전파자원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선박국이나의무항공기국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설이 강제되고 있는 무선국의 경우는 폐지 또는휴지를 할 수 없다.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파법 제32조). 이 경우 운용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시설자가 무선국 폐지를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은 소멸된다.

6. 무선국 운용자의 의무

무선국의 호출·응답방법, 운용시간, 청취의무 등 통신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효율적인 무선국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에 관하여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0호)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전파규칙(RR)에서 규정한 혼신에 대한 관련규정은 무선국으로부터의 혼신과 각종 전기기 및 전기설비(송배전선망 및 전기통신 배선망을 포함하고 산업·과학 및 의료용 기기를 제외한다)로부터의 혼신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시설자로부터 혼신 신고가 있을 시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등재한 후 중요통신망 등 긴급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통신보안이라 함은 우리가 사용하는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통신, 무전기 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통화내용이 알아서는 안될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통신보안에 관하여는 유·무선을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 특히 무선의 경우 통신보안상 취약한 점이 많으므로 무선통신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통신보안 교육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안전법 및 항공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이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를 정하고, 해안국·선박국·항공국·항공기국은 조난신호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다른 모 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선박 및 항공기 구조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긴급통신, 안전통신을 수신한 때에 조치사항을 규정하였다.

즉, 선박안전법 및 항공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하여 즉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한 무선통신으로 해안국, 선박

국, 항공국, 항공기국에 대해서는 조난통신은 모든 무선통신에서 최우선 취급하도록 하고, 조난신호를 수신하였을 때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선국의운용등에 관한규정에서는 조난통신 관련 조난신호, 조난호출, 조난통보 및 이외의 조난통신에 관한 취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실험국은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이며 아마추어국은 개 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의하여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실험 국은 개설목적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고, 실험국이 아마추 어국과 통신할 때에는 암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7.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방송국도 무선국이므로 일반 무선국의 허가시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특히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시에는 기존 방송국과의 혼신을 방지하여 양질의 방송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방송국의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방송국 개설시에는 시설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기존 방송국과의 혼신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로 혼신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중파방송, 초단파방송, 텔레비전방송 등 방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주파수 특성에 따라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기술적 조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전파법 제35조제1항). 즉 방송국 개설조건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다른 방송과의 혼신방지이다. 이는 다른 어떤 무선국보다도 혼신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필요성이가장 큰 것이 방송국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내용이다. 이러한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공중선의 높이 · 출력 및 지향특성 등의 사항에 관하여 개설조건에 관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동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8. 우주통신의 운용

전파법 제38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통신은 우주공간에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인공위성을 중계수단으로 이용하는 통신을 말한다. 우주통신은 지구국-우주국-지구국 또는 지구국-우주국-지구국으로 통신로가 구성된다. 여기서 우주국이라함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하며, 지구국이라함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위성궤도라 함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을 말한다. 즉, 위성궤도는 우주공간에 위성이 위치하는 지점을 말하며 위성의 사용목적 및 위성배치계획에 따라 정지궤도, 비정지궤도 등 다양한 종류의 궤도가 이용되고 있다. 정지궤도는 위성을 지구 적도상공 35,786㎞에 위치하게 하여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의 공전주기가 지구의 자전주기와 거의 일치하게 함으로서 지구에서 위성을 볼 때 항상 정지된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통신을 행할 수 있어 이를 정지궤도라 한다. 정지궤도는 고정통신, 위성방송의 용도로 사용된다. 비정지궤도는 정지궤도 보다 낮은 지구 상공 약 500㎞~20,000㎞에 위치하는 궤도로 동궤도에 위성이 위치할 경우 위성이 지구를 하루에 10여회 회전하므로 비정지궤도라 한다. 비정지궤도는 이동통신, 지구관측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유한의 우주자원인 정지궤도를 세계 각국이 공평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전파규칙(RR)에서 위성궤도 및 사용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국 개설을 위해 위성궤도 및 사용주파수에 대한 국제적인 사용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전파규칙(RR)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위성궤도 및 주파수 사용신청서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파사용 주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받아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파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절 전파자원의 보호

자원으로서의 전파는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를 생성하여 이용할 경우 혼신이나 간섭 등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물리적인 특성이 있어 그 이용측면에 있 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자원이다³⁴). 또한 전파와 관련한 각종 위해요소를 일정한 기술기준과 안전시설 등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전파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전파의이용은 제한·통제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전파 이용을 위해서 국가에 의한 일정한 관리·감독을 통한 전파자원의 보호체계가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전파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기술기준(제45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제46조), 전자파적합등록(제57조), 안전시설의 설치(제47조),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제47조의2),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제48조), 전파감시(제49조), 국제전파감시(제50조), 혼신조사 등(제51조), 무선방위측정방치의 보호(제52조), 조사 및 조치(제53조), 자료의 제공(제54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제55조),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제56조),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제58조)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파법상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기본법」제33조의3의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이 준용된다. 따라서 정부는 무선설비 기기 등의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 협정을 외국정부와 체결할 수있으며,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파법상 인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인증을 얻은 무선설비 기기등에 대하여 전파법상 인증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외국시험기관을 국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전파법제79조 제1항)

또한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동법 제33조의3)", "토지 등의 사용·일시사용·출입(동법 제39조부터 제41조)", "원상회복의 의무(동법 제44조)", "손 실보상(동법 제45조)", "토지 등의 손실보상의 절차(동법 제47조)", "설비의 이전 등(동법 제51조)",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벌칙조항(제70조제6호 및 제73조제2호·제3호)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또한 규정하고 있다.(전파법 제79조 제2항)

1. 기술기준

무선설비에 대하여 일정한 기술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해당 무선국의 개설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무선설비 능력을 갖추게 함은 물론 타 무선국간의 방해를 배제하여 통신 질서의 유지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이다. 이러한 기술기준은 전파의

³⁴⁾ 최호용, 앞의 글(각주 3), 2007.

규율에 관한 시책 또는 개개 무선국의 규제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현행 전파법은 무선설비와 관련하여 주파수 허용편차와 공중선전력 등의 내용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위임을 받아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16호, 2008.09.11.)을 제정하여 기술기준과 관련한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16호, 2008.09.11.)은 제2장에서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을 규정하는 한편, 제3장에서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제5장에서 업무별로 구분하여 무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즉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 항행업무용 무선설비,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 기타업무용 무선설비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가. 의 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영역에서 질 높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보편적인 욕구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통신망 운용 및 제품개발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고 각종 법규를 보완하여 망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단말장치가 통신망에 접속되었을 때,통신망이나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일정 수준의 기술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현행 전파법은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할 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형식검정대상기기 중 인명안전과 관련된 기기에 대하여는 계속 형식검정제도를 유지하되, 인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기기에 대하여는 형식등록 제도를 통하여 지정시험기관에서 당해기기를 시험하고 정해진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형식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식검정을 형식등록으로 완화함에 따라 일부 부정한 등록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감독과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의 위임을 받아 현재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8호)」가 제정되어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동 고시에서 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법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동 고시 제2조제1항제1호). 이를 바탕으로 동 고시는 인증대상 기기, 인증면제 기기, 인증 절차,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상 구분되어 있는 법적 개념들을 하위 규범에서 이들을 포괄하는 용어를 따로 신설하여 규율하는 체계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대상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후 방송통 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나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형식검정 대상 기기는 대부분 인명안전과 관련되는 기기로서 선박에 설치하는 경 보자동수신기 ·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 · 선박국용 무선방위측정기 · 의무항공기국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기기ㆍ경보자동전화장치ㆍ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ㆍ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 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로서 해상이동 업무 또는 항공이 동업무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더 등과 기 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를 말한다(동 고시 제3조제1항 별표 1). 형식 등록 대상 기기는 인명안전과 관련이 적고 통상적으로 흔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기기로서 형식검정 대상기기보다 시험방법 등이 덜 엄격한 기기로서 무선호출국용 무선 설비의 기기 · 형식검정 대상기기를 제외한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 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의 기 기·라디오부이의 기기·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F1D, G1D, F2D, G2D, F3E, G3E 전파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및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를 말한다(동 고시 제3조제2항 별표 2).

3. 전자파적합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제도는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 장해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 보호기준을 정하여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기기에 대하여 기준에 적합한가를 판정하는 공적 확인 및 증명제도 이다. 전자파는 공간으로 퍼져나가거나 또는 전원선을 통하여 흐르게 되어 다른 전기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바, 더욱이 고도로 자동화된 오늘날의 전기 관련 기기들에게 아주 약한 전자파의 간섭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큰 피해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런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파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파적합등록 제도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전자파적합등록에 대해서는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과 관련한 법규정들을 준용한다. 따라서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에도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과 동일하게 전자파적합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할 수 없으며(법 제46조제3항), 지정시험기관에 의한 성능시험을 거쳐야 하며(동 조 제4항), 전자파장해기준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동 조 제6항). 그리고 전자파적합등록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현재 「방송통신기기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3호)」가 제정되어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 고시에서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법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모두포함하여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동 고시 제2조제1항제1호). 이를 바탕으로 동 고시는 인증대상 기기, 인증면제 기기, 인증 절차,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고있다. 전자파적합등록 제도는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제도와 법률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으나 하위규정들에 의한 세부 시행 절차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4.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 위탁운용, 공동사용이라는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투자비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자연환경 보호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고려하에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이다. 즉 기간통신사업자의 개별 무선국 설치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되는 무선국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 무선설비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위원회는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임대기

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는 무선국의 공중선주·송신설비 및 수신설비·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기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에 한한다. 또한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가지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첫째,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둘째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셋째,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되며, 마지막으로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설자의 신청 및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이외에 자연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설자에게 무선 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사후관리

가. 전파감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파감시 업무의 내용으로 전파법상 규정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대역폭 등 전파의 품질 측정, 둘째,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셋째,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셋째, 조난통신 등(제28조제2항)에 따른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다섯째, '무선국의 운용'・'통신방법 등'・'조난통신'・'혼신 등의 방지'・'통신보안의 준수'와 관련한 전파법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여섯째, 그 밖에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파감시 업무로는 ①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의 탐지, ②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분석, ③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④ 전파의 이동감시, ⑤ 그 밖에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조치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다.

나.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불법무선국의 조사나 혼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발사 전파원의 방위를 측정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방위 측정은 그 업무의 성격상 매우 높은 측정 정확도가 요구되므로 방위 측정에 영향을 주는 지형 등의 배려 외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선방위측정장치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조항이다.

다. 각종 조사 및 조치 등

무선국의 무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 고압송전선에 흐르는 고주파전류 또는 수신설비를 비롯한 기타 전기설비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가 다른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상태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이다. 무선국을 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방해 전파 및 불필요한 전파를 제거하는 한편 전파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전파 상호간의 간섭 등을 조사하여 신속히 제거토록 함으로써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깨끗한 전파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 밖에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이나 전자파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2호)」제8조 제4항에 의하면 혼신이 명백하고 계속적이며 중대한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혼신의 유무판별이 곤란하거나 계속적인 장해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의 보완 또는 검토 후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혼신이나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설비의 개선·운용중지 및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나 수신설비 또는 고주파전류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가 다른 무선설비 및 전기적설비 등의 기능에 혼신을 주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 등의 필요한 조치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혼신원을 제거토록 지시한 후지시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혼신원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파기토록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라 함은 혼신원이 불법무선국일 경우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허가를 받은 무선국이 개조, 변조 등의 원인으로 혼신을 발생한 경우 허가를 부여한 행정처분의 부서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함을 말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선국, 인증을 받지 않은 정보통신기기 등 불법전파설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한 후 일정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시설자·소유자·제작자 또는 이를 판매·진열·보관 또는 운송하는 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철거·파기·수거 또는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특히 불법무선국의 경우에는 운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하거나 공중선을 철거하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형식검정 합격표시, 형식등록 표시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한 자(법 제90조제3의2호)에 대하여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전파연구소장은 처분을 의뢰 받은 내용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 전파의 진흥

전파의 진흥은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전파 관련 연구의 활성화 촉진, 전파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전파이용 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등을 통하여 전파 관련 영역의 수준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제59조의2),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제60조), 전파 연구(제61조), 기술개발의 촉진(제62조), 표준화(제63조), 인력의 양성(제64조), 국제협력의 촉진(제65조), 한국전파진흥원(제66조)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제66조의2)의 설립근거, 전파사용료(제67조) 및 수수료(제69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전파법에서 '전파의 진흥'에 포함되어 있었던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자원의 수요전망, 주파수대역별 용도 및 이용현황 등에 관한 계획인 '전파이용중·장기계획(구 전파법 제8조)'과 수립절차가 유사하고 그 내용이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35)로 2008년 6월 13일 전파법 개정을 통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으로 통합되어 현행 전파법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에서 규율되고 있다.

현행 전파사용료 제도는 전파수요가 증가하면서 전파관리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이용가능한 주파수의 부족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세계 주요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파사용료 제도를 도입하여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유한한 국가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인 분배사용 및 새로운 주파수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자 1993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전파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다. 즉, 무선국을 허가 받은 시설자는 무선국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를 지정받아 사용하게 되며, 따라서 시설자가 무선국운용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공공의

³⁵⁾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8. 5, 13면.

재산을 개인이 점유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전파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가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공공의 자산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비용을 합당한 근거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전파사용료 제도의 취지이다.

전파사용료의 부과는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며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전파법 제68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공중선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선국 개설·변경허가, 준공·변경·임시·정기검사, 자격증교부신청 및 허가증정정 신청 등 행정기관에 의해 전파행정서비스를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는 행정기관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공과이다.

제7절 무선종사자

"무선종사자"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국가 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전파법 제2조 제7호). 무선국의 물적 요소인 무선설비와 더불어 인적 요소를 이루는 무선종사자에 관하여 현행 전파법은 자격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선통신에 관한 일정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본 장은 무선종사자의 자격(제70조)과 무선종사자의 배치(제71조)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전파법은 무선종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해야함을 규정하여 자격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혼신방지 등의 무선통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혼신의 염려가 적거나 인명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라도 무선설비의 조작 및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예외를 또한 규정하고 있다(전파법 제70조제4항).

검정에 합격하여 일정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무선종사자를 그 자

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무선국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적법한 자격을 갖춘 무선종사자라 하더라도 적절한 인원이 무선국에 배치되어야만 효율적인 무선통신의 이용 도모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무선종사자에 대해서는 무선국 배치를 금지하고 있다.

시설자는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에서는 해안국·지구국·선박국·방송국·항공기국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8절 제재처분 및 실효성 확보수단

1. 일반론

가. 개 관

현행 전파법은 제8장 '보칙'과 제9장 '벌칙' 부분을 별개로 규정하여 전자에서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과 같은 직권취소 또는 철회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전파행정의 주요한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배한 대상자에 대한 제재처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후자에서는 전파법상의 각종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전파진흥 등을 목적으로하는 전파법의 입법목적을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보칙은 법률의 기본적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의의를 가지는 규정으로 현행 전파법은 제1장 '총론'부터 제7장 '무선종사자'까지의 내용체계로 전파법의 기본적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보완하는 내용들을 보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전파법은 보칙의 장에 주로 전파행정 절차상의 각종 위반사항에 관한 제재처분들을 정하고 있어 그 실질적인 내용은 전파법과 관련한 행정청의 감독 권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전파행정 절차상의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처분들을 '보칙'이라는 명칭 하에 한데 모아놓은 규정체계는 해당 제재처분의 사유들이 전파분야의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한 불가피한 입법적 선택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해당 절차별로 관련된 제재처분을 규정하는 법구조가 더 체계적이고 또한 명확하므로 국민이 관련 내용을 좀더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8장 '보칙'에서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제한명령

과 관련한 과징금의 부과,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청문절차, 권한의 위임·위탁, 타 법률의 준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 9장 '벌칙'에서는 전파법상 각종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징역, 벌금)과 행정질서 벌(과태료)을 주로 규정하는 한편 양벌규정,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들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우선 행정의 제재처분, 특히 전파법상 제재처분과 관련되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또한 전파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관련되는 행정벌, 과징금 등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살펴본 다음 전파법상 개별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職權取消)

행정행위의 취소는 좁은 의미에서는 직권취소를 의미한다. 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에 있어서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하자의 정도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무효와, 그리고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원인에 있어서 철회와 각각 구별된다³⁶). 이러한 취소행위에 대한 일반적 법적 근거에 대하여 판례는 취소행위를 위하여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어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³⁷), 학설도 별도의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이도 위법한 행정작용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청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³⁸). 취소의 사유는 법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개별적인 경우의 직권취소사유는 법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그 개별적 취소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가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취소사유가 인정된다. 즉 중대하나 명

³⁶⁾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³⁷⁾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병역의무가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신체등위판정이나 병역처분 등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³⁸⁾ 김남진 · 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07, 296면 ;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4, 330면 등 참조

백하지 않거나, 명백하나 중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행정기관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는 법령상의 예외적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는 직권취소의 경우에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개별적인 경우에 비추어 적절하게 조화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일반 행정행위의 발령의 절차와 같으며, 보통 청문의 절차가요구된다. 직권취소의 효과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설정하고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가대상인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의 원인에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소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부정되고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취소권 행사의 원인에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반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가 대상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소급효가 인정된다.

다. 행정행위의 철회(撤回)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실무나 판례상으로는 취소의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상으로는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즉 행정행위의 효력상실사유가 후발적인 점에서, 따라서 그 효과로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는 점에서 직권취소와 구별된다. 철회의 사유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계속하여 더 이상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에는 우선 첫째로 사정변경의 경우로서 구체적으로는 근거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정요건이 흠결된 경우, 중요한공익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행위 발령 당시와는 다른 사정변경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즉 상대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행정청이 부가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불이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때의 철회수단은 비례성의 원칙상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의무위반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경미한 제재수단의 행사가가능하며,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한 때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철회권의 행사가 가능하게된다. 마지막으로 부관으로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에 유보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철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철회권의 경우에도 취소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행사 여부가 자유로운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이익형량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행정행위가 부담적 행정행위(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인지 또는 수익적 행정행위(상대방에게 권리를 설정하고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구분된다. 즉 부담적 행정행위는 당사자에 대한 기존 불이익의 제거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고 보며 따라서 철회권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수익적 행정행위는 당사자의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철회권행사가 자유롭지 못하며 일정한 제한하에서만 철회권 행사가 인정된다. 즉 철회행위가당사자의 기득권에 대한 제한이나 박탈행위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게 되며, 또한 이익형량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철회를 요청하는 공익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보호의 이익보다 우월한경우에만 허용된다. 비례성의 원칙상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행사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만한다.

라. 행정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사후적인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로서, 행정법상의 간접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이다. 행정벌도 처벌의 일종이므로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물론 이때에는 법률이외에 행정입법이나 자치입법에 의한 행정벌도 가능하나, 이때에는 위임입법상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행정벌은 처벌의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行政刑罰)과 행정질서벌(行政秩序罰)로 구분된다. 전자는 형법상의 형벌이 과하여지는 행정벌을 의미하고, 후자는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위반되는 행정법상의 의무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행정형벌이, 그 이외의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이 부과된다3의. 그러나 행정형벌은 형벌로서의 성격도 갖는 것이므로 신중히 행해져야 하며, 행정질서벌에 의해서도 충분히 그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목적이나 기능면에서 현실적으로 서로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 행위에 대해 양자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배치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대상행위가 다른 경우에 양자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 차이를 갖게 되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행정벌은 형사벌과 기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이에 관한 별도의 적용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성질이 유사한 다른 규정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걲

^{39) &}quot;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바14 결정)

토할 수밖에 없다. 우선 행정형벌의 경우는 그 처벌수단의 성격상 형사벌과 공통되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정 범위에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가능하다. 즉 행정형벌에 대해서는 형법 제8조40) 본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8조 단서에 의하면 특별한 명문규정이 있거나 그 규정의 해석상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형법총칙 규정은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형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형법총칙 내용이 적용가능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해지게 되나 예외적으로 통고처분41), 즉결심판절차42)에 따른 과벌절차가 인정되고 있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상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로서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이다. 이는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으므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객관적인 의무위반 자체에 대해 처벌이 연계되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요건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로 이전하게 되므로, 이때에는 과태료가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부과되어진다. 과태료부과에 대해 일정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하게 된다.

마. 과징금(課徵金)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말한다⁴³). 과징금은 원래 처음 실정법에 도입할 당시에는 '경제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한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

⁴⁰⁾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⁴¹⁾ 통고처분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통고처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절차가 종료하게 되며,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고발에 의해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된다.(류지태, 앞의 책(각주 6), 328면)

⁴²⁾ 즉결심판절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행정벌을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법원의 판사에 의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 제3조)

⁴³⁾ 과징금은 1980년에 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며 현재 100여개의 개별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다(신봉기, 경제규제법상 과징금제도, 한국공법학회 제28회 월례발표회(1992.5.30) 발표문, 30면 참조.)

는 경우에, 당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일종의 행정제재금(行政制裁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실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징금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나 허가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당연히 당해 인가나 허가사업 등을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처분을 내리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되, 이에 갈음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도 과징금으로 논하고 있다. 이를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라고 하는데색), 이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 대상이 공익사업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함으로써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생기게 되므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본다. 어느 경우에나 과징금은 당사자에 대한 금전적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개별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과징금은 금전적인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점에서 유사개념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과징금은 그 주체가 행정청이라는 점, 그 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 따라서 부과행위에 대한 불복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한다는 점 등에서 행정형벌인 벌 금과 서로 구별된다. 또한 이는 행정질서벌이 아니고, 별도의 절차에 의함이 없이 소관 행정청이 바로 징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2. 전파행정의 제재처분

가.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 제72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설한 무선국 및 시설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허가·신고의 효력을 당연상실하게 하거나 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명령, 각종 운용정지, 운용제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무선국 운용과 관련한 행정청의 구체적인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는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성립한 허가처분의 효력을 그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데 대하여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동 조에서는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법적 성격은 강학상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무선국의 폐지명령은 장래에 대하여 더 이상 무선국을 운용할 수

⁴⁴⁾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653면; 이에 해당하는 예로서는 식품위생법 제65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석탄산업법 제21조제4항 등이 있다.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운용정지는 무선국의 전체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운용제한이란 무선국의 무선국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전파법 제72조에서는 이러한 무선국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이 중 제1항과 제2항은 무선국 시설자의 부적절한 무선국 운용에 대한 감독을, 제3항에서는 시설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현행 전파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은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으로서, 통상적으로 그 부과대상이 공익사업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함으로써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처분을 내리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되, 이에 갈음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전파행정에 있어서 무선국의 운용정지나 운용제한 처분대상 무선국이 방송국 또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국 등인경우에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들 무선국을 이용하는일반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파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무선국 운용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이에 가입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신하여 무선국 운용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함으로써 전파관리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일반이용자의 공익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때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내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과징금을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은 전파법시행령 제121조 별표27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별로 전기통신 사업용 무선국 또는 방송국과 기타의 무선국으로 구분하여 3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부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의 규모 및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 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 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형식검정 ·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등

현행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는 무선설비의 기기 또는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형식검정·형식등록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검정·형식등록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은 현재 「방송통신기기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3호)」를 통하여 "인증"이라는 용어로 통합되어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전파법 제74조는 이러한 인증절차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귀책사유에 근거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전파법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는 형식검정에 합격한 자 및 형식등록을 한 자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해 기기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거나 생산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무선종사자는 무선국의 물적 요소인 무선설비와 더불어 인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무선국이 전파법령상의 내용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선종사자의 적법한 자격 및 관련 규정 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현행 전파법은 무선종사자 자격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무선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 제76조에서는 무선종사자의 귀책사유에 근거한 일정한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각종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전파법 제76조는 무선종사자가 전파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기술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마. 청 문

청문(聽聞)은 관련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본래의 이념으로 하는 제도로 구체적으로는 행정작용의 당사자인 시민이 당해 행정작용에 대해 통지받고 이에 대해서 자신이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한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현행 전파법은 제77조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행정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절차 및 각종 취소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전파법 제77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열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전파법 제6조의2)
- (2) 주파수할당의 취소(전파법 제15조의2)
- (3)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전파법 제72조제2항)
- (4)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전파법 제74조제1항)
- (5)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전파법 제75조)
- (6)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전파법 제76조)

3. 전파행정에서의 행정형벌

행정벌로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을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한다. 형법 제41 조는 형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파행정상의 행정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유형인 징역 및 금고와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행정형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법총 칙이 적용되며, 과벌절차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하나, 즉결심판절차 또는 통고 처분절차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전파법은 제80조 내지 제87조를 통하여 전파법과 관련한 각종 범죄행위와 전파이용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행정형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전파행정상의 행정형벌은 그 위반행위의 내용별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통신 내용의 위법성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폭력파괴를 주장하는 통신(제80조), 허위 내용의 통신(제83조), 음란한 통신(제85조)에 대한 행정형벌을 들 수 있다. 둘째, 전파법상 행정절차와 관련되는 각종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행정형벌(제84조, 제86조, 제87조)로 처벌하고 있다. 즉 전파행정상 각종 허가·신고·인증·검사·명령 관련 위반행위를 행정형벌로 처벌하여 전파법 규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조난통신과 관련한 위반행위(제81조)로, 중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로 직결되는 긴급상황에서 조난통신을 발신

하지 않거나 지연시키고 방해한 자에 대하여 전파법은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중대한 법익인 생명권이나 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보호수단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무선설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행위도 행정형벌로 처벌된다(제82조). 이러한 행정형벌들 이외에 전파법은 전파행정상 각종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양벌규정(제88조)을 도입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죄 등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제89조)을 또한 규정하고 있다.

4. 전파행정에서의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벌에 속한다. 행정질서벌은 신고·등록·서류비치 등의 각종 행정절차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이며 따라서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객관적인 의무위반 자체에 대해 처벌이 연계되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요건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45). 또한 과태료를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고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게 된다.

현행 전파법 제90조 내지 제92조는 전파행정상의 각종 절차와 관련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4가지 종류의 과태료(1,0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를 규정하고 해당 과태료별 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전파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 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파법시행령 제124조는 이에 따른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별표 28에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별표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가중·경감을 정하고 있고 개별기준은 무선설비 등의 운용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와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로 구분하여 해당 위반

^{45) &}quot;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내용에 따른 과태료금액을 방송·전기통신 사업용 무선국 중 위반 무선국 수 및 그 밖의 무선국 중 위반 무선국 수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현행 전파법상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행법 상 과태료부과에 대한 별도의 부과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과태료부과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적 사항이 준수되어야한다46). 따라서 전파법상 과태료부과 절차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47)의 규정이 준용되고,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사실 및 과태료 금액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30일 이내의 이의제기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전파법 제93조).

⁴⁶⁾ 류지태, 앞의 책(각주 6), 330면 참조

⁴⁷⁾ 행정절차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 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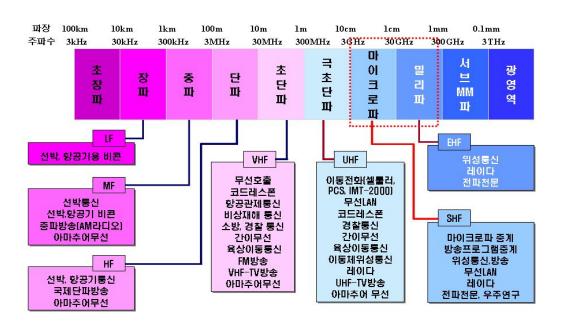
제6장 전파방송 업무편람

제1절 전파자원의 확보

1. 국제 주파수분배

가. ITU

주파수의 국제분배는 3~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 (WRC)에서 담당하고 있다. ITU에서는 국제 주파수 분배 시 모두가 동등한 조건하에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주파수대를 특정 업무 또는 지역 별로 분배한다. ITU에서 전 세계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3 版 ~ 3,000版 대역에 걸쳐있다.



<그림 6-1> ITU 국제 주파수분배 대상(3kb ~ 3,000cb 대역)

나. WRC

WRC(세계전파통신회의)는 ITU의 전파통신부분 최고 의결기구로서 통상 3~4년마다 개최되고, 정부 및 기관·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세계최고의 전파통신 회의이다. WRC는 국제규칙인 전파규칙(RR)의 제·개정 의결회의로 전파자원 분배의 국제적 조화

와 주파수 및 위성궤도 분배, 통신의 편리성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03년 이후 전 세계적인 주파수분배 의제를 다루고 있는 ITU-R WRC의 주요 분배 동향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확장, 무선랜이나 FWA(Fixed Wireless Wccess) 등 비면허 시스템 이용 확장, 전파천문과 지구탐사 등 우주과학업무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미래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확보와 맞물려, 60분 이상 대역의 기 분배업무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간유해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공유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00분, 180분, 370분 대역의 우주탐사(수동), 우주연구, 기상위성업무 등의 주파수 공유방안 및 공유기준 연구가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표 6-1> WRC 회의 별 주요 의제

회의명	주요의제			
WRC-1992	- IMT-2000용 주파수 최초 분배(1885-2025₩ 및 2110-2200₩ 대역) - 저지구궤도(LEOS) 위성을 이용하는 이동위성업무에 주파수분배 - 미래의 고화질 TV 위성방송을 위한 세계 단일 주파수분배는 지역상황이 달라 실패			
WRC-1995	- 전파규칙의 재구성 및 간소화를 위해 전파규칙 개편 단행 - 이동위성업무 피더링크 주파수 확보 - NGSO MSS 시스템 피더링크용으로 주파수분배			
WRC-2000	- IMT-2000용 주파수 추가 분배(806-960배), 1710-1885배), 2500-2690배 역의 일부) - 방송위성용 주파수계획 개정 - 위성망 등록절차 개정 - 성층권 통신시스템용(HAPS) 주파수분배 -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주파수공유 - 무선항행위성업무(RNSS)용 주파수 추가 분배			
WRC-2003	- 미래이동통신에 대한 주파수 수요 검토 - 3대 대역 무선표정업무의 분배 순위 조정 - 공공안전 및 재난구호 업무용 주파수분배 - 5대 대역 무선랜 주파수분배 - 지구탐사 및 우주과학업무 분배 검토 - 성층권통신(HAPS) 주파수 이용 규정 검토			
WRC-2007	- 4G 이동통신 주파수분배(450-470吨, 698-806吨, 2300-2400 3400-3600吨 대역) - 방송위성용 주파수계획 개정 - 위성망 등록절차 개정 - 성층권 통신시스템용(HAPS) 주파수분배 -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주파수공유 - 무선항행위성업무(RNSS)용 주파수 추가 분배			

WRC-2011	- 국제전파관리제도 개선 - 소출력기기의 혼신방지 대책 - CR과 SDR 주파수 및 규정 검토 - 위성망 사전공표, 통고, 등록절차 등의 개선(영구의제) - 275~3000cm 대역 주파수분배 검토 - 1525~1559mm와 1626.5~1660.5mm대의 기존 이동위성업무를 유지하면서 항공이동 위성(R)업무 주파수 확보 및 보호 방안 검토 - 1지역의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806~862mm대 이동업무 주파수분배 검토 - 1지역의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806~862mm대 이동업무 주파수분배 검토 - 정지위성과 비정지위성시스템간 공유연구 - HF대 방송계획조정과정을 통한 잠정보호비 검토 - 81~86cm 및 92~100cm대의 고정업무 관련규정 검토 - 차세대 전파천문업무를 위한 요건 검토 - 지상무선멀티미디어응용서비스 요건 검토 - 지상무선멀티미디어응용서비스 요건 검토 - 지상무선멀티미디어응용서비스 요건 검토 - 1,3지역의 21cm 고정위성업무(비정지궤도위성 피더링크 지구대수주) 이용검토 - 전자뉴스수집(ENG) 시스템 공통 주파수 발굴 - 1,3지역의 21cm BSS 주파수 계획 (2007.4.1일부터 사용 가능) - 디지털 융합서비스 등의 유연한 관리를 위해 국제 전파관리제도 개선방안 검토 - ISM 대역(3지역 900mm등)의 세계적 공동 분배 검토 - 급증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스펙트럼 요구 사항 검토 - GMDSS 도입으로 사용하지 않는 해상조난통신용 500mm 주파수의 아마추어 이용방안 검토
WRC-2015 (잠정의제)	- 무인항공기 운용 지원을 위한 무선표정업무 추가 주파수 검토 - 5091~5150₩ 고정위성업무(비정지궤도 이동위성업무 피더링크) 이용 검토

2. 위성궤도 등록·할당

가. 위성망 국제등록의 개요

위성통신 및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위성궤도 및 주파수자원을 우주전파자원이라 한다. 위성주파수의 경우 위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나 국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ITU에 신청을 하고 심사나 위성망 조정(인접위성망과의 전파간섭을 배제) 등의 절차를 거쳐 국제주파수등록원부(MIFR)에 등재되면 신청한 국가가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위성 주파수 및 궤도 등의 위성전파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세계 각국은 위성 전파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국

내위성 및 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위성망 국제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Paper Satellite⁴⁸⁾는 규제하되 위성 망 국제등록 절차는 간소화하고자 WRC-97에서 위성망 등록에 관한 행정적 의무이행절차(Administrative Due Diligence)를 도입하여 위성망을 계획중인 모든 국가에게 위성제작 및 발사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등록 취소하기로 하는 등 절차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위성주도국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은 자국의 위성기술과 주파수자원 활용계획에 유리하도록 위성 등록규정과 위성전파 공유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규 위성망 및 지구국의 국제등록과 국가 간 위성망 조정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국내 위성 및 방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통신해양기상위성의 발사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성망 조정 상대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ITU 등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나. 전파법 규정에 따른 위성궤도 등의 국제등록 신청

위성망국제등록은 국가만이 할 수 있으므로 위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위성망국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제3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요청해야 하며, 위성망국제등록 요청서와 ITU RR에서 정한 서류와 위성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국제등록신청에 앞서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할당·지정의 가능 여부, 위성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요청자의 위성망 혼신조정능력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ITU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이때 등록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6-2> 위성궤도 등록·할당 관련 주요규정

규정	주요내용
국제전파규칙(RR)	o 위성망 조정 절차(제9조)
전파법	o 전파자원의 확보(제5조 제1항제3~4호) o 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확보(제38조) o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제39조제1항)

⁴⁸⁾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성망

	 이 위성망 국제등록 비용 부담(제39조제3항) 이 위성망 혼신 조정(제40조) 이 위성궤도 등의 할당 또는 지정(제41조) 이 우주국(무선국) 개설허가, 검사, 혼신 등의 방지, 통신보 안 준수 등(제19조~제33조) 이 위성주파수 전파사용료 납부(제67조)
전파법시행령	이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제63조제1항)이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부담(제64조)이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면제(제64조제2항)
전파법시행규정	o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요청서(제18조)

다. 위성궤도 등의 국제등록(ITU)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 신청을 받은 ITU는 등록 신청을 검토하여 주파수의 혼신 가능성이 없고 궤도가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대상 우주국이 사용할 궤도와주파수를 등록하게 된다. 위성궤도 등은 해당 국제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하거나 지정하게 된다.

3. 주파수 회수·재배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계획수립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신규 서비스 또 는 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회수 또는 재배치 요건 적용여부, 손실보상금 재원확보, 공고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다.

가. 고려사항

주파수 회수·재배치는 신규 서비스 또는 기술 등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위하여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주파수 이용현황, 해당 대역의 국내외 이용 동향, 주파수 이용실적 현황, 시설자등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후 최종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되는데, 이 때 해당 요건과 손실보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수·재배치 세부 유형을 구분하게된다. 예를 들어 주파수분배 변경의 경우에는 국제분배 변경, 시설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실보상 절차와 징수금의 징수 절차가 필요 없으나, 국내 주파수분배

변경, 주파수 이용실적 저조 및 대역정비 등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및 징수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나. 주파수 회수 · 재배치 요건

(1)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해당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 등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위의 기준을 가지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파수 이용 실적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때 사업용, 비사업용, 공공용 등 주파수 이용 유형별로 주파 수 이용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표 6-3> 주파수 이용실적 판단기준

판단기준		사업용		비사업용			<u> </u>		
선언기단	계량	비계량	가중	계량	비계량	가중	계량	비계량	가중
주파수 이용현황	$\sqrt{}$		•						
주파수 수요전망	$\sqrt{}$		•				$\sqrt{}$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			
공익적 필요성	$\sqrt{}$	$\sqrt{}$		$\sqrt{}$			$\sqrt{}$		•

^{※ ◉}는 판단기준 고려사항 중 다른 항목보다 더 많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

(2) 주파수 대역정비 요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동일한 용도 내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을 위하여 여유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등으로 점유주파수대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혼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주파수 이용효율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역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주파수 대역정비는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된 주파수 대역을 통합, 분할,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례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다. 주파수 회수 · 재배치의 실시

(1) 회수·재배치의 공고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공고 내용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그 밖에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공고시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유형별 세부절차

회수 · 재배치 유형에 따른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6-4> 회수·재배치 유형에 따른 세부 절차

구 분		회수ㆍ재배치 절차
	(1.1)국내분배 변경	정책수립→심의→청문→공고→손실보상→시행→징수
주파수	(1.2)시설자등 요청	정책수립→심의→청문→공고→시행
분배 변경 (1)	(1.3)국제분배 수용	정책수립→심의→청문→공고→시행
	(1.4)2순위 업무	정책수립→심의→청문→공고→시행
이용실적저조 (2)	(2.1)손실보상 필요	이용현황→이용실적→정책수립→심의→청문→공고 →손실보상→시행→징수
	(2.2)2순위 업무	정책수립→심의→청문→공고→시행
주파수 대역 정비 (3)	(3.1)손실보상 필요	이용현황→정비요건→정책수립→심의→청문→공고 →손실보상→시행→징수
	(3.2)2순위 업무	정책수립→심의→청문→공고→시행

(3) 손실보상 산정 및 지급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업무는 보상금 신청(이의신청 포함) 및 결과 수용과 보

상금 결정·통지, 이행여부 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파수 재배치의 경우에는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보상하게 된다. 이 때 주파수회수의 경우와 주파수재배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시설자등은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손실의 내용, 손실금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하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새로 주파수 할당,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 즉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직접 손실을 보상하게 할 수있다.

시설자등은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그 신청을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회수·재배치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한다.

<표 6-5> 회수·재배치 관련 주요 규정

구분	주요 규정	비고
전파법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 전파자원의 공 평하고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파수분배 의 변경,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등을 시행	필요시 주파수 이 용 현황 조사·확 인 가능
	제6조의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 주파수 분배가 변경된 경우,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 가 있는 경우에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시행 가능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규정
	제7조 (손실보상 등) -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를 할 때에는 해당 시설자등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신규 이용자가 시 설자등에 직접 보 상 가능
	제7조의2 (이의신청 등) -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 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임
	제59조의 2 (전파정책심의위원회) -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회수·재배치 기 준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심의
	제77조 (청문) -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처분을 시	행정처분 등에 관

	행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한 일반적 절차
	제4조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확인) - 전파자원 이용효율 개선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파수 이용 현황 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음	매년 실시하여야 함
	제5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목적, 대상, 시행시기, 손 실보상금 산정기준 등 공고하여야 함	공고에 대한 의견 서 제출 가능에 대한 통지 필요
	제6조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 주파수 이용 실적은 해당 주파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기술발 전 추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야 함
전파법 시행령	제7조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 신규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여유 주파수 확보, 혼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음	동일한 용도 내 에서 대역정비
	제8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 손 실보상금 산정기준, 신청 및 결정·통지,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함	신청, 결정·통지, 지급 등에 관한 기간을 규정함
	제9조 (징수금의 징수) - 손실보상한 금액을 징수하 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신규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서면으로 통지
	제10조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금의 산정기준) - 주파 수할당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잔여 이용기간의 예상매출액 기준으 로 부과한 납부금
전파법 시행규정	제3조 (손실보상청구서) -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손 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음	전자문서 청구서 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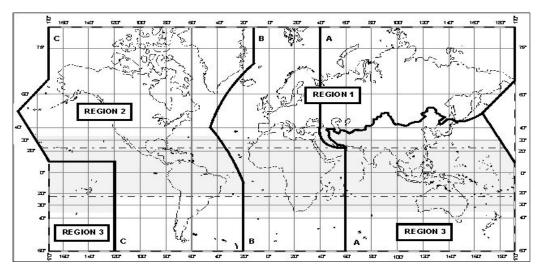
제2절 전파자원의 배분

1. 주파수 분배

주파수는 분배·할당·지정의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배분된다. 주파수분배는 주파수 대역별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고, 주파수할당은 대역별로 이용주체를 결정하고, 주파수지정은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두가 동등한 조건하에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ITU에서는 국제 주파수배분 시 주파수 또는 주파수대를 특정 업무 또는 지역별로 분배하고 있는데, 이를 "주파수분배 (Frequency Allocation)"라 한다.

가. 국제분배와 국내분배

주파수의 국제분배는 3~4년마다 개최되는 ITU의 WRC에서 수행한다. WRC에서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파수 대역별로 국제적 용도(고정, 방송, 이동 등 41개로 구분)를 권고하고, 전 세계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배분한다. 국제적 수준의 주파수분배는 일정 주파수대역을 특정서비스에 분배하는 업무분배와 지역(Region)별 분배를 의미하는 지역분배로 구분된다. 업무분배란, 어느 일정한 주파수대를 이동·고정 등 무선통신업무·우주무선통신업무·전파천문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지칭하며, 지역분배는 전파규칙에 따라 세계를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업무분배된 것을 각 지역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분배와 지역분배는 보통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림 6-2> 전파규칙에 따른 3개 지역 구분 현황

주파수의 국내분배는 국제주파수분배표를 전제로 국내 업무용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으로 국제전파규칙(RR)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특정 주파수 대역별로 국제분배 범위 내에서 통신, 방송, 공공 등으로 목적별, 기능별, 기관별의 구체적인 세부용도를 정하게 된다. 현행 전파법령상 주파수분배에 대한 별도의절차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6-6> 주파수 분배 관련 주요규정

규정	주요내용
국제전파규칙(RR)	o 용어 및 정의(제1조) o 주파수분배(제5조)

전파법	o 주파수분배의 정의(제2조제2호) o 전파진흥기본계획 중 주파수분배계획의 변경(제8조제2항) o 주파수분배(제9조)
고시	o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5호)

나. 주파수분배 절차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 분배에 따라 국내 주파수 분배계획의 수립·심의·확정 및 고시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고시해야 한다.

<표 6-7> 주파수 분배표 예시 (285-325㎞)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1 지 역	제 2 지 역	제 3 지 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283.5-315				
항공무선항행 해상무선항행(라디 오비이콘) 5.73 5.72 5.74	285-315 항공무선항행 해상무선항행 (라디오비이콘) 5.73		285-325 항공무선항행 해상무선항행 (라디오바이폰5.73)	무선표지 및 위치 측정용 K5 항공·해상용 CPS K69A
315-325 항공무선항행 해상무선항행 (라디오비이 妻 5.73 5.72 5.75	315-325 해상무선항행(라디 오비이콘) 5.73 항공무선항행	315-325 항공무선항행 해상무선항행 (라디오 비이콘) 5.73		

다. 주파수 용도의 지정

주파수 용도는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를 지칭하며 국제 분배를 근간으로 정하고, 국내분배에 의해 세부용도를 지정하게 된다. ITU에서는 국제 분배를 41개 용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기본으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세부용 도를 정한다.

<표 6-8> 주파수 분배에 따른 세부 용도

국제분배	국내분배	세부용도
고정업무	고정업무	경비용, 공공용, 무선데이터 전송용, 무선CATV 전송용,

		국간중계용(M/W), 광대역 가입자회선(BWLL)용 등
이동업무	이동업무	산업통신용, 소방용, 응급의료 및 교통사고처리용, 재난 구조용, 연안선박자동전화용, 해상이동업무용 등
육상이동업무	육상이동업무	개인휴대전화(PCS)용, WiBro용, 이동전화용, 이동통신 (IMT-2000)용, TRS용, 무선데이터용, 무선호출용 등
육상이동위성업무	육상이동위성업무	GMPCS(글로벌스타 위성휴대전화용 등), 인마세트 이동 지구국용,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전기통신역무용 등
항공이동업무	항공이동업무	산림보호용, 재난구조용, 항공무선표지, 항공기 안전운 항을 위한 시설의 유지보 수용 등
무선측위업무	무선측위업무 무선방향탐지업무 무선조정업무	LBS, 무선표지 및 위치측정용, 위치측정 및 측량업무용, 항공기용 기상레이더, 항공기용 전파고도계, 선박레이 더 및 레이더비이콘용
방송업무	방송업무	TV방송, FM방송 등
방송위성업무	방송위성업무	무궁화위성, 방송중계, CATV전송, DTV(음성) 등
전파천문업무	전파천문업무	-

2. 주파수 할당

주파수할당 계획수립은 기간통신,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주파수할당의 사전단계로 사업허가의 동시진행 여부, 할당방식 유형 및 할당공고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다. 주파수 할당 관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6-9> 주파수 할당 관련 주요규정

구분	주요 규정	비고
전파법	제10조 (주파수할당) - 기간통신,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이용권 부여,할당신청 필요, 조건부과 가능 및 심의	사업권 부여와 동시/ 분리 진행 가능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피수할당) - 경제적 및 기술적 가치,경 쟁적 수요 및 전파진흥 등을 위한 경우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대기를 받고 할당(심사 필요) 가능, 할당시 보증금 부과 가능	할당대가는 정보통신 진흥기금 편입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 대가할당 이외의 경우 는 이용 효율성, 재정적 및 기술적 능력 심사하여 할당	심사기준, 방법 등 절차 필요

	레12구 (조립스참다이 커커가이) ㅁ끄그 레셔 가신되네	ス립스장lrl 기기기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 무선국 개설,사업허가 등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할당 받을 수 없음	주파수할당 심사시 확인 필요
	제14조 (주파수이용권) -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제1 좌 받은 자가 가지는 배타적 이용권	양도・임대 허용 등
	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기간) - 할당하는 주파수 이용기간 부여	대가할당과 심사할당 각각 20년, 10년 이내
	제15조의2 (주파수할당의 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 사업허가 취소, 조건 위반 등의 경우 할당 취소 가능	거짓·부정 이외의 경 우 시정명령(1회) 가능
	제16조 (재할당) - 이용기간 종료시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 가능하고,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1년 전에 통지해야 함	이해관계자 의견 수 럼 및 할당규정 준용
	제17조 (전환) - 심사할당 주파수의 대가할당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대가 부과 가능	주과수할당 등 규정 준용
	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함	대가할당 주파수 한정
	제11조 (주파수할당의 공고) - 할당대상, 방법 및 시기,대가 산출기준, 이용기간, 용도 등 포함	주파수할당 일 1월 전까지 시행
	제12조 (주파수할당 및 재할당 신청) - 주파수할당이나 재 할당을 신청하는 서류	전자서류 포함
	제13조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해당하는 경우, 주파수 총량에 관한 조건 부과	신규할당 및 기존 할 당 양을 고려
	제14조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예상 및 실제매출액을 기초로 부과(별표3), 할당대가 납부금 및 기한 등을 서면 통지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
전파법 시행령	제15조 (보증금) - 할당대가 중 예상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 의미	현금 또는 보증서 납부 가능
	제18조 (재할당) -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이용기간 만 료 3개월 전에 신청	재할당 대가 산정· 징수 제14조 준용
	제19조 (전환의 절차 등) - 전환신청이 필요하고,신청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내용을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고, 공지해야 함	전환 통지 이후, 철 회 가능(3개월 이내)
	제20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 관리대장에 적어야할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필요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 필요
7] -l ul	제3조(주파수할당 및 재할당 신청서) - 영 제 12조제 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재할당)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음	전자문서 포함
전파법 시행규정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 영 제 19조제 항에 따른 주파수할당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는 별제 제5호서식과 같음	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 포함

제5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교부 신청서) -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 ⓒ 서식과 같으며,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용권관리대장 열람신청 서는 별제 제7호서식과 같음	시본 교분신청서 동일

가. 주파수 할당 계획 수립

주파수 할당 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한 단계 별 고려가 필요하며, 각 결정을 위한 준비사항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10> 주파수 할당 계획 수립 절차

절차	준비사항	세부내용
사업허가 동시진행 결정	사업허가 동시 진행 시 할당에 관한 별도 의 심사절차 불필요	o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을 고려한 허용 가능한 사업자 수 결정 o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한 허용 가 능한 사업자 수 결정(사업허가 담당) o 주파수 이용현황 및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상 및 참여범위 결정
주파수 할당방식 결정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적용여부를 고 려하여 할당방식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	o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경쟁적 수요, 전 파진흥 등을 고려 할당방식 결정 o 대가할당 적용시 할당대가 산정 및 심사할 당의 심사항목 적용 필요 o 사업허가 없이 주파수 할당시 별도 심사항 목을 고려한 기준·절차 필요
주파수할당 공고사항 결정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용도 및 기 술방식은 사전에 확 정하는 것이 필요	o 주파수 할당대상 및 할당대가 산정과 관련된 요소는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 o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주파수 이용기간, 용도 및 기술방식 등 정책결정 필요 o 주파수할당 및 재할당 등 참여범위 제한 및 새로운 조건 등 정책결정 필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대가에 의한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예상 매출액 추정을 위하 여 시장전망이 필요	o 대가에 의한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산정기 준에 따라 예상매출액 추정·전망 필요 o 신규서비스 경우 서비스 개념 정의, 설문조 사 및 분석 등 일정기간 소요 o 해당 시장에 대하여 낙관적 또는 비관적 경 우로 구분하여 전망함

나. 주파수 할당 유형 별 세부 절차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할당과 사업허가 동시 진행여부, 할당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허가가 필요하고 심사할당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허가가 필요하고 대가할당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허가 없이 심사할당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허가 없이 대가할당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등이 그것다.

<표 6-11> 주파수 할당 유형

구 분				
유형	사업 허가	할당 유형	주요내용 및 절차	비고
유형 1	0	심사 할당	 o 사업허가와 주파수할당 절차가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기적 관계로 진행 o 사업허가 계획 수립 → 주파수할당 공고 → 사업허가 신청 → 할당신청 및 사업허가 심사 → 사업허가 → 주파수할당 → 사업개시 	이 시업용 경우 심사 할당 가능성 낮음이 전파법 및 시업법 에 의한 할당
유형 2	0	대가 할당	 o 사업허가와 주파수할당이 유기적 관계로 진행되며, 대가할당의 경우 할당대가 확정 필요 o 사업허가 계획 수립 →주파수할당 공고 →사업허가 신청 → 할당신청(보증금) 및 사업허가심사(할당대가 심사항목 포함) → 사업허가 →주파수할당(대가납부 포함) → 사업개시 	 이 일반적인 통신시업 주파수할당과 시업 허가 시 진행 절차 이 전파법 및 사업법 에 의한 할당 ※'00년 이후 IMT -2000 등 주파수 할 당시 적용
유형 3	×	심사 할당	 0 사업허가와 별도로 주파수할당이 진행되는 경우로 할당신청에 대한 심사절차 필요 0 주파수할당 계획 수립(심사할당 확정) →주 파수할당 공고 → 할당신청 → 할당심사 → 주파수할당 → 사업개시 	 주파수 이용 효율성, 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을 심사하여 할당 전파법에 의한 할당
유형 4	×	대가 할당	 ○ 사업허가와 별도로 주파수할당이 진행되는 경우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및 할당신청에 대한 심사절차 필요 ○ 주파수할당 계획 수립(대가할당 확정) →주 파수할당 공고 → 할당신청(보증금 포함) → 할당심사(심사할당 심사항목 포함) →주파수 할당(대가납부 포함) → 사업개시 	o 대가할당의 경우도 심사할당의 심사항목이 적용o 전파법에 의한 할당

대가할당은 주파수할당을 위해 공고된 주파수가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고 주파수 할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파수할당대가는 예상과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다. 대가할당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주파수할당을 받고 3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0년 범위 내에서 정해 고시된다.

한편 주파수할당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대가할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할당을 실시하는데,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할 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를 할당하다. 심사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정해 고시된다.

다. 주파수 할당 이후 절차

주파수할당 이후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는 경우,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로 재할당해주는 경우, 심사할당을 대가할당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유지 및 관리하는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등이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1) 주파수할당 취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주파수를 할당할 때에 정하여진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첫 번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주파수할당을 취소하려면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 받은 경우
주파수할당	•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사업하가 취소, 등록 취소된 경우
취소 요건 발생	• 할당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 자원의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한 조건 미이행의 경우

₽

시정명령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외의 취소 요건에 대해서는 회에 한하여 시정명령



주파수할당 취소 ㆍ 시정명령 불이행시 주파수할당 취소

<그림 6-3> 주파수 할당 취소 절차

(2) 주파수 재할당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단,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주파수를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가할당 요건에 해당하는 재할당의 경우에는 대가할당 규정을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할당을 준용한다.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는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을 준용한다.

재할당 계획 수립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조건부과 등 재할 당 계획 수립이 필요 신규 조건은 1년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이용기간 만료 2년 전에 검토 필요 주파수를 재할당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신규 조건 부과 (1년 이전)	 공공목적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다른 용도로 분배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대가할당 적용등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 미리 통지 필요 대가할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할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 등에 대한 통지 필요
재할당 신청 (3개월 이전)	· 주파수를 재할당 받으려면 주파수 이용자는 이용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하여야 하고,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는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을 준용
재할당	· 해당 주파수를 재할당하고,재할당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가 가 최종적으로 확정됨

<그림 6-4> 주파수 재할당 절차

(3) 주파수 전환

심사할당 된 주파수가 대가할당의 요건(제11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대가할당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주파수 전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대상의 여부, 전환의 시기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하며, 주파수할당 전환절차는 관련 주파수할당(전파법 시행령 제12조2항)을 준용하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는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을 준용한다.

심사할당의 대가할당적용요건 확인	· 해당 심사할당 주파수의 대가할당 전환 적용요건 확인 · 주파수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마련
주파수 전환 추진	· 해당 심사할당의 주파수의 대가할당 전환 추진 ※ 주파수 이용권 확대 및 전환에 따른 적정 이용대가 산정시 주파수 전환을 하고자 하는 유인 있음
전환신청	· 해당 심사할당 주파수 이용자는 법인의 정관,주파수이용계 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전환신청을 하여야 함
전환 결정 (6개월 이내)	· 전한신청을 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전환신청 철회 (3개월)	·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전환신청 철회 가능
주파수 전환	 전환신청 철회가 없는 경우에 주파수 전환에 대한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주파수할당 전환절차는 관련 주파수할당 및 주파수할당대가산정 및 징수 등의 절차를 준용

<그림 6-5> 주파수 전환 절차

(4)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다.

3. 주파수 지정

허가나 신고 대상인 무선국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파수를 지정받아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별도의 할당절차 없이 주파수 지정을 통해 방송국 개설허가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행 전파법에는 아래 표에서처럼 개념만 포함하고 있는 정도이며 주파수 지정기준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무를 위해 '전파지정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무선통신 업무 및 용도에 따라 분배·할당한주파수에 대해 무선국 개설허가 시의 세부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시설자, 사용지역 등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표 6-12> 주파수 지정 관련 주요규정

규정	주요내용
전파법	o 제2조(정의) o 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가. 주파수 지정 시의 심사기준

전파지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지정 시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주파수를 지정하게 된다.

<표 6-13> 주파수 지정 시의 심사 기준

심사기준		심사내용
일반기준		무선국의 통신사항 및 개설목적이 전파지정기준의 대상 업무에 부합하는가? ※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 및 분류는 전파법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제26~27조를 따름
특별기준	실험국	실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 발전, 및 과학 지식 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가?
	실용화 시험국	당해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한 것인가?

나. 주파수 지정 내용 및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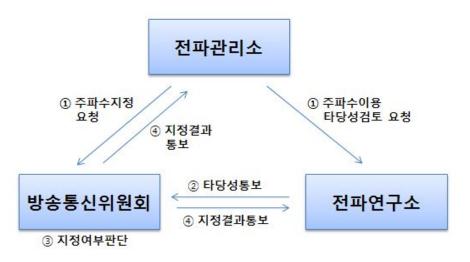
위의 심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기준에 맞게 무선국 식별을 위한 내용들(호출명칭, 호출부호, 식별부호)과 주파수 관련 내용들(전파형식, 점유대역폭, 주파수, 공중선전력)을 지정해 준다.

<표 6-14> 주파수 지정 내용 및 원칙

내용	무선국식별요소	주파수요소	
항목	호출명칭, 호출부호, 식별부호	전파형식, 점유대역폭, 주파수, 공중선전력	
기준	전파법령	전파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술기준	
원칙	o 2주파로 구성된 주파수 쌍(송신/수신)은 타 2주파 쌍 또는 1주파단신 주파수 와 혼용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혼용하여 지정한 무선국에서 대해서는 통신 망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허가기관에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함 o 다수의 시설자가 동일 주파수를 공유하는 경우, 상호간섭을 줄일 수 있도록 높은 지역에 기지국 및 이동중계국 설치를 제한함 o 전파지정기준 용도 중 사용자가 다수의 시설자로 되어있는 경우, 동일업무 또는 유사업무로부터 혼신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주파수를 지정		
	o 무선국 기능상 그 사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하지 않음 o 무선국 운용상 그 무선국에 사용하는 주파수마다 식별할 필요가 있을 시, 각 주파수에 별개의 호출부호를 지정할 수 있음	o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를 지정 (단, 그룹 통화 등 업무 특성 상 다수의 채널이 필 요한 경우에는 통화량을 산출하여 지정) o 통신망 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상호간 섭 등) 내의 최소한의 공중선전력을 지정	

다. 주파수 지정 절차

주파수 지정은 다음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관리소, 전파연구소 간에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6-6> 주파수 지정 절차

4. 주파수 양도·임대

주파수거래제도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2차 시장'을 통해 기존에 배분(분배 및 할당)된 주파수면허 또는 주파수이용권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 및 임대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는 일정 기간 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완전히 이전(transfer)하는 것을 말하며, 임대는 일정 기간 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lease)하고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환수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주파수 양도·임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6-15> 주파수 양도·임대 관련 주요규정

규정	주요내용
전파법	o 제14조 (주파수이용권)
전파법시행령	o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o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의 승인신청 등)
전파법시행규정	o 제4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신청서 등)
기타	o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o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o 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o 방송통신위원회고시(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가. 주파수 이용권

주파수이용권은 대가를 납부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가 배타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

<표 6-16> 주파수 이용권의 속성

항목	내용
주체	대가를 납부하고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
조건	기간통신사업을 제공하는데 직접 이용
행사기간	20년 이내
내용	할당시 결정된 용도 기술방식을 준수하는 기간통신사업의 영위
범위	타인의 방해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이용 가능(독점권 부여)
파생권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양도·임대 가능
의무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납부

나. 주파수 양도 · 임대 절차

주파수 양도 및 임대의 대상은 대가할당 받은 주파수(3G, WiBro, 위성DMB, LBS 등)로 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이거나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은 경우에 한하는 것을 해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수·임차 승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통보해야 하며, 수수료는 없다.

제3절 전파자원의 이용

1. 무선국 허가

고정국, 기지국 등 일반무선국의 허가는 무선국 시설자의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담당하며, 허가 관련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6-17> 무선국 허가 관련 주요규정

규정	주요내용
전파법	o 무선국 개설(제19조) o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제20조) o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신청(제21조) o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제22조) o 허가의 승계(제23조) o 변경허가(제26조)
전파법시행령	o 신고대상 무선국의 종류(제21조) o 허가의제 무선국(제22조) o 미신고 무선국(제24조) o 사용승인 무선국(제48조) o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제26~27조) o 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제29조) o 허가신청의 단위 및 허가신청(제30~31조) o 허가증의 기재사항(제33조) o 고시대상 무선국(제34조) o 무선국의 고시사항(제35조) o 무선국의 고시사항(제35조) o 무선국 개설허가 ·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제36~37조) o 재허가 및 재승인(제38~39조) o 해가승계의 인가 및 신고(제40~41조) o 변경허가(제51조)
전파법시행규정	o 무선국개설신고서 등(제7조) o 허가신청서 등(제8조) o 허가증(제9조) o 재허가신청(제10조) o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제15조)

가. 허가의 개요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27조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별로 해야한다. 송신설비란,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전파를 보내는 설비를 지칭하므로, 신호를 발생하고 변조·증폭하는 송신설비와 이를 공간에 방사하는 공중선을 포함하여 무선국의 허가단위로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설치장소란, 공간에 전파에너지를 방사하는 시설을 지칭하므로, 공중선이 위치한 장소를 무선국의 허가신청 장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단, 휴대형 무선설비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설비가 아닌 송신장치별로 해야 한다.

몇 가지 특별한 허가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집중통신방식 및 송신설비 기 능상에 직결되어 있는 수신설비는 당해 송신설비와 함께 허가해야 한다. 방송국의 허가 신청은 송신장치의 설치장소별 외에 중파방송, 단파방송, 초단파방송,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 제외) 허가신청을 하며, 단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를 신청한다. 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한다.

구 분 근거 대상 무선국 및 무선설비 무선국 및 설비 종류 육상국, 기지국, 방송국, 법 §19① 준공검사 필요 선박국, 항공국 등 개설하는 모든 허 가 30w 미만 어선의 선박국 무선국(원칙) 준공검사 생략 아마추어국, 휴대용 영 §19 무선기기 등 설치공사가 불필요 무선국, 휴대용 간이무선국, IMT-2000, 법 §19① 신 고 심사할당 무선국 영 §28 WiBro, DMB 무 선 전기통신사업자와 가입자간 이동전화, PCS, TRS, DMB 법 §19② 허가 국 의제 등의 휴대용 단말기 영 §29 이용계약체결 무선국 사용 코인보 외교절경 국제행사 법 §19⑤ 국방용ㆍ 외교용 무선국 승인 영 §31 수행등을위한무선국 교통카드, 자동차시동장치 방통위가 용도 · 주파수 · 출력 등을 법 §19④ 비신고 무선랜, 무선마이크, GPS, 정하여 고시한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영 §31 이동체식별장치, 호출장치

<표 6-18> 무선국 허가 개요도

대부분의 무선국 허가 기간은 5년이나,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1년 또는 3년인 경우도 있다.

<표 6-19> 무선국 국종별 허가 기간

대상국종	유효기간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소출력방송국(공중선전력 1와트 이하)	1년
이동국, 육상국, 육상이동국, 기지국, 이동중계국, 선박국(의무선 박국은 제외), 선상통신국, 무선표지국, 무선측위국, 우주국, 일 반지구국, 해안지구국, 항공지구국, 육상지구국, 이동지구국, 기	5년

지지구국, 육상이동지구국, 아마추어국, 간이무선국, 항공국	
그 밖의 무선국(고정국, 방송국 등)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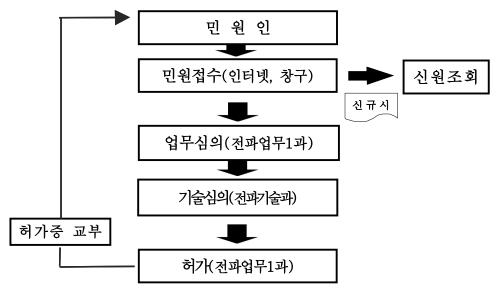
또한 일부 무선국의 경우 준공검사를 생략해주거나 허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 특 례를 제공한다.

<표 6-20> 무선국 국종별 허가의 특례

대상국종	내용
 30W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아마추어국(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다음의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준공검사생략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인 무선국 ●주파수재배치가 된 무선국	수수료면제

나. 신규허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신청인이 전파법에 따라 허가신청(신고신청)을 한 경우, 전파관리소는 심사기준에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적법한 경우 허가증(신고필증)을 교부한다. 허가증(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허가증(신고필증)에 기재된 준공기한까지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무선국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림 6-7> 신규허가 처리 절차

무선국의 개설은 고정국, 기지국 등과 같이 허가신청, 적부심사, 허가증교부, 준공검사, 무선국운용의 모든 처리절차를 거치는 일반적인 허가절차에 의한 경우와 휴대용 무선기기 같은 간이무선국이나 30W 이하의 어선의 선박국등과 같이 준공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휴대전화용무선국(PCS단말기)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무선국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전파천문업무용 수신전용 무선기기와 같이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발사하는 전파가 극히 미약한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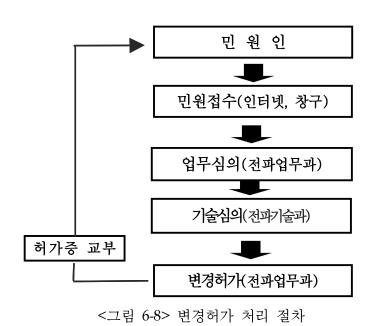
<표 6-21> 무선국 개설 유형별 절차

구분	처리절차	대상 무선국	규정
일반허가	허가신청-심사-허가 무 선국설치공사-준공신고 준공검사	고정국, 방송국, 기지국, 해안국 등	§19①
준공검사 생략	허가신청-적부심사-허가	30W 이하의 어선의 무선국, 간이무선국(휴대형), 아마추어국(형식검정·형식등록 팔한 기기), 무선표정이동국용무선설비중 차량설치또는 휴대형 무선기기	영 §48
허가의제	전기통신시업자와 계약	이동전화용무선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무선 국, 발신전용휴대전화용무선국,개인휴대전화용 무선국, 무선데이터통신용무선국,위성휴대통신 용무선국, 가입자회선용가입자무선국 등 전기 통신사업자용 역무 이용목적 단말기	§19 ⁽²⁾
신고	무선국 개설신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행안정용 수신전용 무선기기, 우주무선통신업무 또는 전파천문업	§19① 단서

		무를 하는 수신전용무선기기, 특정소출력무선국 형 식검정 · 형식등록 필한 기기)중 이동체식별 장치	
비신고	절차 필요없음		§19 ④
사용승인		국방·외교용	§19⑤
재허가	준공검사 생략	허가대상 무선국	영 §38
변경허가	일반절차와 동일	허가대상 무선국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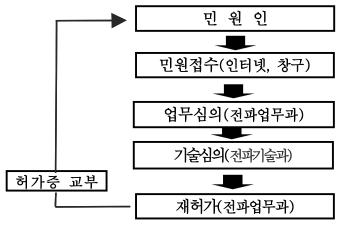
다. 변경허가

전파법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변경허가란 허가받은 무선국 중 허가증에 기재된 무선국 시설물이 변경되어 행정기관에 변경된 사항을 처리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허가 및 신고로 나눌 수 있다.



라. 재허가

허가를 받은 무선국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파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위하여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즉, 무선국의 허가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유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기존의 허가내용을 존속시키고 그대로 새로운 허가로 이행시키는 행정처분을 재허가라 한다. 허가된 무선국이 재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신규허가와 달리 간략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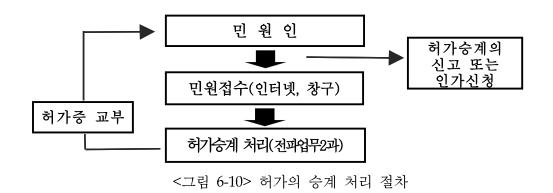


<그림 6-9> 재허가 처리 절차

일반적으로 재허가 신청은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 2~4개월 이내의 기간에 방송통신 위원회에 신청해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재허가를 하게 된다. 단, 허가 신청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내용49)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마. 허가의 승계

무선국의 승계란 허가받은 무선국 시설자의 변경을 의미하는데, 허가를 받아 승계할 수 있는 무선국(고정국, 기지국, 육상이동국)과 신고하고 승계할 수 있는 무선국(선박국, 항공기국,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간이무선국))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하다. 인가 또는 신고로 허가의 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인가 및 신고로 허가의 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무선국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⁴⁹⁾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공중선전력, 운용허용시간,무 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 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바. 허가의 예외

모든 무선국은 개설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대가할당을 받은 사업자의 무선국에 한해 신고를 통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의 경우, 신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은 신고 없이도 개설할 수 있도록50) 하고 있다.

<표 6-22> 허가 예외의 종류 및 무선국 개설 절차

구분	대상	무선국 개설·운용 등 세부절차	규정
허가	일반 무선국	허가신청→허가심사→허가(허기증 교부 → 무선국 설치공사 · 준공 신고 · 준공 검 사→검사필증 교부→운용→변경허가 · 검사→혼신 등 방지→정기검사 · 째허가	무선국 개설 기본 원칙
허가의제	할당 주파수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	전기통신역무 제공자와 이용계약 체결(=허가)→계약체결 통보→운용 ※허가 유효기간, 검사, 변경허가, 무선국 폐지 등 적용받지 않음	통보는 사용 료 부과 및 관리 목적
준공 검사 생략	30W 이하 어선의 선박국 등	허가신청→적부심사→심사	-
λ] ¬	미약 및 설치공사 필요 없는 무선국, 전파천문의 수신전용 무선국	신고→심의→개설신고(필증 교부)→ 무선국 구입 또는 설치→운용 신고 한 범위안)→혼신 등 방지→재신고 ※개설신고 유효기간,검사,변경신 고의 적용여부 규정 없음	무선국 유효기 간 준용 규정 부재로 재신고 절차 미비
신고	주파수 할당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무선국	신고→공용화 등 심의─캐설신고 열증 교부)→무선국 설치공사→준공신고→ 준공검사→검사필증 교부─윤용─변경 신고ㆍ검사→전파혼신 감시 ·조정 ─정 기검사→재신고	무선국 유효기 간 준용 규정 부재로 재신고 절차 미비
신고예외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무선국 구입 또는 설치→운용	사실상 허가예 외 간주 가능
사용승인	군 등 무선국	무선국 개설 - 운용 - 재승인(유효기간10년 이내	통보절차 없음

⁵⁰⁾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해당 무선기기로부터 3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허용치가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기기),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무선기기, 이동체 식별용 무선 기기 등), RFID/USN용 무선기기, 코드 없는 전화기, UWB 및 용도 미 지정 무선기기,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용 무선기기, 물체감시센서용 무선기기,

2. 방송국 허가

방송국은 공중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방송국 허가 관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6-23> 방송국 허가 관련 주요규정

규정	주요내용
전파법	o 방송국의 정의(제2조제9호) o 방송국의 개설허가(제34조) o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제35조) o 방송수신의 보호(제40조제2항) o 방송표준방식(제41조제3항) o 전파사용료 납부(제67조)
전파법시행령	○ 방송국 허가신청 단위(제30조제2항) ○ 소출력방송국의 정의 및 허가유효기간(제36조제1항제3호) ○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제55조) ○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제56조) ○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제57조) ○ 방송구역(제58조) ○ 방송표수신의 보호(제59조) ○ 분쟁의 발생과 조정(제60조) ○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제61조) ○ 장애조사 등(제62조)
고시	o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고시(방통위고시 제2008-18호) o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방통위 고시 제2008-17호)

가. 허가의 심사

방송국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크게 업무부문의 심사와 기술부문의 심사로 나누어 허가 심사를 하게 된다. 먼저 업무심사에서는 방송국 허가 구비서류와 무선설비의 시설 개요서(방송국)를 심사한 후 그 내용과 의견을 전파방송관리통합시스템(RBMS) 상의 무선국허가 업무심의서에 결제 받고 기술부분에 서류일체를 송부하게 된다(단, 통합 심의시에는 통합심의 완료 후 결제를 받음). 이렇게 업무부문에서 무선국 허가신청서가 기술부분에 이송되면, 기술부문의 심사가 진행된다. 방송국 허가 시설개요서 기술심사와 공사설계서(방송국)를 심사하게 되며, 전과 같은 절차로 심사사항 및 의견을 전파방송관리통합시스템 상의 무선국허가 기술심의서에 입력하여 결제를 받은 후 업무부분에 다시

송부한다. 방송국 허가 시에는 방송구역 지정, 혼신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다.

나. 소출력 방송국의 허가

소출력 방송국이란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으로서 공중선전력 1와트 이하의 라디오 방송을 지칭한다. 소출력 방송국 허가 시 세부 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24> 소출력 방송국 허가 세부 사항

구분	주요내용		
주파수 (88.9~104.9㎖)	o 상시 운영 소출력방송국 : 88~92版. 단, 가용주파수가 없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전 대역(88~108版)을 사용할 수 있음 o 한시 운영 소출력방송국 : FM방송 주파수 전 대역(88~108版)을 사 용할 수 있음		
호출명칭	o 개설자, 시설(지역, 행사)명 등과 소출력방송국으로 구성		
호출부호	o 상시 운영 소출력방송국 :HLMA-LFM+전파관리소번호(1자리)+일련번호(3자리) o 한시 운영 소출력방송국 :HLMB-LFM+전파관리소번호(1자리)+일련번호(3자리)		
방송구역	o Mini-FM의 방송구역 : 주시설과 그 부속부지내 등 o 지역-FM의 방송구역 : 해당 지역의 일부		
기술적 조건	o 공중선전력 1W 이하, 안테나 이득은 10dB 이하, 안테나의 높이는 지 면기준 30m 이하. 다만, 부득이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가 30m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송신공중선의 높이와 지향특성이 방송구역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함 o 서비스대상 지역을 엄격하게 제한. 특히, Mini-FM은 주거지역으로의 전파월경 등 불요전파 발사 억제를 위해 출력을 최소화 o 송신공중선의 편파면은 수직·수평·원형편파를 사용 가능		
무선종사자	o 원칙적으로 연주소마다 1인으로 함.		
부관사항	 ○ 기존 FM방송에 의한 혼신을 수용하며, 기존방송국에 혼신 유발시 혼신 해소후 운용 ○ 기존 FM방송에 의한 혼신을 야기해서는 아니 되며, 기존방송국으로 부터의 혼신을 용인하는 조건 ○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 및 시행하는 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사용주파수를 변경지정하거나 회수할 경우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서비스대상 지역 밖으로 전파월경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출력의 저감 등 허가기관의 명령에 충실히 따라야 함 ○ 방송국운용에 필요에 기술적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술기 준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사항	o 초단파 라디오방송국의 난청해소 및 방송프로그램 중계목적으로 사용 금지 o Mini-FM은 주파수 허용범위 내에서 1개의 시설 및 행사에 대하여 하나의 주파수만 허용. 단, 국가적 행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 는 경우 다수 주파수 허가 가능 o 송신공중선의 편파면은 수직·수평·원형편파를 사용 가능
------	--------------------------------------------------------------------------------------------------------------------------------------------------------------------------------------

3. 무선국 검사

무선국검사는 무선설비가 설치된 현장에서 송수신장치, 공중선, 급전선, 부속장치(안전시설) 등의 기술적 특성이 국제규정(ITU 전파규칙) 및 국내 전파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적합 여부와 허가 시 지정한 제반사항(주파수대역 준수,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배치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무선국검사는 무선설비의 성능품질을 확보하고, 혼신 등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확인 해소하여 불법전파로부터 다수의 전파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선국 검사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6-25> 무선국 검사 관련 주요규정

규정	주요내용		
전파법	o 준공검사(제24조제1항) o 준공검사증명서 발급(제24조제3항) o 정기검사(제24조제4항) o 정기검사의 연기 또는 면제·생략(제24조제6항) o 변경검사(제26조제2항) o 임시검사(제24조제5항)		
전파법 시행령	o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44조) o 정기검사의 시기·방법(제46조) o 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제47조) o 준공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제48조) o 변경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제51조제2항)		
전파법 시행규정	o 검사필증 및 무선국검사관증(제14조)		

무선국 검사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시설자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유 제외)이나 방송사업자(지방자치단체 소유 포함)인 무선국 (위송보조국은 제외)에 대한 검사와, 종합유선방송설비 검사 및 종합유선방송설비의 전송선로시설 적합확인을 담당한다. 한편 한국전파진흥원에서는 시설자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이거나 방송사업자인 무선국(위성방송보조국 제외)을 제외한

무선국, 즉 중앙전파관리소의 검사대상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 검사를 실시하며, 그 밖에도 중계·음악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중계·음악유선방송설비의 전송선로시설 적합확인,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를 실시한다.

가. 무선국 검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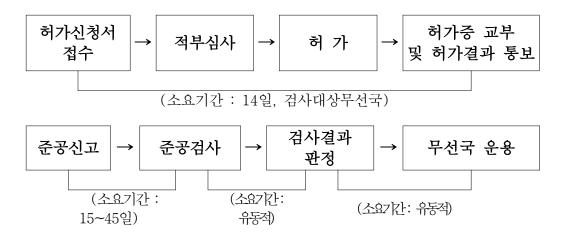
무선국 검사에는 준공검사, 정기검사, 변경검사, 임시검사가 있으면 각각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丑	6-26>	무선국	검사	.의	종류
--	----	-------	-----	----	----	----

종류	관련법규	내용
준공검사	전파법 제24조제1항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를 준공하고 최초로 무선설비 및 무선종사자 배치에 대하여 확인
정기검사	전파법 제24조제4항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 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변경검사	전파법 제26조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임시검사	전파법 제24조제5항	전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로서 정기·준공·변경검사 이외의 검사

(1)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를 준공하였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시설자는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내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앙전파관리소장(한국전파진흥원장)은 시설자로부터 합당한 사유로 준공기한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총 연장기한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준공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시설자는 준공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준공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준공검사에는 점유주파수대폭, 불요발사 허용치, 주파수 허용편차, 공중선전력, 수신설비의 부차적 전파발사, 종합시험, 무선종사자, 설치장소, 공중선, 기기형식·일련번호 및 전파형식·주파수, 전원설비, 안전시설, 보호장치, 시설자 등의 14가지 항목을 검토하게 되며,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그림 6-11> 준공검사 절차 및 평균 소요기간

(2) 정기검사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변경검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준공신고를 하고 변경의 결과가 변경허가 내용과 일치된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무선설비를 운용하지 못한다.

나. 검사의 특례

<표 6-27> 무선국 검사 특례 대상 무선국

내용	대상 무선국
정기 · 준공검사 생략	o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나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o 30W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준공검사만 생략) o 아마추어국(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o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o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o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o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o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다음의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 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변경검사 생략	 ○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 무선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 사항(방송사항), 호출명칭 및 운용허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송·수신기로서 회로의 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기기로서 회로의 변경 없이 수신주파수를 변경 ○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해당 기기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검정 또는 등록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 ○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으로 한정),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 공중선전력, 송신장치, 공중선의 형식 및 이득의 변경 없이 공중선의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및 감면	o 면제 :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재배치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검사수수료를 면제 o 감면 : 공용화무선국의 검사수수료는 해당수수료의 20%를 감면 * 고정국, 기지국, 이동중계국, 방송국에 한정

다. 검사주기 및 유효기간

<표 6-28> 무선국종별 검사주기 및 유효기간

무 선 국 종 별		검사유효 기간(년	정기검사의 시기(유효기간 만료일기준)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	1	 전후 2개월 이내
2. 의무선박국, 의무항공기국, 선박지구국	무기한		
3. 육상이동국, 선상통신국, 간이무선국, 항공국, 무선표지국, 무선측위국, 우주국, 기지국, 이동 중계국, 육상국, 이동국, 선박국 의무선박국 제 외), 아마추어국, 지구국(일반지구국, 해안지구 국, 항공지구국, 육상지구국, 이동지구국, 기지 지구국, 육상이동지구국)	5	5	전후 6개월 이내
4. 비의무(5톤미만) 어선선박국			
5. 선박국 o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o「선박안전법 시행령」 제 2조제 1항제 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여객선 및 어선을 제외)의 의무선박국 6. 항공기국 o「항공법」 제 2조제 1호 및 제 25호에 따른 회전	무기한	2	
익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의 의무항공기국			전후 3개월 이내
7. 고정국, 항공고정국, 해안국 8. 무선방향탐지육상국, 무선방향탐지국 9. 표준주파수국, 비상국 10. 항공기지구국 11. 방송국(연주소 및 송신소, 중계소 시설) 12. 유선방송(종방, 중계)	3	3	
13. 전파응용설비	무기한	5	전후 6개월 이내

4. 무선국 운용

무선국을 운용하는 자는 전파이용의 원활을 기하고 전파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전파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혼신 등의 방지(§29), 통신보안의 준수(§30), 실험국과아마추어국의 암어사용 금지(§31) 등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전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무선국을 운용하여야 한다.

가. 무선국의 운용과 폐·휴지

원칙적으로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하나, 앞서 무선국 허가 부분에

서 살펴본 대로 특정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생략하기도 한다. 한편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지 하려면 무선국 폐지 또는 운용휴지신고서를 관할 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무선국 관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6-29> 무선국 운용 관련 주요규정

규정	주요내용
전파법	o 무선국의 운용(제25조) o 통신방법 등(제27조) o 조난통신 등(제28조) o 혼신 등의 방지(제29조) o 통신보안의 준수(제30조) o 실험국 등의 통신(제31조) o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제32조) o 준용규정(제33조) o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72조)

나. 행정처분

무선국의 운용정지 및 운용제한은 6개월 이내에,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 정지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을 명할 수 있다. 이 보다 더 중한 처분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가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이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 또는 제한이 당해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에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구할 수 있다.

<표 6-30> 행정처분 별 세부 내역

구분	위반내용	규정	처분기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 주피수 · 공중선 전력의 제한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72②	1개월 이내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72②9	1개월 이내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 니한 경우	법 §72②	2개월 이내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 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72②	1개월 이내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되는 지를 배치한 경우	법 §72②	3개월 이내

⊐н	Olyn-il O	-7 -3)	처분기준	
구분	위반내용	규정	무선국	종사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72②4	1개월 이내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법 제58조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72②5 법 §76②	1개월 이내	
	법 제26조제2항(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변경검사를받지 아니한 경우	법 \$72②6 법 \$76②	3개월 이내	1년이내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72②	2개월 이내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넘어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72② 법 \$76②	3개월 이내	1년이내
	무선국 호출방법, 응답방법, 운용시간, 청취의 무 기타 통신방법 등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법 \$76②		1년이내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을 수신 하고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경우	법 \$76②		2년이내
무선국의 운용 정지 및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 온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 해안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76②		1년이내
무선종사자의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76②		1년이내
업무종사 정지	통신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72② 법 §76②	3개월 이내	1년이내
	통신보안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72②9 법 §76②	1개월 이내	1년이내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 여 통신을 한 경우	법 §72②9 법 §76②	6개월 이내	2년이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법 §72②9	3개월 이내	
	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초과하여 무 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법 §72② 법 §76②	3개월 이내	2년이내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 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법 §72②	6개월 이내	
	시설자가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 전력의 제한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별표 23에 따른 처분기 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72②	6개월 이내	
	시설자가 무선국에 무선종사자를 배치 하지 아니한 경우	법 §72②9	3개월 이내	

	혼신방지상 필요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	법 §72③2	671월 이내	
	무선국의 운용제한저문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으로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무선국의 운용제한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다시 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선국 운용제한처분 기준표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다. 또한 무선국 시설자 또는 무선종사자가 운용정지 또는 무선종사자의 운용 제한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무선국의경우 6개월, 무선종사자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다.

단, 행정처분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의 시 설자 또는 무선종사자의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5. 무선종사자

무선종사자는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그 설치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무선종사자 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하는 자격검정(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검정 제외)에 합격하여야 하며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무선국에 종사할 수 없으며, 허가기관의 장은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국 및 고정용무선국에 자격과 정원을 지정하고 무선국검사 시에 이를 확인한다. 아마추어무선국의경우 반드시 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만 시설자가 될 수 있다.무선종사자 관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6-31> 무선종사자 관련 주요규정

규정	주요내용
전파법	o 수수료 납부(제69조제1항제6호) o 무선종사자 자격의 취득(제70조제1항) o 기술자격증의 발급(제70조제2항) o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의 위임(제70조제3항) o 무선종사자 운용의 예외(제70조제4항 단서) o 무선종사자의 배치(제71조) o 행정처분(제72조제2항제18~20호) o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취소(제76조) o 권한의 위임 · 위탁(제78조)
전파법 시행령	o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제99조)

	o 현금 우편대체 또는 우편환 등 수수료 납부방법(제99조) o 자격별 검정과목(제103조) o 기술자격검정의 합격기준(제104조) o 기술자격검정의 방법(제105조) o 검정과목의 면제(제106조제1항) o 기술자격검정의 시행(제107조) 및 시행공고(제108조) o 기술자격검정의 시행(제109조) o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110조) o 합격자의 공고방법(제111조) o 기술자격증의 교부(제112조) 및 재교부(제113조), 정정(제114조) o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제115조) o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종사범위(제116조) o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 o 권한의 위임 · 위탁(제123조)
전파법 시행규정	o 기술자격증교부신청서(제27조) o 기술자격증 재교부(정정)신청서(제28조)
고시	o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방통위고시 제2008-104호) o 검정시험면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방통위고시 제2008-28호)

가. 무선종사자 자격종별 종사 범위

무선종사자는 크게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등 5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는 각각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이 있으며, 무선통신사는 육상, 해상, 항공, 제한 등의 자격이 있고, 아마추어무선기사는 제1, 2급 아마추어와 제3급 아마추어(전신 및 전화)가 있다. 자격종별 종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6-32> 무선종사자 자격종별 종사범위

자격종		종사범위
	전파통신 기사	o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o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o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o 그 외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것
전파통신	전파통신 산업기사	o 국내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국제통신을 위한 선박국·항 공국과 항공기국의 무선설비 통신운용 o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o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술운용 - 선박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500W 이하의 무선전신·무 선전화 및 팩시밀리

		- 육상에 시설하는 무선설비로서 공중선전력 250W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방송국의 무선전화 제외) 및 팩시밀리 - 레이더 -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 위 항목 외 무선설비(방송국의 무선설비,다중무선설비 및 TV 제외)로서 공중선전력100W 이하의 것 - 위 항목 외 무선설비로서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 항행국의 공중선전력 250W 이하의 외부 조정 o 그 외 운용 중 전파통신기사의 지휘 아래 하는 것
	전파통신 기능사	 ○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 (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 제외) - 선박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250W 이하의 무선전신 ·무선전화 및 팩시밀리 -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다음에 규정된 것 · 해안국과 항공국 이외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125W 이하의 무선전신 및 팩시밀리 · 어업용 해안국 이외 해안국의 공중선전력 100W 이하의 팩시밀리 · 항공국과 방송국 이외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100W 이하의 무선전화 - 레이더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아니하는 것 ○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 그 외 운용 중 전파통신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 그 외 운용 중 전파통신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 운용 제외)으로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의 지휘아래 하는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
	전파전자 기사	o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 무선설비의 통신 운용 및 기술운용 o 레이더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기술운용
전파전자	전파전자 산업기사	o GMDSS 관련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o GMDSS 관련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 500W 이하의 기술운용 o 레이더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기술운용
	전파전자 기능사	o GMDSS 관련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o 레이더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기술운용
	무선설비 기사	o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무선설비	무선설비 산업기사	o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공중선전력 3kW 이하의 무선전신 및 팩시밀리 - 공중선전력 1.5kW 이하의 무선전화 - 레이더 - 이 외의 무선설비로서 공중선전력 1.5kW 이하의 것

		o 위에서 정한 운용 외의 운용 중 무선설비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으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하는 것이 위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공사와 무선설비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공사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하는 것이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무선설비 기능사	- 공중선전력 500W 이하의 무선전신, 무선전화 및 팩시밀리 - 레이더 - 이 외의 무선설비로서 공중선전력 150W 이하의 것 o 제1호에서 정한 운용 외의 운용 중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 범위에 속하는 운용으로서 무선설비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지휘 하에 하는 것 o 제1호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공사와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 범위에 속하는 공사로서 무선설비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지휘 하에 하는 것
	항공무선 통신사	 ○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무선전신 제외) -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무선설비 - 이외의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50W 이하의 무선설비 ○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외부조정의 기술운용 -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공중선전력 250W이하의 무선설비 - 레이더 - 이 외의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관련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50W이하의 무선설비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 범위에 속하는 운용
무선통신	해상무선 통신사	o GMDSS 관련 무선전화설비 및 보조설비의 통신운용 o 레이더의 외부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기술운용 o 전파전자기능사 이상의 지휘 아래 하는 통신운용
	육상무선 통신사	 ○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 제외)의 공중선전력 100W 이하 무선설비(무선전신은 제외)의 통신운용 ○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공중선전력 500W 이하의 다중무선설비 - 공중선전력 500W를 초과하는 다중무선설비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하에 하는 것 - 레이더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아니하는 기술운용 - 제1호의 무선설비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 범위에 속하는 운용
	제한무선 통신사	o 육상 및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국(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 제외)으로 공중선전력이 50W(선박에 설치된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W) 이하인 무선설비(무선전신,다중무

		선설비 제외)의 통신운용 o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외부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기술운용 - 레이더 - 위의 무선설비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o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0W 이하 무선설비의 운용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o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0W 이하 무선설비의 운용
아마추어 무선기사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신급)	o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W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화급)	o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W 이하의 무선설비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 용(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원칙적으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 아니면 이를 조작하거나 그 설치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 이 전파법 시행령 제116조와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방통위고시 제 2008-104호)」의 제2장에 규정되어 있다.

나. 무선종사자의 정원 및 배치

통신조작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최소한의 자격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표 6-33> 무선국 별 무선종사자 정원

무선국		무선종사자 정원
해안국	o 무선전신을 하는 해안국 - 250W 초과 무선전신국 - 250W 이하 무선전신국 o 무선전화를 하는 해안국	- 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각 1인 - 전파통신산업기사 1인, 전파통신기능사 2인 o 전파통신기능사3인
지구국	o 해안지구국	o 전파전자기사 또는 무선설비기사,전파전 자산업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

		전자기능사 또는 무선설비기능사 각 1인
	o 지구국 (공중선의 직경이 3m이 상으로 휘더링크(Feeder Link)를	o 무선설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각 1인
	구성하는 것에 한정) o 그 밖의 지구국 (방통위가 별도로 고시하는 소형지구국은 제외)	o 무선설비기능사 1인
	o 제1종국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정원 250인 이상 여객선)	o 전파통신기사 1인, 산업기사 2인
	o 제2종국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정원 250인 미만 여객선)	o 전파통신산업기사 2인
	0 제3종국	o 전파통신산업기사 1인
선박국	- 제1종국 및 제2종국 여객선 외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외의 선박	
	- 최 전력 - 총 톤수 500톤 이상인 어선	
	o 제4종국 (제3종국에 해당하는 선박	o 전파통신산업기사 1인
	으로서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으로	
	연속항해시간 8시간 이하의 선박)	
	o 공중선전력 1.5kW 이상	o 무선설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각 1인
.01 & 7	o 공중선전력 1.5kW 미만 500W 이상	o 무선설비 산업기사 1인, 기능사 2인
방송국	o 공중선전력 1W 초과 500W 미만	o 무선설비 기능사 2인
	o 공중선전력 1W 이하	o 무선설비 기능사 1인
	o 연주소	o 무선설비 기능사 2인

다.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및 등록

(1) 자격검정 종류

<표 6-34>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종류

분류	세부내역	자격검정방식
국가기술 자격법령에 의한 위탁시행 자격종류	o 전파통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o 전파전자 기사·산업기사·기능사 o 무선설비 기사·산업기사·기능사 o 방송통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전파통신 및 전파전자관련 자격증 교부는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 한국전파진흥원 업무 이관 (2010년)
전파법에 의한 시행 자격종류	o 육상무선통신사 o 해상무선통신사 o 항공무선통신사 o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

o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o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o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 제한·육상·항공무선통신사는 자격	
취득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검정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음	

(2) 자격검정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의 기술자격검정에는 다음과 같은 응시자격을 가진 지원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단, 기능사급과 전파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

<표 6-35> 무선종사자 응시 자격

분류	세부내역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 이하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 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 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이하 "완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은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5.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8년 이상 실무 종사) 6.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9년 이상 실무 종사) 7.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후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 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 능장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 기능장 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 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 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 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 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 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 기사 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관련학과 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 종사) 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 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2 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 종사) 8.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9.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 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 산업기사 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 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 제한 없음

(3) 자격검정 시험과목

무선종사자가 되려면 소정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후 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종래 전파관계법령에 따라 규정된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중 일부자격종목은 「국가기 술자격법」에 의거 위탁 시행하고 있다. 자격 별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6-36>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시험과목

기거 구 및		,	시험과목		
자격종목		필기시	험		실기시험
육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	-
항공무선통신사	전파법규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영어	무선통신술
해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	해상통신설비운용	통신보안	해사통신영어	-
제1급 아마추어	전파법규	전파공학	통신보안	영어	
제2급 아마추어	전파법규	전파공학	통신보안	영어	무선통신술 (cw)
제3급 아마(전신)	전파법규	무선설비취급방법	통신보안	-	(611)
제3급 아마(전화)	전파법규	무선설비취급방법	통신보안	-	-

(4) 자격검정 시행방법

<표 6-37> 자격검정 시행방법

검정유형	시행방법
정기검정	o 연초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하고 시행(연 2회) o 한국전파진흥원 전국 8개 지사(인천 제외) 동시 시행
상시검정	o 매월 초 지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월 1회 이상) o 시행종목 : 제3급 아마추어(전화) 및 육상(취득교육자 한)

	o 기관·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시행(수시)
출장검정	- 무선통신사 : 30인 이상 요청시(도서지역 20인)
	- 아마추어무선기사 : 50인 이상 요청시(도서지역 30인)

제4절 전파자원의 보호

1.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종류 및 처분 규정

전파관련 사항의 위반 등이 발생했을 경우 무선국과 무선종사자에 대해 허가 취소, 무선국 운용 정지 및 종사자 업무정지, 운용제한, 종사자 기술자격 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표 6-38> 전파관련 행정처분 종류 및 처분규정

유형	관련법규	처분기준
허가취소	전파법 72조제2항, 제3항	영 §118①3 [별표25]
무선국 운용정지, 종사자 업무정지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3항 및 제76조제2호	영 §118①2 [별표24]
운용제한	전파법 제72조제2항제9호	영 §118①1 [별표23]
종사자 기술자격 취소	전파법 제76조제1항	영 §118①4 [별표26]
과 징 금	전파법 제73조제1항	영 §121 [별표27]
과 태 료	전파법 제90조 ~ 제92조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방통위고시)	영 §124 [별표28]

나. 행정처분 처리절차

행정처분은 처분사유 발생, 문서 및 전산접수, 예정처분 결정, 처분사전 통지, 제출의 견 반영, 처분통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표 6-39>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

단계	세부내용
처분사유의 발생	① 무선국 변칙운용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 중앙전파관리소 ② 전파사용료 체납 : (전파행정과) ③ 정기검사 및 준공기한 경과 : 한국전파진흥원 ④ 면허세 체납 : 각 지방자치단체
	① 처분의뢰 기관별 문서 접수
문서 및 전산접수	①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RBMS)의 사후관리 ③ 접수일자 입력(조회기간 설정) ④ 검색내용 확인(처분의뢰 문서 내용과 대조 확인) ⑤ 처분대상내역 작성(엑셀화일 작성)
예정처분의 결정	① 허가취소 ② 무선국 운용정지, 종사자 업무종사정지 ③ 운용제한 ④ 종사자 기술자격 취소 ⑤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① 처분대상내역(엑셀화일)을 이용하여 처분사전통지서 작성 - 무선국 변칙운용 및 불법전파응용설비 :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불응 : 운용정지 ② 처분사전통지시 첨부물 - 처분사전통지서 - 의견제출서 ③ 처분사전통지시 유의사항 - 의견제출기한은 당사자 등이 의견제출을 준비하는데 필요 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함(10일 이상) - 통지기간 설정시 우편송달 기간(4~6일), 공시송달(15일 이상) 및 의견준비기간(10일 이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함 -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 ④ 처분사전통지 후 조치사항 - 미 배달 우편물 정리 후 공고대상 무선국 내역 작성 - 공시송달 내부결재 득한 후 공고번호 입력 - 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내역 게시요청 - 선박국 처분대상 행정처분 안내문서 발송(어업정보통신국장) - 청문회 참석 요청문서 발송
	0 보 여 보 0 보 기 된 0
청문통지	① 처분대상내역(엑셀화일)을 이용하여 처분사전통지서 작성 - 전파사용료 체납 : 허가취소 - 운용정지기간만료(검사불응 2차, 승계미이행등)및 준공기한 30일경과 : 허가취소 - 면허세 체납 : 허가취소

	② 청문통지시 첨부물 - 청문통지 문서 - 청문통지서 - 의견제출서 ③ 청문통지시 유의사항 - 의견제출기한은 당사자 등이 의견제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함(10일 이상) - 청문통지기간 설정시 우편송달 기간 (4~6일),공시송달 (1월 이상) 및 의견준비기간(10일 이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함 -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 ④ 청문통지 후 조치사항 - 미 배달 우편물 정리 후 공고대상 무선국 내역 작성 - 공시송달 내부결재 득한 후 공고번호 입력 - 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내역 게시요청 - 선박국 처분대상 행정처분 안내문서 발송(어업정보통신국장) - 청문회 참석 요청문서 발송
의견청취	 ① 의견제출에 의한 방법(과태료, 운용정지, 운용제한 경우) - 의견제출서, 우편 ·인편에 의한 의견서, 팩스,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제출한 의견 접수 · 검토 - 당사자 등이 전화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구술의견기록서 (별지 제13호서식)에 그 진술의 요지와 의견제출인을 기록 하여야 하며,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한 경우에는 구술의견 기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② 청문에 의한 방법(허가취소 경우) - 청문주재자의 선정 : 공정성, 직무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선정 - 청문조서 작성
제출의견 반영 및 처분통지	 ① 처분의 가중 :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무선국의 경우 에는 6개월, 무선종사자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함 ② 처분의 경감 :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경우에는 처분을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 ③ 과태료 부과 처분 - 과태료는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 .단 ,무선국 시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부과 ④ 처분의 통지 - 행정처분 내부결재 - 차분결과 당사자 통지(배달증명 발송) - 관련기관에 처분결과 통보(처분의뢰기관, 어업정보통신국 등)

- 처분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 ⑤ 행정처분 후 조치사항
- 행정처분결과 전산입력(RBMS)

2.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가. 개요

기기의 성능과 품질 향상,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다양한 융·복합기기 사용증가,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일반의 관심 또는 불안 증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현행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시험·인증) 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현재는 기기별로 인증유형을 분류하여 ①전기통신기자재(유선기기) 형식승인 ②무선기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③정보기기 전자파적합등록 등의 세 가지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번 전파법 개정에 따라 기기별 인증유형 분류가 아닌 위험정도에 따라 대상 기기를 재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표 6-40>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체계 개선방안

	현 행	개 편 안
인증유 형	・형식승인(유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무선기기) ・전자파적합등록(정보기기)	• 적합인증(위험정도가 높은 기기) • 적합등록(위험정도가 낮은 기기)
적합성 평가절 차	•지정시험기관 시험 ⇒인증심 사 ⇒ 인증서발급	 * 적합인증 : 지정시험기관 시험 ⇒인증심 사⇒ 인증서 발급 * 적합등록 : * 지정시험기관 시험 ⇒ 결과등록 * 자체 시험 ⇒ 결과등록

나. 적합성평가제도의 개선

(1) 인증관련 법체계 정비

전기통신기본법상 유선기기의 인증관련 규정을 전파법으로 통합하여 효율적·통일적 인증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하위법령이나 고시에 분산되어 있던 운영지침, 기술기준 등을 정비하여 「무선설비규칙」 등의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통합 하여 이용자나 실무담당자의 편익을 고려하였다.

<표 6-41> 현행법상 인증관련 규정 정리

전기통신기본법	현행 전파법	개정 전파법(안)
	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제58조의 2(방송통신기기등의
제33조(형식승인)	등)	적합성평가)
-	제57조(전자파적합등록)	 ※현행 전파법 제 46조, 57조 및 기본법 제 33조 규정 통합 '잠정인증제도'도입 근거 마련 세부사항은 시행령 등에
-	< 신설 >	위임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 전파법 \$46① 단서, \$57① 단 서 및 기본법 \$33① 단서 통 합 규정
제 33 조의 2(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6조제4, 5항(지정시험기 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전파법 §46④,⑤및 기본 법 §33조의2 규정 통합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기본법 §33조의2③ 보완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기본법 §33조의2④ 이동 규정
제33조의3(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79조1항(다른 법률을 준용) - 전기통신기본법 준용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간 상호 인정) ※전파법으로 규정 이동
제34조의 2(형식승인의 해 지)	-	
제35조(형식승인의 취소	제74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제58조의 4(적합성평가의 취
등)	취소) 제75조(전자파적합등록의 취 소)	소 등)로 규정 통합
-	< 신설 >	제58조의 9(국제적 적합성평 가 체계의 구축)
-	< 신설 >	제58조의10(목제 개조 변조 등의 금자)

_	< 신설 >	제58조의 11(부적합 보고
	, UE ,	등)
제33조제6항(수수료)		
- 수수료를 대통령령에 위	제69조(수수료)	제69조(수수료)
임		
제45조의2(청문)	제77조(청문)	제77조(청문)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틱)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틱)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틱)
-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준용규정 삭제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데26조(사호고리)	제52조/조시 미 조취)	- 전피법 제 51 조(혼신조사),제
제36조(사후관리)	제53조(조사 및 조치)	53조, 기본법 제36조 규정 통
		합
제49조(벌칙)	제84, 86조(벌칙)	제84, 86조(벌칙)
제52조(벌칙적용에 있어서	제8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	제8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 공무원 의제)	제), 제 46 조제 5 항	의제)
제53조(과태료)	제90, 92조(과태료)	제90, 92조(과태료)

(2) 인증절차 간소화

방송통신기기의 위험정도·인명안전 관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인증유형을 ① 정부가 적합성을 평가·확인하는 적합인증과 ②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등록으로 개편하고, 위험정도가 낮은 적합등록 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 절차를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량생산이나 국내에서의 유통·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연구, 기술개발 등을 위한 방송통신기기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하였다.

(3) 잠정인증제도 도입

적합성 평가기준이 없는 신제품의 경우에는 방통망 및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인증을 발급하기로 하였으며, 잠정인증을 받은 기기는 일정기간 제조·수입이 가능하며 판매대수, 설치지역 등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잠정인증한 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준 또는 평가절차 등이 마련된 경우에는 해당 기기별로 적합성평가(적합인증·등록 등)를 받도록 하였다.

(4) 사후관리 강화

인증절차 간소화 등 사전관리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적정 수준의 규제체계를 유지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방송통신기기 제조·수입자 등에 대한 자료 열람 및 기기 제출 요구, 지정시험기관 3진 아웃제, 부적합정보보고 등의 조치를 새로 마련하였다. 조사 및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관계 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권 및 현장출입권, 거부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도 전파법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제5절 전파이용의 진흥

1. 전파사용료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드는 비용 충당 및 전파 진흥을 위해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규정 주요내용

전파법 이 제67조(전파사용료)
이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이 제89조 (전파사용료의 감면)
이 제90조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이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o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표 6-42> 전파사용료 관련 주요규정

가. 부과 대상

전파사용료는 무선국 등의 목적과 용도 및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감면해준다.

<표 6-43> 전파사용료 부과·면제·감면 대상

항목	대상
부과대상	o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 o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 (단, 수신전용의 무 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

면제대상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o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국 또는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o 전파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⁵¹⁾ o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⁵²⁾
감면대상 (30%)	o 방송발전기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o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대가할당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나. 부과 기준 및 규모

전파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전파의 폭 및 공중선전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체납 시 가산금 등을 추가 징수한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무선국 종 및 업무에 따라 시행령 별표의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규모를 산정한다.

<표 6-44> 전파사용료 부과 기준 및 규모

구분	근거	부과산식	비고
가입자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시행령 별 <u>표8</u>	가입자수 X 서비스별 단가 X 감면 계수 [1-(공용화+로밍+이용효율)] X 전파특성계수	관련 산업 활성화 차원 에서 가입자 수를 기준 으로 완화된 산식 적용
기타 기간통신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방송보조국	시행령 별표9	기초가액(250,000원) X 전파사용량계수 X 서비스계수 X (1-공용화 감면계수)	이용전파의 광대역화에 따른 사용료부담 급증에 따라 완화된 산식 적용

⁵¹⁾ 제19조(무선국의 개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⁵²⁾ 주로 국방·공공·응급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무선국이 이에 해당함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 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제9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과 별표 7에 해당하는 무선국,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무선국, 홍수의 예보·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무선국)

위성방송국 및 일반무선국	시행령 별표10	기초기액(2,000원) X (√공중선전력 전 파의 폭) X 선호계수 X 이용형태계수 X 목적계수 X (1- 공용화 감면계수)	단계적으로 기초가액을 인하하고 정책적 목적으 로 각종 감면계수 적용
이동체에 설치하는 무선국 및 임대목적 지구국	시행령 별표11	o 선박·자동차등 이동체에 개설하는 지구국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임대지구국: 2만원 o 기타 무선국: 3천원	기본산식을 적용하기 힘 든 형태의 무선국에 대 해 정액적용

다. 부과 방법 및 절차

징수기간에 맞추어 분기(3개월)별로 납부하되, 3개월 이하 기간은 일별로 계산한다. 운용휴지, 정지기간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며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일 경우에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준다. 1년 요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10%감면 혜택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표 6-45> 전파사용료 납부 시기

분기	1/4	2/4	3/4	4/4
납부시기	해당 연도	해당 연도	해당 연도	다음 연도
	5.7~5.20	8.7~8.20	11.7~11.20	2.7~2.20

전파사용료 부과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일반적으로 납입고지·고지서송달(전자송달 등)·수납·과오금 반환 및 환급의 절차를 따른다.

라. 체납 및 미납 시의 처리

체납 시 체납금의 5%를 가산금으로 부과하며, 가산금을 또 다시 체납한 경우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또한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또는 무선국 폐지, 6개월 이내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2. 수수료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대장 열람, 증명서 발급 및 허가 등의 요청 시 이에 대한 수수 료를 청구하며, 그 관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6-46> 수수료 관련 주요규정

규정	주요내용
전파법	o 제69조(수수료)
전파법시행령	o 제94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수수료 등) o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o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o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o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o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o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o 제102조(납부방법)
기타	o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18조 (수수료) o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수수료) o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가. 부과 대상

수수료는 목적과 용도 및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감면해준다.

<표 6-47> 수수료 부과·면제·감면 대상

항목	대상
부과대상	o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자 o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신청자 o 무선국, 전파응용설비,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준공 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변경검사를 받는 자 o 무선설비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및 기 기변경 신청자 o 전자파강도측정 요청자 o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응시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 는 자
면제대상	o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o 주파수재배치가 된 무선국

	→ 허가 수수료(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검사 수수료(무선 국, 전파응용설비,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준공검 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변경검사), 허가증 재교부 수수 료 면제
감면대상 (20%)	o 공중선주, 송신설비, 수신설비를 공동사용 하는 기간통신사 업자나 방송사업자의 고정국, 기지국, 이동중계국, 방송국 → 검사 수수료(무선국, 전파응용설비, 레이다, 및 펄스변조 송신기의 준공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변경검사) 감면

나. 종류 및 내역

수수료는 크게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수수료 (열람, 사본발급), 허가 수수료 (무선국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검사 수수료 (무선국, 전파응용설비,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준공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변경검사), 무선설비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및 기기변경 수수료, 전자파강도측정 수수료,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수수료 (시험응시, 자격증발급)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주파수 이용권관리대장 수수료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을 신청할 경우 건당 4,800원, 사본 교부를 신청할 경우 건당 6,500원을 각각 부과한다.

(2) 허가 수수료

아래 표와 같이 시행령 별표12의 기준을 적용하여 무선국 종 및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에 따라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신청 시 수수 료를 차등 부과한다.

<표 6-48> 허가수수료 부과 내역

무	선국 종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 규모	허가신청 수수료(원)	재허가신청 수수료(원)	변경하신청 수수료(원)
항공기국	항광국,총	50W 미만	12,000	11,000	11,000
및 선박국	500톤 이상 어선의 선박국	50W 이상	23,000	11,000	11,000

	총500 톤 미만	50W 미만	4,000	4,000	4,000
	어선의 선박국	50W 이상	11,000	6,000	6,000
	법제25조 제1항제4호의	50W 미만	10,000	_	_
	항공기국, 선박국	50W 이상	28,000	_	_
		100W 미만	120,000	120,000	117,000
	텔레비전	100W 이상 1kW 미만	237,000	181,000	117,000
	방송국	1kW 이상 10kW 미만	443,000	181,000	117,000
nl ふコ		10kW 이상	590,000	181,000	117,000
방송국		100W미만	75,000	75,000	75,000
	그 외 방송국	100W이상 1kW 미만	150,000	87,000	87,000
		1kW 이상 10kW 미만	300,000	87,000	87,000
		10kW 이상	450,000	87,000	87,000
<u> </u>		50W 미만	5,000	4,000	4,000
실험국 및	및 아마추어국	50W 이상 100W 미만	11,000	4,000	4,000
		100W 이상	16,000	4,000	4,000
전파응용설비		50W 미만	5,000	-	4,000
		50W 이상	10,000	-	7,000
그 밖의 무선국		50W 미만	15,000	8.000	8.000
		50W 이상 100W 미만	22,000	8.000	8.000
		100W 이상 500W 미만	40,000	8.000	8.000
		500W 이상	44,000	8.000	8.000

[※] 단 변경허가 신청 시, 무선국 시설 변경 없이 그 외 사항(시설목적, 통신 상대방, 통신 및 방송사항, 호출부호, 호출명칭, 전파형식, 운용허용시간)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1,000원만 부과

(3) 검사 수수료

아래 표와 같이 시행령 별표13의 기준을 적용하여 무선국 종 및 송신기 규모에 따라 무선국, 전파응용설비,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준공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변경 검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한다.

<표 6-49> 검사수수료 부과 내역

무선국 종	공중선 전력에 의한	준공검사	장감사	임시검사	변경검사
ተଥጓ ፳	송신기 규모	수수료(원)	수수료(원)	수수료(원)	수수료(원)

[※] 무선국 허가증 재교부 시 수수료 300원 부과

		12W 미만	18,000	11,000	11,000	12,000
총 500 톤 미만 어선의 선박국		12W 이상 50W 미만	28,000	18,000	18,000	18,000
		50W 이상	43,000	28,000	28,000	28,000
		100W 미만	521,000	421,100	251,500	252,000
	텔레비전	100W 이상 1kW 미만	773,000	637,300	366,500	366,500
	방송국	1kW 이상 10kW 미만	1,029,200	845,100	493,100	493,100
방송국		10kW 이상	1,225,900	1,024,400	591,500	592,000
	.,	10₩ 미만	540,000	500,000	300,000	252,000
	그 외 방송국	10쌦 이상 50쌦 미만	700,000	600,000	360,000	350,000
	007	50㎞이상	1,000,000	780,000	450,000	450,000
		50W 미만	10,000	9,000	9,000	9,000
실험	국 및	50W 이상 500W 미만	17,000	12,000	12,000	12,000
아마	추어국	500W 이상 5kW 미만	30,000	19,000	19,000	19,000
		5kW 이상	37,000	24,000	24,000	24,000
		100W 미만	11,000	8,000	8,000	8,000
과 리. 호	·용설비	100W 이상 1kW 미만	16,000	12,000	12,000	12,000
신파당	· 중 결 미	1kW 이상 10kW 미만	24,000	18,000	18,000	18,000
		10kW 이상	32,000	23,000	23,000	23,000
		10₩ 미만	11,000	8,000	8,000	8,000
레이	다 및	10kW 이상 100kW 미만	16,000	12,000	12,000	12,000
펄스변.	조송신기	100kW 이상 1,000kW미만	24,000	18,000	18,000	18,000
		1,000kW 이상	32,000	23,000	23,000	23,000
		0.5W 미만	10,000	8,000	8,000	8,000
		0.5W 이상 5W 미만	31,000	24,000	23,000	23,000
्र मा-०] 무선국	5W 이상 50W 미만	84,000	63,000	63,000	63,000
 	1 丁겥当	50W 이상 500W 미만	140,000	103,000	103,000	103,000
		500W 이상 5kW 미만	186,000	141,000	139,000	139,000
		5kW 이상	222,000	165,000	165,000	165,000

(4) 무선설비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및 기기변경 수수료 형식검정은 165,000원, 형식등록은 93,000원, 전자파적합등록은 74,500원을 각각 부과한 다.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에 대한 방송통신기기변경은 기술기준 관련 사항일 경우 인증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단, 기술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모델명이나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의 변경 및 추가, 상호·성명·주소의 변경)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증서 1건 발급 시 5,000원을, 2건 이상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건의 비용에추가 건수 당 1건 수수료의 50%를 더해 징수한다.

(5) 전자파강도측정 수수료

전자파강도측정 요청 시 25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6)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수수료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술자격증을 교부 및 재교부 받을 경우 방송 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 납부 방법 및 절차

한국전파진흥원에 납부할 수수료는 우편대체 또는 지로로 미리 납부해야하는 검사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현금·우편대체·우편환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화폐나 전자결제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단,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납부고지서를 이용할 수 있다.

<표 6-50> 수수료 종류 별 납부방법

분류	수수료종류	납부방법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 열람수수료 - 사본교부수수료	
허가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수수료 - 위 대상의 재허가 수수료 - 위 대상의 변경허가 수수료 -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현금 우편대체 우편화
전자파강도측정	- 무선국 전자파강도측정 수수료	1 24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 기술자격검정 응시 수수료 - 기술자격증 교부 수수료	

	- 기술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검사	- 무선국, 전파응용설비,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준공검사 수수료 - 위 대상의 정기검사 수수료 - 위 대상의 변경검사 수수료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 준용

라. 미납 시의 처리

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또는 무선국 폐지, 6개월 이내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결 론

본 연구과제는 전파분야 업무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이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등 전파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법 해설집 발간과 전파관리 및 실무 담당자의 전파자원의 관리 및 전파방송 업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 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발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파법은 전통적으로 전파이용의 혼신 및 간섭 방지와 무선국 관리 등의 기술 및 관리법적 성격이었으나, '09년대 들어 전파이용의 확대에 따라 전파진흥의 산업진흥법적 성격을 포함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전파자원의 확보 및 배분이 중요해집에따라 전파자원의 공평한 이용 등 경쟁법적 성격을 포함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 전파법 전면개정에 따라 전파법 축조해설집이 발간되었으나, 이후 주파수 할당제도, 주파수 임대제 도입, 주파수 회수·재배치시 손실보상 산정기준 도입, 주파수 할당취소조항의 신설 등 전파이용 법·제도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기존의 법률적 해석에대한 다양한 이견 등이 제시됨에 따라 현재 전파이용 상황 등을 고려한 전파법 해설집 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전파이용 관련 기술, 경제, 법학 분야의 전문가로연구반을 구성하여 전파법 해설집 발간을 추진하였으며, 현행 전파법 체계 내에서 조문별 해석을 통한 해설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기존 해설집에 대한 분석과 국내외 전파법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설집 작성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도출하였으며, 전파이용 유형별로 보다 정합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중장기적 법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하였다.

전파방송 업무편람의 경우에는 기존의 무선국 허가 중심의 전파관리 체계를 고려한 '99년 업무편람이 있으나, 2000년 전파법 전면개정에 따른 전파자원의 확보, 배분, 이용, 보호, 진흥 등의 현행 전파법 전체의 체계를 고려한 업무편람이 없다. 한편, 무선국 허가업무, 자격검정 업무, 방송국 허가업무 등 개별적인 업무에 대한 편람이 각기관에서 발간한 사례는 있으나, 전파관리 업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업무편람 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파방송 전체적인 업무 체계를 기초로 주파수 분배, 주파수할당, 무선국 개설, 행정처분 등 16개 세부업무를 구분하여 세부업무별 업무 흐름도, 근거법령, 담당기관, 세부 업무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편람을 작성하였다. 전파방송 업무편람의 경우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진이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나 잘못 이해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수정을 하였다.

전파법 해설집과 전파방송 업무편람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나하면 전파분야 업무 담당자를 비롯하여 누구나 전파법령과 전파업무에 대한이해를 위해서는 전파법 해설집을 참조하여 관련 규정에 대하여 법률적 이해가 가능하고, 실제로 관련 규정에 관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파법 해설집의 경우에는 '08년에 개정이 추진된 내용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법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이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파방송 업무편람의 경우에도 해당 업무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설명하였으나, 어느 부분까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다양한 업무의 상호 연관성을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전파법 해설집과 업무편람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급격히 변하는 전파이용 법제도 및 규정 등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보완 및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1] 서순복, "전파법 축조해설집 발간 연구", 광주대학교(2001)
- [2]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전파법 해설집", (2004.10)
- [3] 정보통신부, "전파방송 업무편람", (1999.03)
- [4] 전파연구소, "정보통신기기 인증업무 편람", (2007.08)
- [5] 중앙전파관리소, "조사업무편람", (2007.07)
- [6] 김보환, 전파범죄 수사기법 개발, 동국대학교, (1998.03)
- [7] 이윤경 등, 전파관리제도 및 주파수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2006)
- [8] 전파법령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법령 및 정비기준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전파 진흥원, (2007.09)
- [9] 정삼영 등,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전파연구소, (2006.12)
- [10] 계경문,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정책 개선방안, 정보통신법포럼 발표자료 (2008.01)
- [11] 주파수거래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제언, 정보와 통신, (2007.09)
- [12] 김용규, 주파수 관리정책의 동향과 정책과제, 정보통신정책학회, (2008)
- [13] 나종갑, 주파수자원의 법적본질 및 주파수정책에 대한 의미, 저스티스 통권 제91호, (2006.06)
- [14] 박재천·양제민, 새로운 주파수관리 패러다임의 분석과 정책제안, 정보통신정 책연구 제13권 제1호, (2006)
- [15] 서순복, 새로운 전파환경 하에서 무선국 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행정학회보 제6호, (1999)
- [16] 이건창·이승진, 전파사용료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영과학 제23권 제3호, (2006.11)
- [17] 이윤환·양석진,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상 주파수할당제의 개선방 안, 법과 정책연구 제3집 제1호.
- [18] 최호용, 주파수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06)
- [19] 신봉기, 경제규제법상 과징금제도, 한국공법학회 제28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1992)
- [20] 최호용,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2007)

기타 전파관련 법령: 국내 전파법('61년 이후 법령), 미국 통신법(1996), 영국 무선 전신법(2006), 호주 전파법(1993), 일본 전파법

- 1.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입니다.
-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